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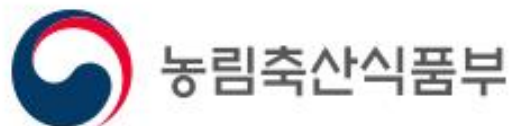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520-0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2021

주관연구기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에 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연구책임자: 김용준(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1) 연구원: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김용준(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이흥식(서울대학교 수의대 명예교수)  
박인철(강원대학교 수의대 교수)  
이기창(전북대학교 수의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박영재(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기전대 교수)  
이수정(연성대학교 교수)  
정태호(경북대학교 교수)  
김정은(수성대학교 교수)
- 대한수의사회  
김동완(기획정책국 차장)

2) 자문위원:

-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이요윤(한국동물병원협회 상무이사/중계 이오동물병원 원장)
-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서강문(한국수의과대학협회 회장/서울대 수의대 학장)
-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  
윤헌영(동물병원장협의회장 대리/건국대 수의대 동물병원장)

# 요약문

우리나라는 현재 반려동물 인구 1천 5백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수의 의료계는 사회로부터 양질의 수의의료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수의 의료계의 80%를 차지함과 동시에 고도의 의료기술 성장과 함께 인체의료계 못지않은 의료체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동물보건사제도는 수의의료체계의 발달과 함께 수의의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으로 반려동물산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2019.8.27.에 공포하여 2021.8.28.에 시행되도록 추진하였다.

관련 법규(수의사법 제 16조 4)에 따르면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평가 인증을 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평가 인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증기준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받았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 수행 기관이 되어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와 함께 2021.1~3월까지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인증기준(안)을 수립하였다.

1.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천만, 반려인 인구 15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보다 양질의 향상된 체계를 갖춘 수의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동물보건사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인증기준 1영역인 “조직과 운영” 영역은 1.1 교육 목적과 목표 부문, 1.2 조직과 재정 부문, 1.3 전략과 계획 부문의 총 3개 부문, 6항목을 수립하였다.

3. 인증기준 2영역인 “교육과정” 영역은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부문,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부문, 2.3 교육과정 개선 부문의 총 3개 부문, 8항목을 수립하였다. 필수이수 교과목은 필수전공교과목 15과목, 이수학점 최소 40학점이 되도록 정하였으며 현장실습은 총 120시간 이상으로 정하였다.

4. 인증기준 3영역인 “학생” 영역은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부문, 3.2 학생활동과 지원 부문,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부문의 총 3개부문, 8항목을 수립하였다.

5. 인증기준 4영역인 “교수” 영역은 4.1 전임교수 부문,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부문,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부문의 총 3개 부문, 7항목을 수립하였다.

6. 인증기준 5영역인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은 5.1 교육시설 및 설비 부문, 5.2 연구시설과 설비 부문, 5.3 시설 설비의 관리 부문의 총 3개 부문, 6항목을 수립하였다.

7.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평가 점수는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평가기준을 구분하고 우수 3점, 적격 2점, 미흡 1점, 부적격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8. 판정종류와 판정기준 및 요건은 완전인증은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두 적격(2점)이상 인 경우, 단축인증은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1점) 인 경우(단, 2년 인증 후 차기 인증 평가에서도 연속해서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최종판정), 인증불가는 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든 부적격(0점)이 1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다. 인증불가 판정 시 판정일로부터 1년경과 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인증취소는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9.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은 완전인증은 3년, 단축인증은 2년으로 정하였다.

10. 인증 평가 기준을 점수로 계량화한 방안으로서 인증기준 항목에서 평가사항마다 배점을 하여 인증기준 항목 하나의 평가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만점이 3점이 되도록 하였고, 완전인증(3년)은 총점 70점 이상 및 5개 영역 모두 영역별 평가점수가 적격 이상인 경우, 단축인증(2년)은 총점 35점 이상 및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인증불가는 총점 34점 이하 또는 총점에 관계 없이 부적격(0점) 항목이 1개 이상, 그리고 또는 총점에 관계 없이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평가 점수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로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지침에서 요구된 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뿐 아니라 일반 의학계열의 평가·인증 기준에 일반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직 및 운영’ 영역 및 ‘학생’ 영역을 포함하여 인증기준을 모두 완벽하게 수립을 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인체 의료서비스 못지않은 양질의 수의의료서비스가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로부터 요구되고 있으며, 수의의료서비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의의료 지원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현 시점에서 수의사를 원활하게 보조할 수 있는 양질의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기본적인 표준 인증기준(안)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된다.

##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 .....	1
제1절 한국 반려동물 산업의 변화 .....	1
제2절 동물보건사제도 필요성의 대두 .....	2
제3절 동물보건사와 유사한 제도 .....	3
제4절 수의사법 개정 동물보건사제도 법령의 공표 .....	9
제5절 연구개발목표 .....	12
제2장. 연구 방법 및 추진경과 .....	14
제1절 연구개요 .....	14
제2절 연구추진 방법 및 경과 .....	24
제3장. 연구결과 .....	32
제1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 개발 .....	32
제2절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평가) 적용방법 마련 .....	43
제3절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기준 개발 .....	47
제4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항목별 평가 기준집 제정 .....	48
제4장 고찰 .....	95
제5장. 요약 및 결론 .....	104
제6장. 향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위한 제언 .....	107

## 부 록

부록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 관련 공문 .....	111
부록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 연구계획서 .....	131
부록3. 동물보건사 제도 관련 법규 .....	149
부록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 회의자료 및 회의록(1차~5차) .....	157
부록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평가인증 기준 최종안 .....	261
부록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최종안 .....	309
부록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기준 점수 계량화 방안 최종안 .....	359
부록8. 동물보건사제도와 유사한 해외 제도 .....	367

표 2.1. 참여 연구원 및 자문위원 .....	21
표 2.2. 연구수행 일정표 .....	22
표 2.3. 보조금 집행계획서(안) .....	23
표 3.1. 교육과정 .....	34
표 3.2. 조직 및 운영 .....	36
표 3.3. 학생 .....	38
표 3.4. 교수 .....	40
표 3.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	42
표 3.6. 평가점수(안) .....	43
표 3.7. 판정 기준 및 요건 .....	43
표 3.8.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	44
표 3.9.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배점 .....	45
표 3.10. 각 항목의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3점 만점) .....	45
표 3.11. 인증유형 별 판정기준 .....	45
표 3.12.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마련을 위한 근거 계산표 .....	46
표 4.1. 간호조무사 시험과목, 일본동물간호사 교과목, 동물보건사 필수 이수과목 ..	99

## 제1장 연구 배경

### 제1절 한국 반려동물 산업의 변화

우리나라는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구는 2015년 무렵에 이미 천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고 한다.<sup>1)</sup>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전체 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 증가가 반려 인구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전국 1,952만 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에서 개 632만 마리, 고양이가 243만 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 반려동물 사육 마릿수는 약 875만 마리로 추정하여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약 1,48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sup>

또한, 이 연구<sup>2)</sup>에서 2014년 기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는 1조 5,684억 원으로 연평균 14.5%씩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사료 산업이 4,841억원, 동물 및 관련 용품 산업이 3,849억 원, 수의 서비스 산업이 6,551억 원, 장묘 및 보호 서비스가 338억 원, 보험이 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sup>2)</sup>에서는 반려동물 마릿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7년에는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2017년 2조 3,322억 원에서 2020년에 약 3.4조 원, 2027년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통계청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보다 정확한 반려동물 수에 대한 통계를 구하기 위하여 2020년도부터 인구 주택 총 조사에서 “가족구조변화”라는 항목을 두어 2020.10월부터 11월까지 1인 가구 수와 반려동물 수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할 목표를 제시하여 시행하였다.<sup>3)</sup> 통계청은 “1인 가구와 핵가족 확대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산업육성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목적에서 반려동물을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반려동물 수 조사의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인 수를 1,500만 명으로 예측하는 조사도 있다. KB금융 그룹은 통계청의 2019 인구 총 조사 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등록정보 현황,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2020 연말 기준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반려 가구는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며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sup>4)</sup>

상기와 같은 조사에서 보아도 반려동물과 반려인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반려인구 천만시대, 반려동물 관련 상표출원 연평균 12% 수준 증가: 네이버 블로그 2020.9.11

2) 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반려동물 연관 산업 발전 방안 연구.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항목포함: 네이버 블로그. 2020.8.12

4)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그룹. 2021.3.21

## 제2절 동물보건사제도 필요성의 대두

### 1. 양호한 수의 의료 체계의 구축

제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며 현재는 1500만 반려인 시대에 들어서 있다. 반려동물 수도 2017년 875만 마리(개 632만 마리, 고양이 243만 마리)에서 1000만 마리 이상에 도달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2)</sup>

반려동물 수와 반려인의 수가 증가되면서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은 양질의 수의 의료 서비스이다. 반려인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수의 의료서비스는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의료 행위가 역량을 갖춘 우수한 수준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 되겠으나, 수의사는 수의사를 돕는 보조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수의 의료서비스를 갖추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는 여러 진료 분야를 갖춘 대형 동물병원일수록 그 진료 과목에 특화된 보조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인체 의료체계에서 전공과목에 따라 그 의료과목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 및 반려인의 증가에 동반하여 수의 의료계는 날이 갈수록 사회와 관련 산업으로부터 양질의 수의 의료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고도의 성장과 함께 인체 의료계 못지않은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수의료 전공과목에 따른 적합한 보조 인력의 도움과 함께 최적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 2. 수의 의료계의 현황

2021년 2월 기준 우리나라 수의사 중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7,405명이며, 이 인원은 면허 발급자 중 사망자 및 수의사 신고자 수 등을 감안할 경우 동물병원 종사 수의사 수는 전체 수의사의 절반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임상 수의사 7,405명 중 6,010명이 반려동물 진료에 종사하며(81.2%), 산업 동물 진료에는 915명(12.4%), 반려동물과 산업 동물 혼합진료는 480명(6.5%)으로서 임상 수의사 대부분이 반려동물에 종사하면서 수의 의료서비스 산업을 주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5) 수의사 분포현황. 대한수의사회. 2021.2



### 제3절 동물보건사와 유사한 제도

#### 1. 간호사 제도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에 따라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부터 졸업하여야만 한다.<sup>6)</sup>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간호학 학사 또는 전문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간호교육기관(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인증·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sup>7)</sup>

#### 2. 간호조무사 제도

우리나라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을 하여 인증된 양성기관에서 배출된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은 학원법 제2조에 의한 간호교육‘학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3호, 제58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인증·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sup>8)</sup>

#### 3.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 8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 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 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있다.<sup>8)</sup>

#### 4. 해외 유사제도

##### 1) 일본 동물간호사 제도

###### A. 개요

일본에서는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간호사 제도가 2019년 6월 28일 관보 호외 제51호로 공포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물보건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동물간호사로 명칭하고 있으며, ‘동물간호사는 애완동물인 개, 고양이 및 법령으로 정해진 동물(잉꼬 등의 애완조류)에 대한 건강 및 안전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애완동물간호사법 제2조

6)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① 1.[법률 제17472호, 2020. 08. 11., 타법개정]

7)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 간호학 학사/전문학사 학위과정.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7

8)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의 보조는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수의사법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행위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행위로서 수의사의 지시 하에 실시되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애완동물간호사법 제3조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농림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sup>9)</sup>

B. 일본동물간호사(애완동물간호사) 대학 또는 양성기관에서 이수 필수 교과목 (2021.3월 일본 농림수산성, 애완동물간호사 커리큘럼 자료<sup>10)</sup>)

	분류	이수과목명
1	기초동물학	생명윤리동물복지
2		동물형태능학
3		동물번식학
4		동물행동학
5		동물영양학
6		비교동물학
7		동물간호관련법규
8		동물애호적정사양관련법규
9	기초동물간호학	동물간호학개론
10		동물병리학
11		동물약리학
12		동물감염증학
13		공중위생학
14	임상동물간호학	동물내과간호학
15		동물외과간호학
16		동물임상간호학총론
17		동물임상간호학각론
18		동물임상검사학
19		동물의료커뮤니케이션
20	애호적정사양학	애완동물학
21		사람과동물의관계학
22		적정사양지도론
23		동물생활환경학
24		펫관련산업개론
25	실습	동물형태기능학실습
26		동물내과간호학실습
27		동물임상검사학실습
28		동물외과간호학실습
29		동물임상간호학실습
30		동물애호적정사양실습

C.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와 관련성

① 동물보건사의 업무에서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의 업무 범위와 유사하다.

9) 일본 동물간호사 법 제정 공포.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뉴스레터 제17호. 2020.7.

10)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간호사 커리큘럼(부록 8.1.참고)

- ②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농림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하는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인 점에서 유사하다.
- ③ 일본동물간호사 자격을 위한 시험과목은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이수해야 할 이수 전공과목 선정에 참고가 된다.

## 2)영국 RCVS<sup>11)</sup>(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인증 수의간호사 제도

### A. 개요

- ① 영국 내 수의간호사는 반드시 RCVS에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 ② 수의간호사는 RCVS에 등록하기 전에 RCVS 수의간호사 Day One 역량(RCVS Day One Competences for Veterinary Nurse) 및 RCVS 수의간호사 Day One 실기(RCVS Day One Skills for Veterinary Nurse)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③ RCVS 수의간호사 기준은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수의간호사 자격부여 기준에 이용될 수 있다.
- ④ ACOVENE(European Accreditation Organization for Nursing Programme)에서 인증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RCVS에 등록하기 위한 등록전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 B. 반려동물 대상 RCVS Day One Skills<sup>12)</sup>

수의사를 도와 반려동물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망라하여 이를 습득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험 과정을 거친다.

- ① 진료 접수 전 절차(Legislation of meeting practice)
  - 5가지 사항 수행 역량이 충족되어야 함.
  - 법률상 진료 접수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 진료 전 동물의 건강 및 안전성 확보
  - 신고의무 전염병, 인수공통 전염병 등 진료 전 건강 위험 상태 확인
- ② 진료 접수 과정
  - 10가지 사항 수행 역량이 충족되어야 함.
- ③ 동물의 취급 및 보정
  - 6가지 사항 수행 역량이 충족되어야 함.
- ④ 동물 간호
  - 15가지 사항 수행 역량이 충족되어야 함.
- ⑤ 실험실 보조 업무

11) RCVS. (<http://rcvs.org.uk/setting-standards/accrediting/>). 2019.9.10

12) RCVS Day One skills list. 2016. (부록 8.2. 참고)

- 9가지 사항 수행 역량이 충족되어야 함.
- ⑥ 영상진단 보조 업무
  - 7가지 사항 수행 역량이 충족되어야 함.
- ⑦ 약물제조 보조 업무
  - 3가지 사항 수행 역량이 충족되어야 함.
- ⑧ 감염 질병 관리
  - 5가지 사항 수행 역량이 충족되어야 함.
- ⑨ 수술 처치 및 치료 보조 업무
  - 13가지 사항 수행 역량이 충족되어야 함.
- ⑩ 동물 마취 보조 업무
  - 6가지 사항 수행 역량이 충족되어야 함.

#### C.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와 관련성

- ① 수의간호사가 되기 위해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시험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 ② 자격시험은 수의간호사의 현장 동물관리 역량 및 능력에 집중되어 있어 동물보건사 실습 교육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③ 수의간호사 자격증 부여를 위한 관리 시스템은 RCVS에서 주관하는 제도여서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 관리 제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ACOVENE(Accreditation Committee for Veterinary Nurse Education, 유럽 일부 국가 수의간호사 인증기구)인증 수의간호사 제도<sup>13)</sup>

#### A. 개요

- ① ACOVENE(수의간호사 인증위원회)는 2007년에 창립되었으며 유럽에서 수의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기구이다.
- ② ACOVENE에서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의 이수자는 해당 국가에서 또는 ACOVENE 인정 국가 간 수의간호사 취업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평가를 위하여 서면 평가 및 방문 평가를 수행한다.
- ④ 현재 ACOVENE 인증 수의간호사 교육기관은 벨기에 1개교, 이태리 1개교, 노르웨이 1개교, 포르투갈 1개교, 네덜란드 1개교, 아일랜드 5개교, 영국 60개교, 총 7개국, 70개 교육기관이 있다.
- ⑤ RCVS는 2010년부터 ACOVENE과 협약을 맺고 인증기준에 관해 상호 협의하고 있다.

#### B.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와 관련성

수의간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 평가에서는 유사하나, 수의간호사 자격 부여는

13) ACOVENE Veterinary Nurse in Europe(부록 8.3. 참고)

상기 2)항의 RCVS의 수의간호사 자격 부여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므로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 동물보건사 관리제도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OIE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제도<sup>14)</sup>

(OIE Curricula Guidelines for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2019)

- A. Veterinary Paraprofessional (VPP) 정의 : 수의전문영역에서 지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가 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의사의 책임 및 감독 하에 수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
- B. VPP의 세가지 주요 활동 영역
  - ① Animal Health : 동물 위생(방역)
  - ② Veterinary Public Health : 공중 위생
  - ③ Laboratory Diagnosis : 임상병리 진단
- C. 이수 과목
  - ① 해부 및 생리학
  - ② 동물질병학 : 인수공통전염병학, 전염병학
  - ③ 동물 검사, 진단 및 치료 보조학: 동물 취급 및 보정, 임상 검사
  - ④ 동물 생산학 : 영양 및 목장 경영, 농업경제학, 동물생산관리, 동물 번식
  - ⑤ 동물 복지 및 동물행동학
  - ⑥ 임상병리학 : 혈액학, 임상화학, 세포학
  - ⑦ 의사소통학 (communication)
  - ⑧ 농장생물안전학 (Field biosafety and biosecurity)
  - ⑨ 식품 안전학
  - ⑩ 면역학
  - ⑪ 정보처리학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⑫ 실험 진단 기술 (Laboratory Diagnostic Technologies)
  - ⑬ 실험 품질 관리학 (Laboratory Quality Management)
  - ⑭ 미생물학
  - ⑮ 기생충학
  - ⑯ 병리학
  - ⑰ 약리학 및 독성학
  - ⑱ 기본 동물위생 기술학
  - ⑲ 질병방역 원리
  - ⑳ 전문 법규 및 윤리
  - ㉑ 수의공중위생

---

14) OIE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부록 8.4. 참고)

D.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와 관련성

- 1) 정의에서 수의사의 책임 및 감독 하에 수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 2) 그러나 이 VPP의 역할은 주로 국가의 수의 업무와 관련된 동물 위생(방역) 및 공중위생 업무이다. 임상 병리 진단 분야는 진단을 위한 전문분야로 간주된다.
- 3) 따라서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해 지식을 갖추어야 할 이수 과목은 참고가 가능하나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커서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5) 미국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인증 Veterinary Technician 제도<sup>15)</sup>

A. 개요

- Veterinary technology는 수의사를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전공 분야이다.
- AVMA는 Veterinary technology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이 기관을 졸업한 자는 veterinary technician 또는 veterinary technologists가 된다.
- Veterinary Technician : AVMA 또는 CVMA(Canadi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가 인증하는 veterinary technology 프로그램을 졸업한 자, 부학위 (associate degree) 또는 자격증이 주어진다.
- Veterinary Assistant (수의 조무사) : 수의 보조 인력으로서 이수하는 실습, 관련 전문 지식, 기술에서 veterinary technician 또는 veterinary technologists 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인정하는 보조 인력.

B. Veterinary Technician(VT) 의 역할

- VT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행사한다.
- VT의 의무는 수의사의 지휘, 감독 및 수의사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이 업무는 연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른다.
- VT는 진단, 처방 또는 수술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 VT는 동물의 간호 및 취급, 동물의 정상 및 비정상 상태 관리, 투약 보조 업무 및 수술 후 동물 간호, 영상 보조, 임상병리진단과 관련된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C. 교과과정(curriculum)

① 기본 교양 과목

- 1) 응용수학
- 2) 생물학
- 3) 소통법
- 4) 일반 화학

② 전공 이수 과목

- 1) 해부 생리학

---

15) AVMA Veterinary Technician(부록 8.5. 참고)

- 2) 마취보조학
- 3) 동물 사양 관리학(동물 보정, 동물 행동, 품종 식별, 번식학, 성감별, 인간과 동물 소통법)
- 4) 생물안전학, 생체안전학
- 5) 임상병리학 및 기생충학
- 6) 고객 및 동료와 소통법
- 7) 질병학 및 예방질병학
- 8) 동물병원 경영학
- 9) 동물의료법규 및 윤리
- 10) 사람과 동물의 동반 생활
- 11) 실험동물학 입문
- 12) 의학용어
- 13) 미생물학 및 면역학
- 14) 영양학 및 사료학
- 15) VT대상 약리학 기초
- 16) 영상학 및 초음파 기본 원리
- 17) 수술보조법
- 18) 동물병원관리법 및 기초 컴퓨터 처리법
- 19) VT 직업 전문성
- 20) 기타

③ 학제 : 최소 16개월에서 2년의 교과 과정을 운영해야 함.

#### D.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와 관련성

- ① 미국 AVMA에서 인증하는 수의 테크니션 제도는 수의 테크니션 정의에서 볼 때, 또한 반드시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물보건사 제도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의 테크니션의 전공 이수과목의 범위, 또한 정부 주관이 아닌 민간기구 인증 시스템, 그리고 미국 수의의료체계와 우리나라 수의 의료계 체계와의 차이 등에서 다소 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 ② 전문 이수 과목의 일부는 우리나라 동물간호사 양성기관에서 이수해야할 과목 선정에 참고가 된다.

### 제4절 수의사법 개정 동물보건사제도 법령의 공표

#### 1. 경과

동물보건사제도는 수의 보조 인력을 법제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6.3월에 정부에서 추진되었고, 수의계는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반려동물 자가 진료 철폐를 전제로 한 조건에서 수의 보조 인력 제도 도입에 동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의사회, 동물복지학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수의진료 보조인력(※동물보건사 명칭 제정 전 가칭)제도 도입 시 진료 기술을 배운 수의진료 보조인력이 동물 판매업소 등에서 진료 행위를 수행하게 되면 수의사가 아닌 자가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자가 진료’ 행위가 더욱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를 금지한 바 있다.<sup>16)</sup>

## 2. 동물보건사의 정의

동물보건사로 명칭이 확정되기 전 ‘동물간호복지사’라는 명칭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한 인력이 존재해왔으며<sup>17)</sup> 그 인원은 2016년 당시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는 ‘동물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TF(농식품부, 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복지학회, 동물간호협회 등 참여)를 6차에 걸쳐 개최하였다. 수의진료 보조인력의 명칭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수의간호복지사,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조무사, 동물복지학회는 수의간호사를 각각 주장하였으나, TF 논의를 통하여 ‘수의간호복지사’로 명칭이 합의되었다.

최종적으로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수의계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및 진료보조(주사·채혈 등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해당 인력의 업무를 정의하여 이 제도 도입이 농식품부 6차 TF(2016.7월)<sup>18)</sup>에서 합의되었다. 이후 농식품부는 ‘동물간호복지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입법예고(‘16.9.13) 및 발의(‘17.1.10)<sup>19)</sup>를 하였으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17.11.29)<sup>20)</sup>에서 명칭 등과 관련하여 이견(간호협회의 반대 등)이 존재하여 한차례 계류된 바 있으며, 결국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19.4.1)<sup>21)</sup>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동물보건사’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이후 해당 법률이 개정(‘19.8.27)되어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수의사법 제2조)되고 있다.<sup>22)</sup>

16)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 행위의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2017.7.1. 시행

17) 2004년부터 한국동물병원협회·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 자율로 애완학과·동물병원 근무자에 대해 민간자격을 부여해왔음.

18) 농식품부 6차 TF. 2016.7.1

1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6-427호.

20) 국회회의록 20대 354회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p.33.

21) 국회회의록 20대 367회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p.72.

22) 수의사법 (부록 3.2. 참고)



### 3. 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의 자격은 수의사법 제16조 2에서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sup>22)</sup>

**수의사법 제 16조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 4.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며 자격시험의 관리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2)</sup>

**수의사법 제 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

아야 한다고 수의사법 제16조 4에서 규정하고 있다.<sup>22)</sup>

**수의사법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6. 동물보건사의 업무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수의사법 제 16조 5에서 규정하고 있다.<sup>22)</sup>

**수의사법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절 연구개발목표

### 1. 경과

동물보건사 제도는 2021.8.28.부터 시행 예정이며 동물보건사제도 시행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수의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 받은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은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이 기관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평가·인증 기준이 2021년 1월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아 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인증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방역 정책과-647 (2021.1.15.)<sup>23)</sup>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추진”을 의뢰해왔고, 수인원은 수인원 21-714(2021.1.20.)<sup>24)</sup>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2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방역 정책과-647.(부록 1.1. 참고)

2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계획서. 수인원 21-714.(부록 1.2. 참고)

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농식품부는 방역정책과-1564(2021.2.9.)<sup>25)</sup>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로 연구개발 승인을 하여 연구가 수행되게 되었다.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 및 방법 개발 지침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지침<sup>23)</sup>을 제시하였고 또한 동시에 연구기관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제시하였다.

## 3. 연구개발 목표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지침” 주요연구개발 목표<sup>26)</sup>

#### 1.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 1)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교과목 및 실습과목)
- 2)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참여 동물병원, 현장실습 교육인원 등)

#### 2.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등 인적자원 평가기준 마련

#### 3. 교육 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 기준 마련

#### 4.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방법 마련

---

2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방역정책과-1564.(부록 1.3. 참고)

26) 연구개발 계획서.(부록 2.1. 참고)

## 제2장 연구 방법 및 추진경과

### 제1절 연구 개요

#### 1.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sup>1)</sup>에 따른 세부 연구 수행 내용 목표 설정

##### A. 평가 인증기준 공통 영역의 설정<sup>2)</sup>

○ 인증기준은 인증기관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예를 들면 수의학교육인증기준은 ①조직 및 운영 영역, ②교육과정 영역, ③학생영역, ④교수영역, ⑤시설 및 자원 영역의 5개 평가 ‘영역’, 그리고 영역을 세분화한 20개 평가 ‘부문’, 다시 부문을 세분화 한 54개 평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 간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전문학사 이상 간호학 프로그램 인증평가기준은 ①비전 및 운영체계, ②교육과정, ③학생, ④교수, ⑤시설 및 설비, ⑥교육성과의 6개 평가 ‘영역’, 14개 평가 ‘부문’, 28개 평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 한편, 참고 사항으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한 인증·평가 기준은 ‘학원’의 경우는 ①교육과정, ②인적자원, ③재정 및 시설·환경, ④교육성과의 4개 평가 ‘영역’, 8개 평가 ‘부문’, 13개 평가 ‘항목’이며, ‘세부 평가지표’는 30개로 설정되어 있고, ‘학교’의 경우 ①교육과정, ②인적자원, ③재정 및 시설·환경, ④교육성과 4개 평가 ‘영역’, 8개 평가 ‘부문’, 13개 평가 ‘항목’, 29개의 ‘평가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 상기 기관들을 종합해서 공통된 평가 영역은 ①교육과정, ②학생영역, ③교수영역, ④시설영역이며, 명칭은 다르나 수의학교육인증기준의 “조직 및 운영” 영역은 간호교육 인증평가기준의 “비전 및 운영 체계”와 동일한 영역으로 보인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평가 방법 개발” 연구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된 1.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목표는 상기 기관들의 인증기준 중 “교육과정 영역”에 해당되며, 2.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등 인적자원 평가기준 마련 목표는 “교수 영역”과 “학생영역”에 각각 해당되고, 3.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 기준 마련 목표는 “시설 및 자원 영역, 시설 및 설비 영역, 또는 시설·환경 영역”에 해당된다.

○ 또한, 농식품부 연구 개발 지침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조직 및 운영 영역, 운영체계, 교육성과 등”에 대한 영역 설정 및 인증기준 마련이 추가로 검토되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 방역 정책과-647.(부록 1.1. 참고)

2) 연구개발 계획서.(부록 2.1. 참고)

## B. 농식품부 지침에 따른 인증·평가 영역 설정

### 가.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교육과정 영역)

#### 1)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

○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물보건학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평가·인증은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수의사 진료를 보조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실행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양성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과목과 이수학점이 정해져야 하고, 아울러 실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정한 실습과목과 실습시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 이를 정리하자면, 동물보건사 자격을 갖기 위한 필수 이수과목과 학점, 그리고 실습과목과 실습 시간이 인증기준에 제시되어야 한다.

#### 2) 현장실습 운영 평가 방법(참여 동물병원, 현장실습, 교육인원, 등)

○ 동물보건사 자격을 갖기 위한 현장 실습은 어떤 실습을 얼마동안 수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의 실행능력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시설조건의 동물병원에서, 어느 실습 분야를, 얼마동안, 실습해야 하는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진료 수의사가 일정 숫자 이상인 종합동물병원으로만 한정할지, 1인 원장의 동물병원 실습도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며, 종합동물병원에서는 어떤 실습을 얼마동안 수행할지, 개인 동물병원에서는 어떤 실습을 얼마동안 수행할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이 가능한 기초 실습과목과 실습 이수시간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을 종합하여 인증기준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보건학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학년별 필수 이수 전공 교과목 및 이수 학점

2) 현장실습과목의 설정 및 실습시간(실습 총 시간)

① 실습기관 및 기관별 실습과목과 실습시간

A. 진료 수의사 일정 숫자 이상의 종합동물병원(대학동물병원 포함)

- B. 개인 동물병원
- C. 동물보건학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본실습
- ② 실습 수행자
- ③ 실습 이수 확인 및 평가방법

나.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등 인적자원 인증·평가기준 마련(“교수” 및 “학생” 영역)

1) 교수 영역

교수에 대한 평가 영역은 인증기준 중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영역으로서 다음 기관 등의 인증기준을 참고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수의학교육인증기준 : 교수 ‘영역’ - 3개 ‘부문’(①전임교수, ②교수의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③교수개발 및 지원)- 8개 ‘항목’(①전임교수 선발, ②적정 교수 수, ③강의 및 실습시수, ④국내·외 연구실적, ⑤연구와 학생, ⑥교수 개발, ⑦국내·외 연수, ⑧업적 평가)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 : 교수 ‘영역’ - 2개 ‘부문’(①교수 확보, ②교수 업적과 개발) - 4개 ‘항목’(①전임교원 확보, ②전임교원 수업시수와 전공교과목 담당, ③임상 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 확보, ④교수업적과 역량 개발지원)

2) 학생 영역

학생에 대한 인증·평가는 인증기준 중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영역으로서 다음 기관 등의 인증기준을 참고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수의학교육인증기준 : 학생 ‘영역’ - 5개 ‘부문’(①입학정책의 타당성 및 공정성, ②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③학생활동과 지원, ④학생복지제도 및 시설의 적절성, ⑤진로 및 학습 성과 - 13개 ‘항목’(\*항목 내용: 부록4.1-첨부3 수의학교육인증기준 참고 )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 : 학생 ‘영역’ - 2개 ‘부문’(①학생지도, ②학생지원과 안전 관리) - 4개 ‘항목’(①학생지도 부문; 학생 지도 체계, 학생지도 프로그램, 2개 항목, ②학생지원과 안전관리 부문 ; 학생지원, 임상실습 안전 관리, 2개 항목, 총 4개 항목)

■ 상기 교수 및 학생 영역에 대한 인증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교수, 학생 등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기준 마련(“시설 및 자원” 영역, “시설 및 설비” 영역)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은 동물보건학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다.

다음 기관 등의 인증기준을 참고하여 인증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의학교육인증기준 : 시설 및 자원 '영역' - 3개 '부문'(①교육시설 및 자원; 4개 항목으로 구성, ②연구시설과 설비; 2개 항목으로 구성, ③시설설비의 관리; 2개 항목으로 구성, 총 8개 '항목') (\*항목내용: 부록4.1-첨부3 수의학교육인증기준 참고 )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 : 시설 및 설비 '영역' - 2개 '부문'(①교육시설 설비 부문-교육기본시설과 편의시설 항목; 1항목, ②실습시설과 설비 부문 - 실습실과 실습기자재 확보, 임상실습기관 확보; 2항목, 총 3개 '항목') (\*항목내용 생략)

#### 라. 평가 기준에 다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 방법 마련

1) 인증기준의 영역, 부문, 항목 : 인증기준은 평가가 필요한 '영역'을 정하고 나서 다시 영역에 따른 평가 '부문'을 구분 하며, 부문별 구체적으로 평가할 '항목'을 세분화 하여 기준을 수립한다.

그 예로서 수의학교육인증기준을 예로 들면 교수 영역 , 3개 부문 - 4.1. 전임교수, 4.2.교수의 교육, 연구 및 활동, 4.3. 교수개발 및 지원으로 구분하며, 4.1 부문에 대한 항목의 세분화를 예를 들면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전임교수를 적정 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의 2개 항목으로 세분화 한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 2) 인증 평가 기준의 기술

- ① '영역'별 평가기준을 기술한다
- ② '부문'별 평가기준을 기술한다
- ③ '항목'별 평가기준을 기술한다

'항목'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당사항을 확인한다

- A. 인증기준 기술
- B. 평가사항 : 해당 질문을 통해 인증기준 적합여부 검토
- C. 비치자료
- D. 현장확인 필요성 여부

#### 3)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및 평가단 구성

\* 편람 제정시 기술

#### 4) 평가 절차(안)

- ① 인증 신청
- ② 동물보건사 인증·평가 위원회(\*가칭)에서 평가단 구성
- ③ 평가단의 서면평가
- ④ 평가단의 현지 방문평가
- ⑤ 평가단의 방문보고서 및 논평서 제출
- ⑥ 동물보건사 인증 판정위원회(\*가칭)에서 판정
- ⑦ 농식품부에 결과 통보

#### 5) 평가 점수(안)

- ① 평점 기준을 구분한다. ;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 ② 영역별 평정표를 작성한다. ; 평가단 평가위원별로 평가 영역을 담당하며, 담당 영역에 대해 평정기준을 표시하여 평정표 작성
- ③ 평가단은 영역별 분석보고서도 제출한다. ; 평가등급에 대한 평정근거를 제시하고 현장 확인사항을 표기한다.(예: 서류, 시설 확인, 면담 등)
- ④ 서면평가를 수행하고 나서 방문평가 수행 후 최종평가 점수를 제시한다.
- ⑤ 평가는 인증기준 영역별 평가위원 개인의 평가 수행 후 평가단 전체 평가로 결과를 종합한다.

#### 6) 판정 종류(안)

- ① 인증기준 전체 영역이 모두 적격 이상인 경우 인증으로 판정한다.
- ② 인증기준 전체 영역 중(예:5개)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하여 인증으로 판정한다.
- ③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한정인증으로 판정한다.
- ④ 인증기준 5개 영역중 1개 영역이라도 부적격인 경우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 7) 인증 유형 :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안)

- ① 완전 인증 : 4년 또는 3년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한다(예: 4년 완전 인증인 경우 3년으로 축소하여 인증, \*상기 6)항의 ②)
- ② 한정인증 : 2년 - 5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 미흡한 경우
- ③ 인증불가 :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
- ④ 인증취소 :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과정을 거쳐 동물보건사 인증판정위원회(\*가칭)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바.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동물간호사 국가시험 자격 부여 기준 마련

- 1) 이 사항은 대학 인증과는 별개의 건이므로 자격 부여 기준을 정립
- 2) 이 기관의 경우에도 평가·인증을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기대효과<sup>2)</sup>**

1. 연구개발에서 수립한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기 위해 동물보건학을 교육하는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2. 이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하부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3. 이 인증기준을 기초로 하여 실제 평가에서 평가 지침이 되는 인증 편람/인증 지침을 설립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수행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양성교육기관의 교육 표준화를 이루어 역량 있는 동물보건사의 배출을 도모하고 동물병원 전문영역에서 수의사를 원활하게 보조하는 능력 있는 보조 인력체계를 확보하게 되리라 보며, 나아가 우리나라 수의 의료서비스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함으로써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수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 동물복지 선진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위상 확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수의료 관련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진 편성

### ■ 연구진 구성의 기본 원칙

- 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이므로 양측이 동등한 인원의 연구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인증 기준 5개 영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양측이 각각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동물보건사제도는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의료체계의 주관기관이므로 대한수의사회를 연구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③ 동물보건사의 직접적인 수요기관이자 실습기관이 될 수 있는 한국동물병원협회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④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시 현장 실습에 중요한 실습기관이 될 수 있는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⑤ 동물보건사가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이므로 수의학과 관련된 기본 지식 및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수의학교육과 직접 관련된 필수 교과목 및 실습이 이수되어야 하므로 한국수의과대학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수의과대학협회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연구원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4명, 한국동물보건사대학협회 4명, 대한수의사회 1명으로 연구원은 9명이며, 자문위원은 한국동물병원협회 1명,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 1명, 한국수의과대학협회 1명으로 자문위원은 3명으로서 연구진은 총 12명으로 구성됨.

표 2.1. 참여 연구원 및 자문위원

기관	성명	소속/지위	역할	연구분야
한국수의학 교육인증원	김용준	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책임연구 원	-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총괄) -인증기준 초안 작성 -평생교육기관 인증 기준안
	이흥식	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 수	연구원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 공교과목 및 이수학점(교과목 및 실습)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 수표
	박인철	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연구원	-교수 및 학생 인적자원에 대 한 평가기준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기준
	이기창	평가위원회 및 실행 위원회 위원/전북대 교수/한국수의 교육 학회 회장	연구원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기준
한국동물보 건사대학교 육협회	박영재	동물보건사대학교육 협의회 회장/전주 기전대학교 교수	연구원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 증 기준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
	이수정	연성대학교/교수	연구원	학생, 교수, 강사 등 인적자원 평가 기준 분야
	정태호	중부대학교/교수	연구원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 기준 분야
	김정은	수성대학교/교수	연구원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 표(계량 평가) 분야
대한수의사 회	김동완	대한수의사회 차장	연구원	평생교육기관 인증 기준 안
한국동물병 원 협회 (KAHA)	이요윤	한국동물병원 협회 상무이사/동물병원 장	자문위원	현장실습 운영 평가 방법 (동물보건학 전공자 및 특레 자)
한국수의과 대학협회	서강문	한국수의과대학 협 회 회장/서울대 학 장	자문위원	전공교과목 및 이수학점 (교과목 및 실습과목)
한국수의과 대학 동물병 원장협의회	윤헌영	수의과대학동물병원 장 협의회장 대리/ 건국대 동물병원장	자문위원	현장실습 운영 평가 방법 (동물보건학 전공자 및 특레 자)

### 3. 연구 일정

연구일정은 이 연구개발 과제가 2021.1.15.자 농식품부 방역정책과-647로 의뢰되었고, 또한 동시에 결과 제출기한은 2021.2.28.로 제시되었으므로 2021.1.17.~2021.2.28.까지 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자료 준비 및 인증기준 심의를 위한 연구진 회의를 통해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일정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연구수행 일정표**

연구수행내용	2021.1		2021.2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17~1.23	1.24~1.30	1.31~2.6	2.7~2.13	2.14~2.20	2.21~2.27
동물보건사 제도 관련 자료 조사	√					
연구진 1차회의 (역할분담 및 일정 조정)		√				
2차회의 (동물보건사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이수시간 확정) ①교과목 ②실습			√			
3차회의 ①동물보건사 실습 이수기관 확정 ②인적자원 영역기준 확정 ③시설 및 기자재 등 교육환경 영역 기준 확정					√	
4차회의 ①인증기준 초안 검토 및 확정 ②평가기준 항목별 점수표 적용방법						√
최종보고서 제출						√

#### 4.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농식품부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비로 2천만원이 지급 결정되어 이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금 집행계획서(안)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3. 보조금 집행계획서(안)

항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합계 (부가세 포함)	세부내역
동물보건사 양성 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 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000,000원	○연구원 수당 -연 구원9명x1,000,000 원=9,000,000원 ○연구책임자 수당 -책임자 1명 x 1,000,000원 =1,000,000원 ○자문위원 수당 -자문위원 3명 x 500,000원 = 1,500,000원 ○ 회의비 -12명(연구원 9명+ 자문위원 3 명)x150,000원x4회 =7,200,000원 ○자료 인쇄비 및 회의 경비 - 800,000원 ○보고서 작성비 -500,000원
			20,000,000원	
	총계		20,000,000원	

## 제2절 연구추진 방법 및 경과

### 1. 연구추진 방법 및 기본 원칙

- ① 연구개발 사항은 개최된 연구진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일정표에 따라 일정표에 제시된 토의사항 및 전차 회의에서 차기 회의 안건으로 결정한 사항들을 심의하여 반드시 그날에 결론을 맺도록 하였다.
- ② 일정표에 따라 수인원과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토의 안건에 대해 중점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고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 대표 발표한 후 사항별 전체 토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③ 심의해야 할 안건 및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집중 토의를 하였으며 가장 옹고 합리적인 안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 ④ 회의 때마다 결정된 사항은 수인원 이기창 교수와 김용준 원장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 전에 이메일로 회람하였다.
- ⑤ 각 회의마다 회의 7일전 경에 차기 회의 개최 안내 공문을 전 연구원과 자문 위원에게 송부하였다.<sup>3)</sup>
- ⑥ 회의 때마다 전차 회의록을 접수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전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하나하나를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수정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결정사항을 재 인정하였다.
- ⑦ 인증기준 설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절대 다수가 2년제 대학인 것을 감안하여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제도와 유사한 간호사 인증기준<sup>4)</sup>을 참고하되, 동물보건사 전문분야 교육을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에 적합한 독립된 인증기준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2. 연구 추진 경과

#### 1) 1차 회의<sup>5)</sup>

●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10:30~13:30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참석자 : 10명

●경과 :

1. 1차 회의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에 따른 연구목표 및 세부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 방향에 대해

3) 연구개발 위원회 개최안내 공문 모음.(부록1.6. 참고)

4)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집. 간호학 학사/전문학사 학위과정.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7

5) 제1차 회의록.(부록4.2. 참고)

여 전체 토의하였다.

2. 연구진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역할 분담을 하여 동의를 얻었다.
3. 연구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4. 연구개발 용역비에 대해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5. 동물보건사 인증기준은 양성대학이 2년제~4년제가 있으므로 어느 학제에 맞추는 것이 적합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고, 동물보건사 양성대학이 2년제 대학이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수립하기로 합의안을 얻었다.
6. 간호사의 경우는 인증기준 영역이 5개 영역 외에 “교육성과”영역을 수립하여 6개 영역이나, 동물보건사 인증기준에서는 국가시험 결과 등의 자료가 현재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교육성과”영역은 다루지 않기로 하고 ①조직 및 운영 ②교육과정 ③학생 ④교수 ⑤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의 5개 영역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1차 회의 주요사항 : 1) 과제 추진 배경, 연구 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소개  
2) 연구개발 방법 및 회의진행 방법  
3) 차기 회의 진행 전략 및 내용  
4) 양성기관 대학은 2년제를 대상으로 하여 인증기준을 수립하기로 결정

## 2) 2차 회의<sup>6)</sup>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11:00~16:00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참석자 : 11명

●경과 :

1. ‘동물보건사 교육기관 평가·인증기준 마련’에서 “교육과정”영역의 핵심 사항인 교과목 및 이수 학점을 결정하였다.
2. ‘교육과정’영역 검토 및 심의를 위해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보협) 및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에서 준비해온 자료<sup>7)</sup>를 중심으로 중점 연구를 한 연구원의 대표발표 후 전체 토의를 하였다.  
① 이수 필수과목은 당초 13과목 36학점에서 15과목 40학점으로 조정하여 정하였다.  
② 임상분야 교과목에 “동물응급진료학(2학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6) 제2차 회의록.(부록 4.4. 참고)

7) 제2차 회의자료.(부록 4.3. 참고)

- ③ 임상분야 교과목에 “동물병원현장실습(2학점)”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④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제시한 교과목 일부는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 A. ‘동물보건영상진단학’→‘동물보건영상학’으로 변경
  - B. ‘동물보건약리학’→‘의약품관리학’으로 변경
  - C. ‘동물보건법규’→‘동물보건복지 및 법규’로 변경
- ⑤ 실습과목 및 학점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및 수인원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중심으로 토의하여 그 안을 결정하였다.
- ⑥ “학년별” 필수 이수 교과목 및 학점, 그리고 이수 필수 실습과목 및 학점은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정리하기로 하였다.
- 3. 현장실습 시간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제시한 바 있는 160시간(안)과 동보협에서 제안한 120시간(안)을 가지고 토의하여 안을 결정하였다.
  - ① 수의과대학동물병원 및 대형동물병원의 현재 진료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기로 하였고,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 의견도 참고하였다.
  - ② 실습생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실습 조건(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sup>8)</sup>)에 대한 현장실습시간이 고려되었다.
  - ③ 그 결과 120시간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실습시간으로 정리되었다.
- 4. 현장실습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수인원이 준비해간 자료를 중심으로 대표 발의가 있었고 전체 토의를 하여 그 안을 확정지었다.<sup>6)</sup>
- 5. 현장실습과 관련된 용어도 정리하였다.

- 2차회의 주요 사항 : 1) “교육과정”영역 세부사항 결정
  - ① 교과목 및 이수학점
  - ② 현장실습 운영방법
- 2) 차기 회의 안건 결정

### 3) 3차 회의<sup>9)</sup>

- 일시 : 2021년 2월 17일(수) 11:00~15:00
-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참석자 : 10명

8)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의 개정안]

9) 제3차 회의록.(부록 4.6. 참고)



●경과 :

1. 인증기준 4개 영역에 대해 수인원과 동보협에서 각 인증기준 영역을 중점 연구 조사한 연구원이 각각 준비해온 자료를 대표 발표하고 사항별로 전체 토의를 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였다.
  - 1) “교수”영역에 대해 수인원과 동보협에서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전체 토의 하여 인증기준 및 항목을 결정하였다.
  - 2) “학생”영역에 대해 수인원과 동보협에서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전체 토의 하여 인증기준 및 항목을 결정하였다.
  - 3) “시설 및 기자재”영역에 대해 수인원과 동보협에서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전체 토의 하여 인증기준 및 항목을 결정하였다.
  - 4) “조직 및 운영”영역에 대해 수인원과 동보협에서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전체 토의 하여 인증기준 및 항목을 결정하였다.
2.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에서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 1) 이 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및 과정에 대한 경계와 범위가 모호하여 이 연구개발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 2) 이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범위에 있지 않고, 전문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학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되었다. 이중 학원은 법 제정시 포함하지 않기로 제외한 바가 있다.
  - 3) 그러나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에서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인증기준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 인증기준 개발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고, 별도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대학 평가·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동물보건사 양성대학과 구별하여 인증기준 중 기관명을 별도로 표시하여 별도 인증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예: 양성대학 인증기준에서 지시되는 ‘대학’, ‘학과’는 →‘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기술하기로 함.)
3. 특례자에 대한 동물보건사 응시자격 부여기준
  - 이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구개발 의뢰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지침에서 주어진 과제가 아니므로 논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지었다.
4.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방법
  - 인증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는 수의학 인증평가기준에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점수화하여 병기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론지었다.

- 3차회의 주요 사항 : 1) 전차(2차) 회의록 접수 및 일부 수정
- 2) 인증기준 중 실습실 및 기자재 규정 검토
- 3) 영역별 인증기준 설정
  - A. ‘교육과정’영역 : 4차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
  - B. ‘조직 및 운영’영역
  - C. ‘학생’영역
  - D. ‘교수’영역
  - E.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영역
- 4)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기준 검토
- 5) “특례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기준 검토
- 6)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방법
- 7) 차기회의 안건 결정

4) 4차 회의<sup>10)</sup>

●일시 : 2021년 2월 24일(수). 11:00~18:00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참석자 : 10명

●경과 :

1. “교육과정”영역 인증기준 정립: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인증기준이 정립이 안 된 “교육과정”영역에 대해 인증기준을 정립하기로 하였다.<sup>10)</sup>
  - 1) 수인원과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각각 인증기준을 준비해 왔고 중점 연구를 한 연구원이 대표 발표를 각각 한 후 전체 토의에 들어가 부문 및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설정하였다.
  - 2) 그 결과 “교육과정”영역은 3부문, 8항목으로 인증기준을 결정하였다.
2. 인증기준 5개 영역에 대하여 항목별 인증기준 확정
  - 1) 각 ‘영역’별로 인증기준 ‘항목’마다 전체 토의를 거쳐 하나씩 인증기준을 검토하고 최종 인증기준(안)을 확정하였다.
  - 2) 각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사항들과 비치자료를 검토하고 확정하였다.
  - 3) 5개 영역별 주요 검토 및 수정 사항은 4차 회의록 6. 회의결과<sup>9)</sup>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3. 인증평가 기준 설정  
인증·평가가 수행될 때 평가단이 항목별 평점 기준에 따른 평점표(항목별) 작성을 위한 기준 마련을 논의하였다.

10) 제4차 회의록.(부록 4.8. 참고)

가. 평가점수(안)

평가결과를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나누고 각각 3, 2, 1, 0점으로 점수화하도록 결정하였다.

나. 판정종류

영역별 평점 결과에 따라 완전인증(3년), 단축인증(2년), 인증 불가로 구분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안)도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4. 자체평가보고서 자료제출 기준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는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제시하도록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2) 신설대학의 경우에도 신입생의 모집 후 농식품부 인증기준에 따라 교육을 한 과거 2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회의 주요 사항 : 1) 전차(3차) 회의록 접수

- 2)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교육과정”영역 인증기준 결정
- 3) 동물보건사 양성교육기관 인증기준 5개 영역 ‘항목’별 기준 및 평가사항 등 결정
- 4) 인증평가기준 설정
  - A. 평가점수
  - B. 판정종류
  - C. 인증유형

5) 자체평가 보고서 자료 제출 기준

●자문위원을 포함한 전체 연구진 회의는 4차 회의가 최종회의임을 공지

5) 5차 회의<sup>11)</sup>

연구개발 관련 공식회의는 2021.2.24.일로 종료되었으나, 인증기준 최종안에 대한 최종 마무리 검토 및 심의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농식품부로부터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2021.3.31.로 연장 승인을 받음<sup>12)</sup>에 따라 인증기준 최종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참석 인원은 연구원으로만 제한함.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16:00~18:30

11) 제5차 회의록.(부록 4.10. 참고)

1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승인 알림. 방역정책과-2128.(부록 1.5. 참고)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참석자 : 7명

●경과 : 제5차 회의는 제4차 회의에서 자문위원을 포함한 연구진 공식회의는 종료되었으나, 첫째, 인증기준 최종안을 최종 마무리 점검 및 확정하기 위하여, 둘째, 4차 회의에서 결정한 인증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계량화 방안이 실제 평가 수행시 평가 범위를 판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평가 점수화 방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2021.3.16일에 개최되었다.

1.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기준(안) 검토 및 확정

1)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5개 인증·평가 영역에 대하여 4차 회의(2021.2.24.)에서 결정한 인증기준(안) 5개 ‘영역’, 15‘부문’, 35‘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논의를 거쳤고, 인증기준 ‘항목’별로 인증기준, 평가사항, 비치자료에 대해 최종 검토를 하고 일부는 수정하였으며 내용을 확정하여 최종 인증기준(안)을 수립하였다.<sup>13)</sup>

2) 평가 기준 점수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평가사항들을 결정하였다.

3) 평가사항의 기재순서는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였다.

2.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 인증기준 중 기관명 표시 방법을 전체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1) 동물보건사 양성교육기관을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인증기준 중 ‘대학’ 또는 ‘학과’의 명칭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기재하도록 하였다.

2)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증기준<sup>14)</sup>을 별도 기준집으로 갖추도록 하였다.

3. 인증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계량화 방안

점수 계량화 방안은 동보협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었으나 점수 배정의 근거가 불확실하여 수인원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점수 계량화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1) 평가시 각 인증기준 항목 내 평가사항 중 1번 평가사항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아 1번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할 수 없고 최종 부적격으로 판정하도록 결정하였다.

2) 각 인증기준 항목은 3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 각 인증기준 항목에서 평가사항별 배점을 하여 항목별 만점은 3점이

13)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 인증기준.(부록 5. 참고)

14) 동물보건사 양성 평생교육기관 인증기준.(부록 6. 참고)

되도록 하였다.

- 4) 점수 계량화 최종(안)은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화 결과 및 계량화 방안<sup>15)</sup> 참조.

●회의 주요 사항 : 1) 전차(4차) 회의록 접수

- 2)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기준(안) 최종 검토 및 확정
- 3) “평생교육기관” 대상 별도 인증기준 중 기관명 표시 방법 확정
- 4) 인증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계량화 방안 확정

---

1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기준 점수 계량화 방안 최종안.(부록 7. 참고)

## 제3장 연구결과

### 제1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항목 준수)

■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과 관련한 지침 중 인증기준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 (목적) 수의사법 제16조의4조(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 인증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정책 연구 수행

### ①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
-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참여 동물병원, 현장실습 교육인원 등)

### ②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등 인적자원 평가 기준 마련

### ③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 기준 마련

### ④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 방법 마련

### □ 협조사항

○ 평가기준 개발계획 및 소요비용 내역, 보조금 교부신청(21.1.20일 까지)

○ 정책 연구과제 추진 및 최종 결과 보고\*(21.1~2월)

\* 정책 연구과제 추진 중 2회 이상(중간, 최종 등) 회의 등을 통해 우리부 의견 수렴

## ■ 인증기준 수립 연구개발 결과

### 1. 교육과정 영역

●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①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기준 마련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① 동물보건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은  
교육평가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명시되는 “교육과정”영역과 동일하므로  
“교육과정”영역으로 구분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 1) 이 “교육과정”영역 인증기준은 4차 회의(2021.2.24.)에서 결정되었고 5차 회의(2021.3.16.)에서 최종 마무리 검토 및 확정되었다.
- 2) 교육과정에 대한 부문 및 항목도 4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 3) 교육과정 영역은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4) 교육과정 영역은 3부문, 8항목으로 수립하였다.
- 5) 교육과정 영역 최종 인증기준(안) 내용은 표3.1과 같다.

표 3.1.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Ⅱ. 교육 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 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2. 학과는 전공교과목(이론, 실습)의 특성에 적절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는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실습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2. '조직 및 운영' 영역

- 1) 이 영역은 모든 의학계열에서 교육기관 평가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평가 영역이므로 농식품부 연구개발지침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영역에 포함하기로 1차 회의(2021.1.26.)<sup>1)</sup>에서 결정하였다.
- 2) '조직 및 운영' 영역에서 부문 및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안)은 3차 회의(2021.2.17.)<sup>2)</sup>에서 결정되었으며 5차 회의(2021.3.16.)<sup>3)</sup>에서 최종 마무리 검토 및 확정되었다.
- 3) 조직 및 운영 영역은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4) 조직 및 운영 영역은 3부문 6항목의 인증기준으로 수립하였다.
- 5) 조직 및 운영 영역 최종 인증기준(안) 내용은 표 3.2와 같다.

---

1) 제1차 회의록.(부록 4.2. 참고)  
2) 제3차 회의록.(부록 4.6. 참고)  
3) 제5차 회의록.(부록 4.10. 참고)

표 3.2. 조직 및 운영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3. '학생'영역

●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②교수(전임,겸임,초빙 등)등 인적자원 평가 기준 마련

- 1) 이 영역은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원 주요 정책개발 내용 중 “② 교수 등 인적자원 평가기준마련”에서 인적자원의 하나인 “학생”영역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 2) 부문 및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은 3차 회의(2021.2.17.)에서 결정되었으며, 5차 회의(2021.3.16.)에서 최종 마무리 검토 및 확정되었다.
- 3) 학생 영역은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3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4) 학생 영역은 3부문 8항목의 인증기준으로 수립하였다.
- 5) 학생 영역 최종 인증기준(안) 내용은 표 3.3과 같다.

표 3.3. 학생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활동 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4. '교수'영역

●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②교수(전임,겸임,초빙 등)등 인적자원 평가 기준 마련

- 1) '교수'영역은 농식품부 연구개발지침 주요정책개발 내용 중 “② 교수 등 인적자원 평가기준마련”에서 평가대상기관의 인적자원인 “교수”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 2) 부문 및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안)은 3차 회의(2021.2.17.)에서 결정되었으며, 5차 회의(2021.3.16.)에서 최종 마무리 검토 및 확정되었다.
- 3) 교수 영역은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4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4) 교수 영역은 3부문, 7영역으로 수립하였다.
- 5) 교수 영역 최종 인증기준(안) 내용은 표3.4와 같다.

표 3.4. 교수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 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7항목	

##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③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 기준 마련

- 1)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인증기준 영역은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 주요 정책개발 내용 중 “③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기준 마련”에 해당되는 인증기준 영역이다.
- 2)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에서 부문 및 항목에 대한 인증기준(안)은 3차 회의(2021.2.17.)에서 결정되었으며 5차 회의(2021.3.16.)에서 최종 마무리 검토 및 확정되었다.
- 3)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은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5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4)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은 3부문, 6영역으로 제정하였다.
-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최종 인증기준(안) 내용은 표3.5와 같다.

표 3.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V.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제2절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평가) 적용방법 마련

### ■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④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평가) 적용 방법 마련

#### ■ 연구결과

##### 1.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점수(안)

- 1) 항목별 평가와 점수는 4차 회의(2021.2.24.)에서 논의하여 정하였고 5차 회의(2021.3.16.)에서 최종 점검하여 확정하였다.
- 2) 평가점수(안)은 표 3.6과 같다.

표 3.6. 평가점수(안)

평가결과	점수
우수	3
적격	2
미흡	1
부적격	0

##### 2. 판정 종류와 판정 기준 및 요건

- 1) 판정 종류와 판정 기준 및 요건은 4차 회의(2021.2.24.)에서 논의하여 정하였고 5차 회의(2021.3.16.)에서 최종 점검하여 확정하였다.

표 3.7. 판정 기준 및 요건

판정 종류	판정 기준 및 요건
완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두 적격(2점) 이상인 경우</li> </ul>
단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1점)인 경우</li> <li>* 단, 2년 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해서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최종 판정함</li> </ul>
인증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0점) 이 1개 이상인 경우</li> <li>•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 이상인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인증불가로 판정함</li> <li>• 인증 불가 판정시 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li> </ul>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물보건사 인증판정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li> </ul>

### 3.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 1)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은 4차 회의(2021.2.24.)에서 논의하여 정하였고 5차 회의(2021.3.16.)에서 최종 점검하여 확정하였다.

표 3.8. 인증유형과 인증기간

인증 유형	인증 기간
완전인증	• 3년 (인증일로부터 만 3년 간 인증 유효)
단축인증	• 2년 (인증일로부터 만 2년 간 인증 유효)
인증불가	•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 불가로 판정하며, 인증 불가 판정 후 판정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

### 4. 평가기준 점수 계량화 방안

- 1) 평가기준 점수 계량화 방안은 5차 회의(2021.3.16.)에서 주로 논의하여 확정되었다.
- 2) 점수 계량화 방안에서
  - ①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배점은 표 3.9,
  - ② 각 항목의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3점 만점)은 표 3.10,
  - ③ 인증유형별 판정기준은 표 3.11,
  - ④ 계량화 마련을 위한 근거 계산표는 표 3.12와 같다.

###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평가) 적용방법 최종안은 부록 7에 수록되어 있다

표 3.9.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배점

평가	배점	항목별 평가 기준	비고
우수	3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항목 우수인 경우 105점 만점
적격	2	평가사항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항목 적격인 경우 총 70점
미흡	1	평가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우	전항목 미흡인 경우 총 35점
부적격	0	평가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 3.10. 각 항목의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 (3점 만점)

평가사항 개수	평가사항 별 배점
3	각 평가사항 당 1점
4	1, 2번째 평가사항은 각 1점, 3, 4번째 평가사항은 각 0.5점
5	1번째 평가사항은 1점, 나머지 4개의 평가사항은 각 0.5점
6	각 평가사항 당 0.5점

표 3.11. 인증유형 별 판정기준

인증유형	판정 기준 (만점 105점)
완전인증 (3년)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70점 이상 2. 5개 영역 모두 영역별 평가점수가 적격 이상
단축인증 (2년)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35점 이상 2.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평가 점수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인증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총점 34점 이하 2. 총점에 관계없이 부적격(0점) 항목이 1개 이상 3. 총점에 관계없이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평가 점수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표 3.12.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마련을 위한 근거 계산표

영역	부문	항목	평가사항 개수	우수(전항 목만 경우) 점수	적격(전항 목 경우) 점수	미흡(전항 목 경우) 점수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3	3	2	1
		1.1.2.	3	3	2	1
	1.2. 조직과 재정	1.2.1.	4	3	2	1
		1.2.2.	4	3	2	1
	1.3. 전략과 계획	1.3.1.	3	3	2	1
		1.3.2.	3	3	2	1
		소계	20	18	12	6
2. 교육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3	3	2	1
		2.1.2.	5	3	2	1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3	3	2	1
		2.2.2.	3	3	2	1
		2.2.3.	4	3	2	1
		2.2.4.	5	3	2	1
	2.3 교육과정 개선	2.3.1.	4	3	2	1
		2.3.2.	3	3	2	1
		소계	30	24	16	8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3	3	2
3.1.2.			3	3	2	1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4	3	2	1
		3.2.2.	3	3	2	1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3	3	2	1
		3.3.2.	5	3	2	1
		3.3.3.	5	3	2	1
		3.3.4.	6	3	2	1
		소계	32	24	16	8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3	3	2
	4.1.2.		3	3	2	1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3	3	2	1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1.	3	3	2	1
		4.3.2.	3	3	2	1
		4.3.3.	3	3	2	1
		4.3.4.	3	3	2	1
		소계	21	21	14	7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3	3	2	1
		5.1.2.	3	3	2	1
		5.1.3.	3	3	2	1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3	3	2	1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3	3	2	1
		5.3.2.	3	3	2	1
		소계	18	18	12	6
		총계	121	105	70	35

### 제3절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기준 개발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요구된 항목

#### □ 주요 정책 개발 내용

##### < 기본원칙 >

◇ ①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생, ②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모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부여

②“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인증조건 개발.

#### ■ 연구 개발 결과

##### 1. “평생교육기관”의 범위 설정 곤란

- 1) “평생교육기관”의 기관 및 교육 과정에 대한 경계와 범위가 모호하여 이 연구개발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3차 회의: 2021.2.17.)
- 2) 이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범위에 있지 않고, 전문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학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논의되었다.

##### 2.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별도 인증기준 설정

- 1) 농식품부 연구개발 지침에 평생교육기관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므로 인증기준 개발이 지침으로 제시되어 있어 별도 인증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차 회의: 2021.2.17.)
- 2) 별도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양성대학(2년제) 평가·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단지 기관 명칭을 다르게 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3차 회의: 2021.2.17. 및 5차 회의: 2021.3.16.)

##### 3.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증기준은 부록6에 수록되어 있다.

#### 제4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항목별 평가 기준집 제정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기준집 제정은 이 연구목표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된다.
- 인증기준 제정 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평가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서면 평가뿐 아니라 방문 평가 시 평가를 위한 부록, 비치 자료, 현장 면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사항 및 평가를 위해 반드시 확인 평가할 사항들을 영역별, 부문별, 항목별로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3차~5차 연구개발 회의)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의 영역별, 부문별, 및 항목별 평가 기준집은 다음 자료와 같다.
- 기준집은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부록 5)인증기준 기준집(안)과 동물보건사 양성 평생교육기관(부록 6) 기준집(안)으로 구분하여 각각 부록 5와 부록 6에 수록되어 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  
인증 영역별, 부문별, 항목별  
평가를 위한 기준집」





## 개 요

영역	부문 (수)	항목 (수)
1. 조직 및 운영	3	6
2. 교육과정	3	8
3. 학생	3	8
4. 교수	3	7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3	6
계	15	35

## 1. 조직 및 운영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 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1. 조직 및 운영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학과를 운영하여야 한다.

###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는 대학의 비전과 동물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동물보건사의 핵심역량이 포함되어 있는가?
2. 교육목적과 목표는 대학과 학과의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는가?
3. 교육목적과 목표를 개정할 경우,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쳤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1-1. 교육목적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 1-2. 개정할 경우, 관련 조직(위원회 등)의 활동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의자료, 회의록 등 기타)

###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물보건사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를 명문화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사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개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쳤는가?
3. 동물보건사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학과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 ■ 부록

- 1-1. 학과에서 설정한 동물보건사교육 졸업역량(학습성과)

#### ■ 비치자료

- 1-3. 동물보건사 교육 학습성과(학생의 졸업역량)
- 1-4. 동물보건사 학습성과 설정을 위한 활동 자료(회의자료 등)
- 1-5.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공지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 예산편성과 집행, 기타 학과 운영 등에 학(과)장이 동물보건학 전공 관련 전문성 및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과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 학과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조교)이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대학 재정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4. 학(과)장의 학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 부록

- 1-2. 학과 운영 규정
- 1-3. 대학과 학과의 조직도, 학과 위원회 위원 명단
- 1-4. 학과 보직교수와 행정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표, 학(과)장의 발령대장

### 비치자료

- 1-6. 대학 인사 규정
- 1-7. 학과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정책결정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8. 학과 운영 지원 인력의 고용과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학과 행정직원 또는 조교의 발령대장,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대장 등)
- 1-9. 학(과)장의 임무와 권한이 명시된 규정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10. 학(과)장의 수의사 면허증 또는 최종 학위 증명서

### 현장확인

1. 교수면담

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학과 재학생 수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학과 예산을 적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2. 학과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3. 학과 예산과 실험실습비 집행률이 각각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
4.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부록

- 1-5. 학과 예산의 편성 내역(도표 작성)
- 1-6.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자료(도표 작성)

### 비치차료

- 1-11. 예산편성 및 심의 관련 자료(공문, 위원회 서류 등) (최근 2년)
- 1-12. 학과 예산의 집행 관련 결재 서류 등 근거자료(최근 2년)
- 1-13.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서류(최근 2년)
- 1-14. 실험실습비 운영규정
- 1-15. 실험실습비 관련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 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확인

1. 교수 및 직원 면담

### 1.3. 전략과 계획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발전계획을 추진한 활동 내용과 실적이 있는가?
3. 발전계획과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 1-7.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서

#### 비치자료

- 1-16. 학과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규정, 위원회 회의록 등(최근 2년)
- 1-17. 학과 발전계획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
- 1-18. 발전계획의 실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자료와 개선에 반영한 자료(최근 2년)

###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 ■ 평가사항

1.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가?
2.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3.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가?

#### ■ 부록

1-8. 중·장기 발전계획의 예산과 집행 자료

#### ■ 비치차료

- 1-19.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 및 집행실적 포함)(최근 2년)



##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Ⅱ. 교육 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 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2. 학과는 전공교과목(이론, 실습)의 특성에 적절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는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실습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2. 교육과정

동물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대학과 학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론 교육, 교내 실습 및 현장 실습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현장 실습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현장 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는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였는가?
2.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이 70학점 이상인가?
3. 학습성과는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가?

#### 부록

- 2.1.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년간 입학생에게 적용된 교육과정 편성표)

#### 비치자료

- 2-1.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규정
- 2-2. 학습성과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개정한 경우, 개정근거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사 교과과정 중 필수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현장실습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0학점 이상인가?
2. 기초·예방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9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3. 임상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9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4. 복지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0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5. 필수전공교과목의 학년별 편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

### 부록

- 2-2.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대한 학칙 또는 규정(부분 발췌)
- 2-3. 대학의 이수구분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개 학년도 입학생)
- 2-4.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최근 2년 개설된 교과목)

### 비치차료

- 2-3.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 2-4.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 규정
- 2-5. 졸업생 전 학년 성적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 필수전공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영역	교육내용	필수 교과목	최소 이수 학점
기초예방 분야 (3과목)	동물의 구조, 해부 및 기능 동물의 계통, 원인별 주요질병 동물위생, 인수공통전염병 및 공중보건	동물해부생리학(3)	9학점
		동물질병학(3)	
		동물공중보건학(3)	
임상 분야 (7과목)	동물내과간호 및 수의임상병리 동물간호 동물외과간호 및 수의영상진단 동물간호 동물응급간호, 전공용어/원무행정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건내과학(3)	19학점
		동물보건외과학(3)	
		동물보건임상병리학(3)	
		동물보건응급간호학(2)	
		동물보건영상학(2)	
		동물병원실무(3)	
		의약품관리학(3)	
복지 분야 (4과목)	동물보건관련 법령/동물윤리/복지 반려동물 총론 동물행동 및 행동교정 동물영양	동물보건복지및법규(2)	10학점
		반려동물학(2)	
		동물행동교정학(3)	
		동물보건영양학(3)	
현장실습	동물병원현장실습		2학점
<b>15과목</b>			<b>40학점</b>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2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학점	이론	실습	
1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3	1	2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동물공중보건학	3	3		
	복지	반려동물학	2	2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영양학	3	3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3	1	2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3	1	2	
<b>소계</b>			<b>19</b>	<b>15</b>	<b>4</b>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2	1	1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2	1	1		
<b>소계</b>			<b>19</b>	<b>7</b>	<b>12</b>	
동물병원현장실습			2	0	2	
<b>합계</b>			<b>40</b>	<b>22</b>	<b>18</b>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4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학점	이론	실습	
1	기초예방	동물보건영양학	3	3	0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복지	반려동물학	2	2	0	
2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3	1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0	
	임상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3	1	2	
	복지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	3	1	2	
3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2	1	1	
4	임상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2	1	1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3	1	2	
	복지	동물공중보건학	3	3	0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0	
동물병원현장실습			2	0	2	
<b>합계</b>			<b>40</b>	<b>22</b>	<b>18</b>	

##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필수전공교과목별 학습목표와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성과를 설정하고 있는가?
2. 필수전공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도구 등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가?
3. 학생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2-5. 전공이론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2개 교과목)

### 비치자료

- 2-6. 학습목표 및 성과, 평가방법 및 도구가 제시된 필수 전공교과목 강의계획서
- 2-7.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 자료 및 분석결과 등

2.2.2.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이론, 실습 등)에 적절한 학생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 ■ 평가사항

1.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이론강의실과 실습실의 운영관리는 적절한가?
2. 필수전공이론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학기 평균 5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3. 전공실습교과목의 1개 분반 당 학생 수가 3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 ■ 부록

2-6. 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 ■ 비치차료

- 2-8. 이론 강의실 사용일지 및 분반별 출석부
- 2-9. 실습실 사용일지 및 분반별 출석부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공실습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현황이 필수전공 교과목 총 학점 대비 40% 이상인가?
2. 현장실습은 4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으로 편성되어있는가?
3. 실습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과 활용이 적절한가?
4. 교내실습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 2-7. 학생별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2-8. 현장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 비치자료

- 2-10. 교육과정편성표 등(교내실습과 현장실습 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확인가능 자료)
- 2-11. 강의시간표
- 2-12. 주차별 실습계획서
- 2-13. 현장실습 교과목별 실습지침서(학생용, 지도자용 각 1부)
- 2-14. 현장실습 교과목별 실제 학생이 사용한 실습지침서 각 1부(최근 2개 학기)

### ※ 실습시수 편성필수 교과목

<b>이수필수 실습 교과목 (총 10과목, 18학점)</b>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2-1-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2-1-1)
	동물병원실무및실습(3-1-2)
	의약품관리학및실습(3-1-2)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3-1-2)
	동물병원현장실습(2-0-2)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기관은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대학 현장실습절차는 문서화되어 있고 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3. 현장실습과 관련된 양식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4. 현장실습 동물병원과의 실습 운영은 협약체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현장실습 이수확인 은 현장실습 협약상의 '현장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부록**

2-9.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비치자료**

2-15. 현장실습기관 협약서 및 대한수의사회 인증을 받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6. 현장실습운영규정

2-17. 동물보건사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2-18. 학생이 실제 활용한 현장실습 지침서, 현장실습지도교원의 임상실습 지도일지 등 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의 실습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개 학기)

##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규정, 조직, 예산을 포함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가 있는가?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과 내외의 의견수렴 절차와 제도가 있는가?
2. 교과목의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CQI),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교육목표 달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평균 5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부록

- 2-10.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자료 (최근 2년)
- 2-11.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자료

### 비치자료

- 2-19.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관련 규정
- 2-20.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직의 회의록 등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1. 교육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2.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3. 교육목표 달성평가 결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 강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 및 활용자료
- 2-24. 국가시험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 ■ 평가사항

1.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 대한 학생의 평가과정이 있는가?
2.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개선환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부록

2-12. 학생의 현장실습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자료

### ■ 비치자료

2-25. 실습 후 간담회 운영 및 결과보고서

### 3. 학생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활동 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p>소계 - 3부문 8항목</p>		

### 3. 학생

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 효율적인 학습, 생활지도 및 졸업 후 진로를 위한 학생 지도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학생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임상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어 임상실습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학생 지도 체제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있는가?
2. 교수별 정기적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학생지도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가 있는가?

##### 부록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지도교수제도 운영 현황

##### 비치자료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교수별 상담 및 지도 학생 명단
- 3-3. 교수별 상담 및 지도 실적의 증빙자료(일지 또는 전산기록 등)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 평가사항

1.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는가?
2.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3.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 부록

3-3. 진로지원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 현황

#### ■ 비치자료

- 3-4.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결과보고서, 공문 등)
- 3-5.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행 자료

##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2.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보험, 비상연락망 체계 등)
3. 학생의 교내실습을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부록

3-4. 교내 실습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 비치자료

- 3-6. 교내실습을 위한 안전 관리 규정
- 3-7. 안전 관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험, 비상연락망 등)
- 3-8. 교내실습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 및 실시자료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동아리 활동,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 ■ 평가사항

1. 학생의 학술활동, 동아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가?
2. 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체제가 있는가?
3.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 부록

3-5. 학생 학내·외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 ■ 비치자료

- 3-9.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지도체제에 대한 자료
- 3-10.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자료



###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매년 10%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3.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3-6. 장학금 수혜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비치자료

- 3-11. 장학금 지급 규정
- 3-12. 장학생 선발,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수회의 자료, 공문 등, 최근 2년)
- 3-13. 장학금 지급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예산 집행 서류 등, 최근 2년)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평가사항

1. 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2.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3. 모든 학생에게 개인용 사물함을 제공하고 있는가?
4.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5.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지시설의 개선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 ■ 부록

3-7. 학생 편의시설 현황(도표 작성)

### ■ 비치자료

- 3-14. 학생 편의시설 현황 자료
- 3-15.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자료
- 3-16.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 ■ 평가사항

1.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2. 공정한 기숙사 배정을 위한 기준이 있는가?
3. 타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우선 배정기준이 있는가?
4. 기숙사 배정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5. 기숙사의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 ■ 부록

3-8. 학생의 기숙사 시설과 입실 현황(도표 작성)

#### ■ 비치자료

- 3-17. 타 지역 학생의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배정기준 자료
- 3-18. 기숙사 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료
- 3-19. 동물보건사교육 관련 학과 학생의 기숙사 지원 및 선정 현황

###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시설(보건진료실 또는 병원)과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2.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예: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이 있는가?
3.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제가 있는가?
4.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 상담 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학생의 학내외 학습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대책(예: 보험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6. 학생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부록

- 3-9. 보건시설(양호실, 보건실) 및 인력 현황
- 3-10. 협약서(협약에 의하여 학생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 있는 경우)

#### 비치자료

- 3-20. 학생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시설과 체제 및 운영에 관한 자료
- 3-21. 보험가입 증빙자료

## 4. 교수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 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7항목		

#### 4. 교수

학과는 동물보건학 분야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 전공 분야의 역량을 갖춘 교수를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교수는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교육, 연구, 봉사 및 연수 활동 등 교수업적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 1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지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절차 및 평가방법이 있는가?
- 2 전임교수의 직급승진 심사제도가 있는가?
- 3 전임교수의 정년보장 심사제도가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 교원 인사규정(대학 규정, 학과 내규)
- 4-2. 전임교수 임용서류(학위, 경력, 직급 등 입증 자료)
- 4-3. 전임교수 임면관련 공문(최근 2년)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평가사항

1. 학과는 입학정원 30명 기준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수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가?
2. 필수전공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가?
3. 학과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부록

- 4-1. 전임교원 확보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비치자료

- 4-4. 전임교수의 수의사면허증 증빙자료
- 4-5. 전임교수의 학위 증빙자료 또는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
- 4-6. 학과의 교과배당표

## 4.2.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가?
2. 현장지도자는 진료수의사로 등록되고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3.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현장지도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가?

### 부록

4-2.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비치자료

- 4-7. 현장실습 배치표
- 4-8. 현장실습지도교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9. 현장지도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속기관 공문 인정)
- 4-10. 실습지도 협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회의록 등 (최근 2개 학기)



###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 1인의 필수전공교과목 주당 수업 시수는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에 대한 대학 규정이 있는가?
3.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는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 4-3. 학기별 개설 교과목 목록(최근 2년)
- 4-4. 학기별 강의시간표(최근 2년)

##### 비치자료

- 4-11. 학과의 강의시간표(최근 2년)
- 4-12.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습 교과목 인정시수 포함)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해 전임교원 지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3.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예산 집행 실적은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3. 전임교수의 동물보건관련 전문직 단체 활동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자료
- 4-14. 교수 역량개발 지원 관련 예·결산 자료

###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수의 국내 연수나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참가비,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가 갖추어져 있는가?
2. 교수의 해외 연수나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참가비,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가 갖추어져 있는가?
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 지원 집행 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5. 전임교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 지원 규정
- 4-16. 전임교수의 연수나 학회 등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자료
- 4-17. 전임교수의 연수나 학회 등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예·결산 자료

####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가?
3. 전임교수의 전문직 활동 실적(논문, 특허, 저·역서 등)은 적절한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8. 교수 업적 평가 지침 또는 규정
- 4-19. 교수 업적 평가 운영 실적 증빙자료
- 4-20. 전임교수 연구논문, 특허, 저·역서 목록
- 4-2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 자료

##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V.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학과는 동물보건교육의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학술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실무 교육에 적합한 현장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모집정원 대비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이 학생 1인당 학생 1인 1.5m<sup>2</sup>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교육기본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
3.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회의실, 자율학습실, 사물함, 휴게실 등)

#### 부록

5-1. 실습실 도면

#### 비치자료

- 5-1. 학과 관련 건축물대장 (강의실 목록 및 면적 포함)
- 5-2. 학과 교육기본시설 구분별 목록(건물명, 층, 호실, 면적 포함)

5.1.2.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평가사항

1. 도서관에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가 확보되어 있는가?
2.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
3. 학습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된 실적이 있는가?

#### ■ 부록

해당 없음

#### ■ 비치자료

- 5-3. 동물보건학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 목록 및 활용 실적 (도서구매 예산 집행자료 포함)
- 5-4. 학술정보서비스 관련 지침 및 안내자료 등
- 5-5. 학술정보서비스 시스템 (방문평가 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모집정원 30명을 기준으로 필수 기자재가 100% 확보되어 있는가?
2. 대학 또는 학과의 지침에 따라 필수 기자재가 관리되고 있는가?
3.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5-6.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7. 실습기자재 보유 및 관리 목록 (최근2년)
- 5-8. 실습기자재 사용 일지 및 관리 대장 (최근2년)
- 5-9. 기자재 구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예·결산 자료 (최근2년)

**※ 필수기자재 목록**

필수 교과목	보유기자재	개수	위치	관리 상태	최소충족조건 (모집정원 30명 기준)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개 골격 모델				3
	고양이 골격 모델				1
	분리형 장기모형 (개)				1
	분리형 장기모형 (고양이)				1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	청진기				30
	직장체온계				30
	검이경				1
	검안경				1
	간이혈당계				2
	네블라이저				1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	도플러혈압계				2
	수액대				6
	일반외과 수술기구(set)				6
	정형외과 수술기구(set)				1
	수술포(set)				6
	멸균기				1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수술대				1
	자동혈구분석기(CBC)				1
	자동혈청화학분석기(Chemistry)				1
	현미경				6
	요비중계				6
	원심분리기				1
동물응급간호학및실습	응급키트				1
	인퓨전펌프				1
	시린지펌프				1
	앰부백				1
	집중치료부스(Intensive Care Unit)				1
	동물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엑스레이 촬영기 (모형가능)				1
	고글/납장갑/납복 (set)				1
	촬영 자				1
동물병원실무및실습	컴퓨터 (chart program installed)				1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	FCI규격 어질리티장비 set				1



## 5.2. 연구시설 및 설비

###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이 확보되어 있는가?
2. 개인연구실의 실내 설비(실내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전화, 전산망 등)가 적절한가?
3. 연구실 유지, 보수를 위한 연간 예산이 대학본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5-10. 교수연구실 등의 교수연구지원시설 확보 현황과 시설 설비 현황(조명, 방음, 환기, 난방시설 등)
- 5-11. 연구실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12. 연구실 유지 및 보수 관련 예산집행 자료

### 5.3. 시설 및 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기본시설과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는가?
2. 기본시설과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3.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시설과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 5-2. 시설·설비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활용 실적 자료

#### 비치자료

- 5-13. 교육 및 연구시설 설비 관리규정 또는 지침  
5-14. 시설·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예산 집행 내역(최근2년)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가?
2.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3.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과 전담부서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 5-3. 학내 시설·설비 및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규정과 점검, 수리 및 개선 실적 자료
- 5-4.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대피 교육에 대한 근거자료

#### 비치자료

- 5-15.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5-16. 위해요소 관리 규정 및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록 (용어)

- **영역:** 인증 평가 요소 중 가장 상위 개념의 5개 주제 단위를 의미함.
- **부문:** 각 5개 영역 바로 하위의 소주제 단위를 의미함.
- **항목:** 각 부문(소주제) 아래 최하위 세부 단위를 의미함.
- **현장실습지도교원:**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 소속으로서 학생들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대학 전임교수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석사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을 의미함.
- **현장지도자:** 임상실습기관(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에 소속된 진료수의사(임상경력 2년 이상)로서 학생들의 임상현장 실습 지도를 위해 대학이 위촉한 수의사를 의미함.
-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의과대학내 동물병원을 지칭함.
- **전임교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인증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인정 제외대상 교원: 1)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2) 책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및 책임용 횡수를 제한하는 교원
- **입학정원:**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학정보공시'의 제3항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공시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의미함.
- **편제정원:** '대학정보공시'의 제3항을 참고하여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년제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2배, 일반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4배의 수를 의미한다.

## 제4장 고찰

### 1. 인증기준 개발 방법 및 과정의 적합성

#### 1)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 A. 연구원 구성

연구원 구성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 기관이므로 연구원은 각 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같은 수로 배정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해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동시에 문제 제기가 없었으므로 연구원 구성은 적합하였다고 판단된다.

연구원 구성에 대한수의사회를 참여시킨 이유는 동물보건사 제도 법령이 공포되는 기본 상황에서 대한수의사회가 동물의료체계의 주관기관이고 대한수의사회의 소속 회원들이 동물보건사를 고용하는 주체임에 따라 그 발단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대한수의사회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B. 자문위원 구성

자문위원으로는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수의과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의 3단체가 참여하였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참여한 것은 한국수의과대학협회는 수의과대학에서 수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 교과목 및 실습 과목을 설정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므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국동물병원협회가 참여한 것은 동물보건사가 한국동물병원협회의 소속 회원들을 보조하는 인력이 되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은 수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이전까지는 2003년에 창립한 한국동물복지학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 2004년부터 자율로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발급하여 동물병원에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보조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졌으나, 이 시스템은 공식적인 국가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었고, 동물보건사 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동물보건사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자인 한국동물병원협회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시 동물보건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현장실습의 이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 이유는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서 동물보건학 전공자들이 현장실습을 이수 받도록 인증기준(안)에 명시되어 있고, 전국 각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은 동물보건사 양성 현장실습을 위한 중요한 실습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2) 동물보건사 양성에 적합한 평가·인증 영역 설정의 적합성

### A.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지침상의 평가·인증 영역 설정<sup>1)</sup>

- ①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마련’은 의학계열의 일반적인 인증 영역 중 ‘교육과정’영역에 해당된다.
- ②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등 인적자원 평가 기준 마련’은 인적자원 평가·인증에서 ‘교수’영역에 해당된다. 농식품부 지침상 “인적자원”이라는 명제가 있으므로, 이 연구개발에서는 의학 계열의 일반적인 인적자원 인증영역인 ‘학생’영역을 별도로 추가하기로 하였다.
- ③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 기준 마련’은 의학 계열의 일반적인 인증영역 중 ‘시설 및 자원 영역, 시설 및 설비 영역, 또는 시설 환경’에 해당된다. 이 연구개발에서는 이 영역을 ‘교육 시설 및 실습 기자재’영역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 ④ 일반적인 의학 계열 평가·인증 영역 중 농식품부 연구개발지침에서 제시가 되지 않은 영역은 ‘조직 및 운영, 운영체계’영역이다. 이 연구개발에서는 “조직 및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영역을 추가하여 설정하기로 하였다.
- ⑤ 동물보건사와 유사한 제도로 간주될 수 있는 간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에서는 “교육성과”라는 인증영역이 있다.<sup>2)</sup> 이 연구개발에서는 아직 동물보건사 평가·인증에 따른 졸업생이 배출되어 있지 않고 동물보건사 국가 시험도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 B.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연구개발에서 다루기로 한 평가 영역

- ① 1영역 : 조직 및 운영 영역
- ② 2영역 : 교육과정 영역
- ③ 3영역 : 학생 영역
- ④ 4영역 : 교수 영역
- ⑤ 5영역 : 교육 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 3) 한국수의학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간 인증기준 결정 과정의 적합성

### A. 인증·평가 영역의 설정 및 인증기준 수립 일정 조정

- ① 제일 먼저 농식품부 연구개발지침의 내용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평가·인증 영역을 5가지 영역으로 상호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방역정책과-647.(부록 1.1 참고)

2)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집. 간호학학사/전문학사 학위과정.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7

② 연구개발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2021.01.15.~2021.02.28.)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일정을 정하여<sup>3)</sup> 해당 일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구진 1차 회의 (2021.01.26.) : 역할분담 및 일정조정

○ 2차회의 (2021.02.03.): 동물보건사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 이수시간 확정 - 교과목 및 실습, 현장실습 운영방법

○ 3차 회의 (2021.02.17.) : 영역별 인증기준 개발 (교수영역, 학생영역, 시설 및 기자재 영역, 조직 및 운영 영역)

○ 4차 회의(2021.02.24.) : ● 교육과정 인증기준 결정

● 5개 영역별,부문별, 항목별 인증기준(안) 및 평가사항 결정

● 인증평가기준 설정 및 점수화

◎인증기준(안)에 대한 최종 검토 및 평가 기준 점수 계량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고서 제출기한을 3.31로 연장 승인을 받아<sup>4)</sup>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5차 회의 (2021.03.16.) : • 인증기준 최종 검토 및 최종안 확정

• 인증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계량화 방안 확정

• “평생교육기관” 대상 별도 인증기준 제정방안 확정

③ 공동 연구기관 간 인증기준 결정 의견 조율 방안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반려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이 역량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의학 교육을 참고한 동물보건사 필수 이수 전공과목 및 필수 실습과목, 현장실습 수행 및 운영방법, 전임교수 확보 방안, 필수 실습 기자재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연구원 및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증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는 양질의 전문 능력을 갖춘 동물보건사 배출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 필수 실습 과목, 현장실습 시간 및 실습 방법, 필수 전임교수의 확보, 필수 실습기자재 확보 등 자체적으로 인증기준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인증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공동 연구기관 간 서로 주장이 각각 첨예화될 수 있었으나, 인증기준 설정을 위한 안건마다 각 안건을 중점 연구한 연구원이 각각 대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 전체 토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안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3) 연구수행일정표, 연구개발 1차 회의자료. (부록 4.1. 참고)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승인 알림. 방역정책과-2128.(부록 1.5. 참고)

#### 4) 소결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개발은 서로 입장과 지향 방향이 다를 수 있는 2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서로의 주장이 달라 많은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주어진 짧은 연구개발 기간 동안 연구진 구성, 연구 일정, 연구개발 수행, 인증기준 결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 및 능력을 갖춘 양질의 동물보건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한 올바른 인증기준 정립의 대명제를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인증기준(안)을 수립함으로써 양질의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표준기준(안)을 제정하였다고 판단된다.

## 2. 인증기준의 적합성

### 1) 1영역 : 조직 및 운영 영역

- ① 조직 및 운영 영역은 수의학교육인증기준<sup>5)</sup>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sup>2)</sup>을 참고하여 수립하였다.
- ② 이 영역은 당초 농식품부 연구개발지침<sup>1)</sup>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의학 계열에서 일반적으로 인증·평가하는 영역이므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기준에도 영역의 하나로 구분하여 수립하기로 결정 하였다.

### 2) 2영역 : 교육과정 영역

- ① 전공 이수 교과목의 설정
  -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평가인증 기준 중에서 전공 이수 교과목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일본 동물간호사 커리큘럼<sup>6)</sup> 및 간호조무사 시험 과목을 참고하였다.
  - 또한, 한국수의과대학협회의 의견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동물보건사 이수 교과목은 해외 자료 중에서 일본 동물간호사 이수 교과목, AVMA 수의 테크니션 이수과목, OIE Veterinary paraprofessionals의 이수과목을 참고하였다.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수의의료 현장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의 이수 교과목 15과목(40학점)을 선정하였다.
- ② 전공 이수 실습과목의 설정
  - 전공 이수 실습과목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 또한, 일본 동물간호사 양성기관 이수 실습과목도 참고하였다.

5) 수의학교육인증기준. (부록 4.1.의 첨부 3. 참고)

6) 일본 동물간호사 커리큘럼(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2021.03). (부록 8.1. 참고)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동물보건사 전공 이수 실습교과목은 해외 자료 중에서 일본 동물간호사 전공 이수 실습 교과목<sup>6)</sup>, AVMA 수의 테크니션 이수과목<sup>7)</sup>, OIE Veterinary paraprofessionals의 이수 실습과목<sup>8)</sup>을 참고하였다.
-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수의의료 현장에 가장 적합한 10개 실습과목(18학점)을 선정하였다.

표 4.1. 간호조무사 시험과목, 일본동물간호사 교과목, 동물보건사 필수 이수과목(안)

	간호 조무사 (시험 과목)	일본 동물간호사 교과목	동물보건사 필수 이수과목(안)
기초	기초간호학(40% 반영, 8개 과목) (치의학 및 한의학기초 개론 포함)	기초 동물학(8개 과목)	기초 예방분야(3과목)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모성·아동·노인 응급관련 간호기초	-생명윤리동물복지 -동물형태기능학 -동물번식학 -동물행동학 -동물영양학 -비교동물학 -동물간호관련법규 동물애호적정시양관련법규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보건/응용/예방	보건간호학(20% 반영, 4개 과목)	기초동물간호학(5개 과목)	·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전 -산업보전	-동물간호학개론 -동물병리학 -동물약리학 -동물감염증학 -공중위생학	·
임상	공중보건학(20%반영)	임상동물간호학(6개과목)	임상분야(8과목)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 보건 -지역사회 보건 -의료관계법규(의료법, 결핵예	-동물내과간호학 -동물외과간호학 -동물임상간호학총론 -동물임상간호학각론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보건영상학

7) AVMA veterinary technician (부록 8.5. 참고)

8) OIE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부록 8.4. 참고)

	방법, 등)	-동물임상검사학 -동물의료커뮤니케이션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병원현장실습
애완동물/ 동물복지	·	애호적정사양학(5개과목)	복지분야(4과목)
	·	-애완동물학 -사람과동물의관계학 -적정사양지도론 -동물생활환경학 -펫관련산업개론	-동물보건복지및법규 -반려동물학 -동물행동교정학 -동물보건영양학
실습	실기(20% 반영)	실습(7개 과목)	실습(10개 과목)
	병원간호실기학	-동물형태학실습 -동물내과간호학실습 -동물임상검사학실습 -동물외과간호학실습 -동물임상간호학실습 -동물애호적정사양실습 -동물간호종합실습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동물병원실무및실습 -의약품관리학및실습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 -동물병원현장실습

### ③ 현장실습 시간의 설정 및 현장실습 수행방법

- 현장실습 수행과 관련하여 간호사 인증평가에서의 현장실습 절차 및 과정<sup>2)</sup>을 참고하였다.
- 현장실습시간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제시한 실습시간에 대하여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 또한, 대학생 실습생에 대한 실습운영규정<sup>9)</sup>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상기 사항들을 고려할 때 현장실습 시간은 현재로서는 120시간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3) 3영역 : 학생 영역

- ① 학생 영역은 수의학교육인증기준<sup>5)</sup>과 간호학교육인증기준<sup>2)</sup>을 참고하였다.
- ②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제시한 동물보건학 교육현장에서 가장 적합할 수 있는 학생 영역을 참고하였다.

9)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6-89호)개정안.

#### 4) 4영역 : 교수 영역

- ① 교수 영역은 수의학교육인증기준<sup>5)</sup>과 간호학교육인증기준<sup>2)</sup>을 참고하였다.
- ②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제시한 동물보건학 교육현장에서 가장 적합할 수 있는 교수 영역을 참고하였다.
- ③ 특히, 동물병원에서 종사하게 될 동물간호사를 양성·배출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기준이므로 수의임상에 직접 관련된 수의사 전임교원의 확보가 중요한 인증 평가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 5) 5영역 : 시설 및 실습 기자재

- ① 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은 수의학교육인증기준<sup>5)</sup>과 간호학교육인증기준<sup>2)</sup>을 참고하였다.
- ②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제시한 동물보건학 교육현장에서 가장 적합할 수 있는 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을 참고하였다.
- ③ 동물보건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 및 실습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실습 기자재를 인증평가사항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 6) 소결론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인증기준(안)은 농식품부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개발 지침에서 요구된 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뿐 아니라 일반 의학계열의 평가·인증 기준에 일반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직 및 운영’ 영역 및 ‘학생’ 영역을 포함하여 인증기준을 모두 완벽하게 수립 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개발에서 중요한 참고 인증 기준이 되었던 간호 교육 인증평가 기준<sup>2)</sup>에 설립되어 있는 ‘교육성과’영역은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및 동물보건사 자격 부여를 위한 국가시험이 아직 수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연구 개발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 3. 인증 평가 기준의 판정 방법 수립의 적합성

#### 1) 판정유형

① 판정유형은 수의학교육인증기준<sup>5)</sup>과 간호학교육인증기준<sup>2)</sup>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항목별 평가와 점수

■ 항목별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평가결과	점수
우수	3
적격	2
미흡	1
부적격	0

#### ■ 판정 종류와 판정 기준 및 요건

판정 종류	판정 기준 및 요건
완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기준 5개 영역 모두 적격(2점) 이상인 경우</li> </ul>
단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1점)인 경우</li> <li>* 단, 2년 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해서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최종 판정함</li> </ul>
인증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0점) 이 1개 이상인 경우</li> <li>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 이상인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인증불가로 판정함</li> <li>인증 불가 판정시 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li> </ul>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물보건사 인증판정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li> </ul>

② 한시 인증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절대 다수가 2년제 대학임을 고려하여 완전 인증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한시 인증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 제외하기로 하였다.

## 2) 인증유형 및 기간

- ① 완전 인증은 인증·평가 대상 대학이 2년제 학제의 대학이므로 3년을 완전 인증기간으로 정하였다.
- ② 인증·평가 후 판정 시 4개 영역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1개영역에서 미흡인 경우에는 단축인증(2년)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 ③ 부적격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동물보건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적합을 의미하므로 한가지 인증기준 ‘항목’에서 부적격이어도 인증불가로 판정하기로 하였다.

## 3) 점수 계량화 방안

- ①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점수 계량화 방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계량화 방안이다.
- ② 인증기준 항목마다 평가사항이 있으며 평가사항의 충족 여부에 따라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사항 수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하되 그 총점은 우수에 해당하는 3점이 만점이 되도록 하였다.
- ③ 그 결과 전체 인증기준 ‘항목’ 35개 대한 만점은 105점이 되며, **완전인증(3년)**은 총점 70점 이상이고, 동시에 각 영역별 점수(소계)가 모두 적격 점수 이상인 경우, **단축인증(2년)**은 총점 69점 이하 35점 이상인 경우 또는 총점에 관계 없이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평가 점수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인증불가**는 총점이 34점 이하인 경우, 총점에 관계 없이 부적격(0점)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또는 총점에 관계없이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평가 점수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이다.

## 4) 소결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기준에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판정유형은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인증유형 및 기간에서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절대 다수가 2년제 대학임을 고려할 때 완전인증을 3년, 단축인증을 2년으로 안을 정립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인증판정을 위한 계량화 방안에서 항목별 각각 3점 만점이 되도록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사항들에 대해 각각 배점을 하여 계량화한 방법도 매우 적절하며, 이에 따라 완전인증, 단축인증, 인증불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된다.

## 제5장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천만, 반려인 인구 15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 있으며, 이에 동반하여 보다 양질의 역량 있고 체계를 갖춘 수의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수의의료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이라는 생명을 다루는 작업환경에 처하게 되므로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실습 이수가 필요하며, 동물보건사가 되고자 하는 이는 수의사법 제16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수 체계 및 교육환경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도록 수의사법 제16조 4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한 졸업자에게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 인증기준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인증기준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수행되며 인증 유형에 따른 인증 판정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인증기준 제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 받아 2021.1~3월까지(당초 2021.1~2월, 추후 1개월 연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공동 연구기관이 되어 연구 개발을 수행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 및 결론을 얻었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 기준은 5개 영역 15개 부문, 35개 항목으로 수립하였다.

2. “조직 및 운영”영역은 1.1 교육 목적과 목표 평가 부문에 2개 인증기준 항목을 수립하였고, 1.2 조직과 재정 평가 부문에 2개 인증기준 항목을 수립하였으며, 1.3 전략과 계획 평가 부문에 2개 항목을 수립하여, 총 3개 부문, 6항목을 수립하였다.

3. “교육과정”영역은 2.1 교육과정 체계 부문에 2개 항목,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부문에 4개 항목, 2.3 교육과정 개선 부문에 2개 항목, 총 3개 부문, 8항목을 수립하였다.

필수이수 교과목은 기초예방분야 필수전공학점은 9학점 이상, 임상분야 필수전공과목은 19학점 이상, 복지분야 필수전공학점은 10학점 이상, 그리고

동물병원 현장실습교과목 2학점을 포함하여 필수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최소 40학점이 되도록 정하였다. 필수전공교과목은 15과목, 40학점이 되도록 정하였다.

이수필수 실습 교과목은 10과목, 18학점이 되도록 정하였다.

현장실습은 4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전공실습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현황이 필수전공 교과목 총 학점 대비 40%이상이 되도록 정하였다.

4. “학생”영역은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부문에 2개 항목, 3.2 학생활동과 지원 부문에 2개 항목,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부문에 4개 항목, 총 3개 부문, 8항목을 수립하였다.

5. “교수”영역은 4.1 전임교수 부문에 2개 항목,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부문에 1개 항목,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부문에 4개 항목, 총 3개 부문, 7항목을 수립하였다.

6.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은 5.1 교육시설 및 설비 부문에 3개 항목, 5.2 연구시설과 설비 부문에 1개 항목, 5.3 시설 설비의 관리 부문에 2개 항목, 총 3개 부문, 6항목을 수립하였다.

7.인증기준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사항을 전반적으로 항목별 3-4개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치자료 확인 및 현장 확인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8.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평가 점수는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평가기준을 구분하고 우수 3점, 적격 2점, 미흡 1점, 부적격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9. 판정종류와 판정기준 및 요건은 완전인증은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두 적격(2점)이상 인 경우, 단축인증은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1점) 인 경우(단, 2년 인증 후 차기 인증 평가에서도 연속해서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최종판정), 인증불가는 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든 부적격(0점)이 1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이상인 경우로 정하였다. 인증불가 판정 시 판정일로부터 1년경과 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인증최소는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10.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은 완전인증은 3년, 단축인증은 2년으로 정하였다.

11. 인증 평가 기준을 점수로 계량화한 방안으로서 인증기준 항목에서 평가사항마다 배점을 하여 인증기준 항목 하나의 만점이 3점이 되도록 하였고, 완전인증(3년)은 총점 70점 이상 및 5개 영역 모두 영역별 평가점수가 적격 이상인 경우, 단축인증(2년)은 총점 35점 이상 및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평가점수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인증불가는 총점 34점 이하 또는 총점에 관계없이

부적격(0점) 항목이 1개 이상, 그리고 또는 총점에 관계없이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평가 점수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로 정하였다.

12. 항목별 평가사항 평가 시 평가사항 중 동물보건사교육프로그램 인증 평가시 반드시 충족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평가사항을 제 1번에 배치하여 1번 평가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기로 정하였다.

13.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증기준은 별도로 설립하되 동물보건사 양성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고, 기관 명칭을 ‘평생교육기관’으로 표시하기로 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인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개발 지침에서 요구된 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뿐 아니라 일반 의학계열의 평가·인증 기준에 일반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직 및 운영’ 영역 및 ‘학생’ 영역을 포함하여 인증기준을 모두 완벽하게 수립을 했다고 판단된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기준에서 판정유형은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인증유형 및 기간에서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절대 다수가 2년제 대학임을 고려할 때 완전인증을 3년, 단축인증을 2년으로 안을 정립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인증판정을 위한 계량화 방안에서 항목별 각각 3점 만점이 되도록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사항들에 대해 각각 배점을 하여 계량화한 방법도 매우 적절하며, 이에 따라 완전인증, 단축인증, 인증불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된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증기준은 별도로 설립하되 동물보건사 양성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1천만 반려동물 및 1,500만 반려인의 현 상황에서 그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상황 및 산업에서 인체 의료서비스 못지 않은 향상된 수의의료서비스가 사회로부터 요구되고 있으며 수의의료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수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양질의 역량 있고 전문성을 갖춘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표준 인증기준(안)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된다.



## 제6장 향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를 위한 제언

1. 이 인증기준(안)은 역량과 능력을 갖춘 양질의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의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2. 이 인증기준은 인증평가의 원칙과 기본만을 제공한 것으로 추후 인증평가 수행을 위하여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그리고 최종 판정을 위한 **편람 및 지침**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1) **편람**은 평가자용과 대학용으로 구별된다.
    - A. 평가자용 편람은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 B. 대학용 편람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방문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 2) **지침**은 인증평가 전체과정에서 각 단계별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법과 내용을 제시한 메뉴얼이다. 즉, 동물보건학 교육 평가·인증 절차 및 세부 사항, 평가위원 인적자원과 평가단의 구성, 대학평가의 평점 및 인증 기간 판정 기준, 서면평가, 인증평가보고서 작성, 방문평가, 평가 서식과 작성법을 제시하고, 각종 표준 서식을 포함한다.
3. 인증을 신청한 기관으로부터 자체평가 보고서를 접수한 후 평가대학 선정, 평가단 구성, 평가단이 제출하는 예비논평서와 최종논평서를 심의할 인증평가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4. 인증평가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후 제출하는 예비논평서와 최종논평서에 대해 최종 인증 판정을 심의하는 인증판정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5. 평가단의 구성 및 역할 :
  - 동물보건사 제도가 수의임상회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수립된 제도이며, 이 제도의 수요자는 동물보건사 양성교육기관인 만큼 평가위원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협회 양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위원을 동수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단장은 평가 대상이 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 대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의계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가위원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5개 영역별 1명씩 선임한다.
  - 평가단은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수행 후 그 결과를 예비논평서로 작성하여 인증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며, 예비논평서가 평가위원회를 거쳐 판정위원회의 판정 심의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와 최종논평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인증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와 최종논평서를 심의한후 최종 판정을 위하여 최종보고서와 최종논평서를 인증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각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부서들이 필요하며 이를 통합하여 총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구 또는 단체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기구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내 “동물보건학 교육인증부”(\*가칭)로 두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며, 이 기구 안에는 인증평가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기준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이 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각 위원회(인증평가위원회, 인증판정위원회, 기준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의 인적 구성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협회에서 추천된 위원을 동수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한국동물보건사대학협회는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위원 pool을 갖추고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 관련 공문 .....	111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 연구계획서 .....	131
3. 동물보건사 제도 관련 법규 .....	149
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 회의자료 및 회의록(1차~5차) .....	157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평가인증 기준 최종안 .....	261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최종안 .....	309
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기준 점수 계량화 방안 최종안 .....	359
8. 동물보건사제도와 유사한 해외 제도 .....	367



# 부록 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 관련 공문」

- 1.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추진 공문
- 1.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계획서 제출 공문
- 1.3.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방법 개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공문
- 1.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공문
- 1.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승인 알림 공문
- 1.6. 인증기준 개발 연구위원회 개최안내 공문 모음(2차~5차 회의, 공문 수 인원- 715, 수인원-717, 수인원-719, 수인원-726)



[부록 1.1.]

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당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경유)

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추진

1. 관련 : 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2. 우리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을 불임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연구기관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21.1.20(수)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계획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무관 손기창 사무관 김정주 방역정책과장 전결 2021.1.15. 최명철

합조자

시행 방역정책과-647 (2021.01.15)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23 팩스번호 044-868-0628 / [goodluck79@korea.kr](mailto:goodluck79@korea.kr) / 비공개(5)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부록 1.2.]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 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참고) 방역정책과장

제 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계획서 제출

---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역정책과-647(2021.01.15.) 관련입니다.
3. 귀 부에서 요청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한국동물보건사대학협의회와 공동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 계획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연구 개발 계획서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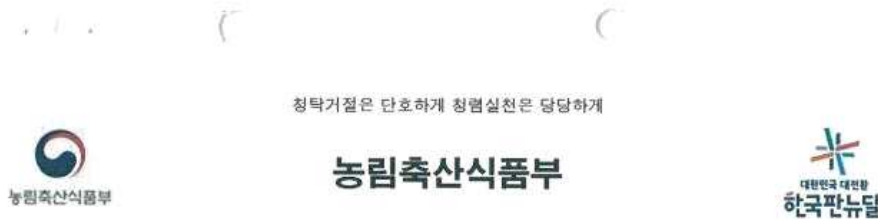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시행 수인원 21-714      (2021. 01. 20.)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8-6 (수의과학회관 7층) / <http://www.abovek.or.kr>  
전화 031-702-8686      전송 031-702-1020      / [kvma@kvma.or.kr](mailto:kvma@kvma.or.kr)      /



## [부록 1.3.]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방법 개발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 '21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과 관련됩니다.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국고보조금을 불임과 같이 교부 결정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운영지원과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불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보조금 승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부,  
2. 사업추진계획서 1부. 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주무관	손기창	사무관	김정주	방역정책과장	전경 2021. 2. 9. 최명철
-----	-----	-----	-----	--------	-----------------------

협조자

사행 방역정책과-1564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23 팩스번호 044-868-0628 / [goodluck79@korea.kr](mailto:goodluck79@korea.kr) / 비공개(4,5)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부록 1.4.]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 (목적) 수의사법 제16조의4조(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 인증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정책 연구 수행

□ (기간 및 사업비) '21.1~2월(2개월), 20백만원\* 이내

\* 시도 가축방역사업(3940-33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운영(320-01)

□ (연구기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공동)

□ 주요 정책 개발 내용

< 기본원칙 >

◇ ①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생, ②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모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부여

①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
-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참여 동물병원, 현장실습 교육인원 등)

②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등 인적자원 평가 기준 마련

③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 기준 마련

④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 방법 마련

□ 협조사항

○ 평가기준 개발계획 및 소요비용 내역, 보조금 교부신청('21.1.20일 까지)

○ 정책 연구과제 추진 및 최종 결과 보고\*('21.1~2월)

\* 정책 연구과제 추진 중 2회 이상(중간, 최종 등) 회의 등을 통해 우리부 의견 수렴

[부록 1.5.]

청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담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경유)

제목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승인 알림

1. 관련 : 수인원 21-724(2021.2.26.)호.
2. 귀 원의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방법 개발"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요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사업기간	'21.1.7.~'21.2.28.	'21.1.7.~'21.3.3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방법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무관 손기창 사무관 김정주 방역정책과장 전길 2021. 2. 26.  
합조자 최명철

시행 방역정책과-2128 (2021. 3. 2.)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23 팩스번호 044-868-0628 / [goodluck79@korea.kr](mailto:goodluck79@korea.kr) / 비공개(5)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부록 1.6.]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 위원 각위

### 제목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2차 회의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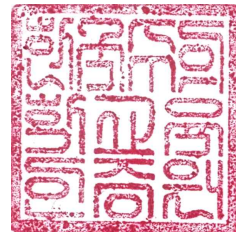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해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1.26.(화)회의에서 위원회 명칭을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로 정하였으며, 2차 회의 개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1.02.03.(수)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붙임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2차 회의개최 안내. 끝.

##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처 김동완(대한수의사회), 김정은(수성대), 박영재(기전대), 박인철(강원대), 서강문(한국수의과대학협회), 윤현영(건국대), 이기창(전북대), 이수정(연성대), 이요운(한국동물병원협회), 이흥식(서울대), 정태호(중부대), (가나다 순, 존칭 생략)

---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위원장
----	-----	----	-----	-----

시행 수인원21-715 (2021. 01. 26.)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8-9 / http://www.abovek.or.kr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7층)

전화 031-704-8682 전송 031-704-8683 / kvma@kvma.or.kr /

<붙임 1>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 위원회 2차 회의 안내

1.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11시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대상자(12명)

### 1) 연구원(9명)

####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이수정 : 연구원/연성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 ● 대한수의사회

- 김동완 : 연구원/대한수의사회 기획실 차장

### 2) 자문위원(3명)

#### ●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 이요윤 : 자문위원/한국동물병원협회 상무이사/동물병원장

#### ● 한국수의과대학협회

- 서강문 : 자문위원/한국수의과대학협회 회장/서울대 수의대 학장

#### ●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 협의회

- 윤현영 : 자문위원/동물병원장협의회장 대리/건국대 수의대 동물병원장

#### 4. 회의 안건

##### ■ 동물보건사 교육기관 평가·인증기준 마련(“교육과정 영역”)

##### 1)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교과목 및 실습과목)

- 학제는 2021.1.26.일(화) 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2년제 학제를 대상으로 함.
- 필수 이수 교과목, 학점, (총 학점수)
- 필수 이수 실습과목, 실습시간(총 실습시간)

##### 2)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

- 총 실습시간 및 실습과목
- 참여 동물병원(①의료진 일정 숫자 이상 종합 동물병원, ②전국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③개인동물병원)
- 동물병원에 따른 실습과목 및 실습시간
- 실습 수행인원(병원에 따라 1인 ~ 일정 인원)
- 실습교육 수행자 자격(병원장, 대학원생, 교수, 등)
- 실습 절차(실습 신청부터 이수까지 절차)
- 실습 평가방법
- 실습 이수 확인 방법
- 실습 소요 경비
- 기타

[부록 1.6.]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 신 위원 각위

### 제 목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3차 회의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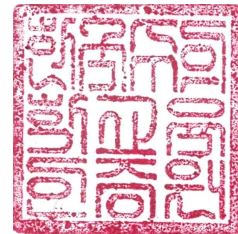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해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3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1.02.17.(수)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붙임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3차 회의개최 안내 . 끝.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처 김동완(대한수의사회), 김정은(수성대), 박영재(기전대), 박인철(강원대), 서강문(한국수의과대학협회), 윤현영(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 이기창(전북대), 이수정(연성대), 이요윤(한국동물병원협회), 이흥식(서울대), 정태호(중부대),

(가나다 순, 존칭 생략)

---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위원장

시행 수인원21-717      (2021. 02. 09.)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8-9      / http://www.abovek.or.kr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7층)

전화 031-704-8682      전송 031-704-8683 / kvma@kvma.or.kr      /

<붙임 1>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 위원회 3차 회의 안내

1. 일시 : 2021년 2월 17일(수), 11시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대상자(12명)

### 1) 연구원(9명)

####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이수정 : 연구원/연성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 ● 대한수의사회

○ 김동완 : 연구원/대한수의사회 기획실 차장

### 2) 자문위원(3명)

#### ●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 이요윤 : 자문위원/한국동물병원협회 상무이사/동물병원장

#### ● 한국수의과대학협회

○ 서강문 : 자문위원/한국수의과대학협회 회장/서울대 수의대 학장

#### ●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 협의회

○ 윤현영 : 자문위원/동물병원장협의회장 대리/건국대 수의대 동물병원장



#### 4. 회의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중 ②와 ③사항과 ‘별도 응시자격 부여기준’

1) “인적자원” (교수 및 학생) 영역 인증 기준

가. “교수” 영역 인증기준

나. “학생” 영역 인증기준

2) “시설 및 기자재 등 교육환경”영역 인증기준

3)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4) 농식품부 주요정책 개발 내용 중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기준

5) 특례자에 대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기준

6)기타

[부록 1.6.]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 신      위 원   각 위

## 제 목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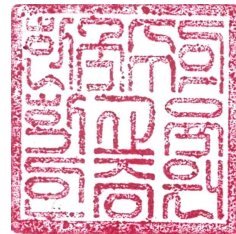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해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제4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1.02.24.(수)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붙임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4차 회의개최 안내 . 끝.

###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처    김동완(대한수의사회), 김정은(수성대), 박영재(기전대), 박인철(강원대), 서강문(한국수의과대학협회), 윤현영(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 이기창(전북대), 이수정(연성대), 이요윤(한국동물병원협회), 이흥식(서울대), 정태호(중부대),

(가나다 순, 존칭 생략)

---

간사    **우연철**      원장    **김용준**      위원장

시행    수인원21-719      (2021. 02. 22.)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8-9      / http://www.abovek.or.kr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7층)

전화 031-704-8682      전송 031-704-8683 / kvma@kvma.or.kr      /

<붙임 1>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 위원회 4차 회의 안내

1. 일시 : 2021년 2월 24일(수), 11시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대상자(12명)

### 1) 연구원(9명)

####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이수정 : 연구원/연성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 ● 대한수의사회

○ 김동완 : 연구원/대한수의사회 기획실 차장

### 2) 자문위원(3명)

#### ●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 이요윤 : 자문위원/한국동물병원협회 상무이사/동물병원장

#### ● 한국수의과대학협회

○ 서강문 : 자문위원/한국수의과대학협회 회장/서울대 수의대 학장

#### ●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 협의회

○ 윤현영 : 자문위원/동물병원장협의회장 대리/건국대 수의대 동물병원장

#### 4. 회의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 1) “교육과정” 영역 인증 기준 마련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 총 정리 및 최종 안 확정
  - ◎ 5개 영역에 따라 ‘개요’, ‘부문’, ‘항목’을 기술하고 ‘항목’별 인증 기준, 검토사항, 비치자료, 부록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함.  
(\*기술 방법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 참고)
  - ① ‘조직 및 운영’ 영역
  - ② ‘교육과정’ 영역
  - ③ ‘학생’ 영역
  - ④ ‘교수’ 영역
  - ⑤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 3) 인증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 방법 마련
- 4) 향후 일정
  - ①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작성, 제본 및 제출
  - ② 필요시 TF팀 구성 : 마무리 작업 및 상황 대비
- 5) 기타

[부록 1.6.]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 신 연구원 각위

## 제 목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연구원 회의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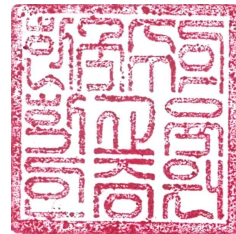
1.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해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에 참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연구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1.03.16.(화), 16:00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붙임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연구원 회의개최 안내 . 끝.

###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수신처 김동완(대한수의사회), 김정은(수성대), 박영재(기전대), 박인철(강원대), 이기창(전북대), 이수정(연성대), 이흥식(서울대), 정태호(중부대),

(가나다 순, 존칭 생략)

간사	<b>우연철</b>	원장	<b>김용준</b>	위원장
----	------------	----	------------	-----

시행 수인원21-725 (2021. 03. 10.) 접수

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8-9 / http://www.abovek.or.kr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7층)

전화 031-704-8682 전송 031-704-8683 / kvma@kvma.or.kr /

<붙임 1>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 위원회 연구원 회의 안내

1.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16시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대상자(12명)

1) 연구원(9명)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이수정 : 연구원/연성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 대한수의사회

○. 김동완 : 연구원/대한수의사회 기획실 차장

4. 회의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 최종(안) 검토

2) 평생교육기관 대상 별도 인증기준 중 기관명 표시 방법

3) 항목별 평가기준 점수 환산 방법

## 5. 향후 일정

- ①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작성, 제본 및 제출
- ② 필요시 TF팀 구성 : 마무리 작업 및 상황 대비
- ③ 경우에 따라 농식품부 회의 가능-소수 대표 참여

## 6. 기타





## 부록 2.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 연구계획서」

- 2.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평가 방법 개발 계획서
- 2.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2.3.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서(안)
- 2.4. 계좌이체 의뢰서
- 2.5. 예금통장 사본



## [부록 2.1.]

# 연구 개발 계획서

## 제목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평가 방법 개발

###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현재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이한지 여러 해가 지났다. 이에 동반하여 수의의료계는 날이 갈수록 사회로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고도의 성장과 함께 인체 의료계 못지 않은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다.
- 동물보건사제도는 수의 보조인력을 법제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6.3월에 정부에서 추진되었고, 수의계는 대한수의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전제로 수의보조인력 제도 도입에 동의하여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및 진료 보조(주사·채혈 등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동물보건사의 업무를 정의하여 제도 도입이 2016.7월에 합의되었다.
- 그 결과 2019.8.27.에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관한 수의사법이 개정되었고, 이 법은 2021년 8.28에 시행되도록 공표되었다.
-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국내 제도로써 간호교육 인증·평가는 간호학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간호교육기관(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인증·평가는 한국간호학교육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 또한, 한국간호학교육평가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한 양성기관도 평가·인증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 기관은 학원법 제2조에 의한 간호교육 ‘학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3호, 제58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동물보건사의 자격은 수의사법 제 16조 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동물보건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도록 양성하는 대학(양성교육기관)은 수의사법 제 16조의 4에 따라 농식품부의 평가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농식품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대학)을 졸업하여야 하는데, 이 기관들이 평가·인

증을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인증기준’이 아직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어서 평가 수행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인 ‘인증편람’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와 동시에 인증평가를 위한 인증기준의 내용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도 제시되어야 한다.
- 이 연구개발은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기에 반드시 필요한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인증기준의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수행하고자 한다.
- 이 연구개발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연구 주관기관으로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연구하여 인증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 연구 개발 목표

1.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 1)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교과목 및 실습과목)
  - 2)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참여 동물병원, 현장실습 교육인원 등)
2.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및 학생 인적자원 평가기준 마련
3.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 기준 마련
4.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 방법 마련
5. 특례자(수의사법 16조 2의 2항 해당자)에 대한 실습 및 자격시험 응시 조건

## 연구 수행 내용 및 방법

- 인증기준은 인증기관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예를 들면 수의학교육인증기준은 ①조직 및 운영 영역, ②교육과정 영역, ③학생 영역, ④교수영역, ⑤시설 및 자원 영역의 5개 평가 ‘영역’, 그리고 영역을 세분화 한 20개 평가 ‘부문’, 다시 부문을 세분화 한 54 평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 간호사 자격시험을 위한 전문학사 이상 간호학 프로그램 인증평가기준은 ①비전 및 운영체계, ②교육과정, ③학생, ④교수, ⑤시설 및 설비, ⑥교육성과의 6개 평가 ‘영역’, 14개 평가 ‘부문’, 28개 평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 한편, 참고 사항으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한 인증·평가 기준은 ‘학원’의 경우는 ①교육과정, ②인적자원, ③재정 및 시설·환경, ④교육성과의 4개 평가 ‘영역’, 8개 평가 ‘부문’, 13개 평가 ‘항목’이며, ‘세부 평가지표’는 30개로 설정되어 있다.

고, ‘학교’의 경우 ①교육과정, ②인적자원, ③재정 및 시설·환경, ④교육성과 4개 평가 ‘영역’, 8개 평가 ‘부문’, 13개 평가 ‘항목’, 29개의 ‘평가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 상기 기관들을 종합해서 공통된 평가 영역은 ①교육과정, ②학생영역, ③교수영역, ④시설영역이며, 명칭은 다르나 수의학교육인증기준의 조직 및 운영 영역은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의 비전 및 운영 체계와 동일한 영역으로 보인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평가 방법 개발” 연구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된 1.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목표는 상기 기관들의 인증 기준 중 “교육과정 영역”에 해당되며, 2.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및 학생 인적 자원 평가기준 마련 목표는 “교수 영역”과 “학생영역”에 각각 해당되고, 3. 교육 시설 및 실습 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 기준 마련 목표는 “시설 및 자원 영역, 시설 및 설비 영역, 또는 시설·환경 영역”에 해당된다.
- 또한, 개발목표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조직 및 운영 영역, 운영체계, 교육 성과 등”에 대한 영역 설정 및 인증 기준 마련이 추가로 검토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교육과정 영역)

### 1)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

-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동물보건학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평가·인증은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 수의사 진료를 보조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실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양성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과목과 이수 학점이 정해져야 하고, 아울러 실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정한 실습 과목과 실습시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 이를 정리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을 갖기 위한 필수 이수과목과 학점, 그리고 실습과목과 실습 시간이 인증기준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현장실습 운영 평가 방법(참여 동물병원, 현장실습, 교육인원, 등)

- 동물보건사 자격을 갖기 위한 현장 실습은 어떤 실습을 얼마동안 수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의 실행능력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시설조건의 동물병원에서, 어느 분야를, 얼마동안, 실습해야 하는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진료 수의사가 일정 숫자 이상인 종합동물병원으로만 한정할지, 1인 원장의 동물병원 실습도 가능한지 검토해야 하며, 종합동물병원에서는 어떤 실습을 얼마동안 수행할지, 개인 동물병원에서는 어떤 실습을 얼마동안 수행할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동물보건학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가능한 기초 실습과목과 실습 이수시간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인증기준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위해 실습을 수용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실습 교육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시간에 대한 경비 보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을 종합하여 인증기준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동물보건학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학년별 필수 이수 전공 교과목 및 이수 학점
- 2) 실습과목 및 실습시간(실습 총 시간)
  - 가. 실습기관 및 기관별 실습과목과 실습시간
    - A. 진료 수의사 일정 숫자 이상의 종합동물병원(대학동물병원 포함)
    - B. 개인 동물병원
    - C. 동물보건학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본실습
  - 나. 실습 수행자
  - 다. 실습 이수 확인 및 평가방법

2.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및 학생 인적자원 인증·평가기준 마련(교수 및 학생 영역)

### 1) 교수 영역

교수에 대한 평가 영역은 인증기준 중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영역으로서 다음 기관 등의 인증기준을 참고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수의학교육인증기준 : 교수 '영역' - 3개 '부문'(①전임교수, ②교수의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③교수개발 및 지원)- 8개 '항목'(①전임교수 선발, ②적정 교수 수, ③강의 및 실습시수, ④국내·외 연구실적, ⑤연구와 학생, ⑥교수 개발, ⑦국내·외 연수, ⑧업적 평가)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 : 교수 '영역' - 2개 '부문'(①교수 확보, ②교수 업적과 개발) - 4개 '항목'(①전임교원 확보, ②전임교원 수업시수와 전공교과목 담당, ③임상

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 확보, ④교수업적과 역량 개발지원)

## 2) 학생 영역

학생에 대한 인증·평가는 인증기준 중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영역으로서 다음 기관 등의 인증기준을 참고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수의학교육인증기준 : 학생 ‘영역’ - 5개 ‘부문’(①입학정책의 타당성 및 공정성, ②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③학생활동과 지원, ④학생복지제도 및 시설의 적절성, ⑤진로 및 학습 성과 - 13개 ‘항목’(\*항목 내용 생략)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 : 학생 ‘영역’ - 2개 ‘부문’(①학생지도, ②학생지원과 안전 관리) - 4개 ‘항목’(①학생지도 부문; 학생 지도 체계, 학생지도 프로그램, 2개 항목, ②학생지원과 안전관리 부문 ; 학생지원, 임상실습 안전 관리, 2개 항목, 총 4개 항목)

상기 교수 및 학생 영역에 대한 인증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교수, 학생 등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기준 마련(시설 및 자원 영역, 시설 및 설비 영역)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은 동물보건학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다.

다음 기관 등의 인증기준을 참고하여 인증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의학교육인증기준 : 시설 및 자원 ‘영역’ - 3개 ‘부문’(①교육시설 및 자원; 4개 항목으로 구성, ②연구시설과 설비; 2개 항목으로 구성, ③시설설비의 관리; 2개 항목으로 구성, 총 8개 ‘항목’) (\*항목 내용 생략)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 : 시설 및 설비 ‘영역’ - 2개 ‘부문’(①교육시설 설비 부문-교육기본시설과 편의시설 항목; 1항목, ②실습시설과 설비 부문 - 실습실과 실습기자재 확보, 임상실습기관 확보; 2항목, 총 3개 ‘항목’) (\*항목내용 생략)

## 4. 평가 기준에 다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 방법 마련

1) 인증기준의 영역, 부문, 항목 : 인증기준은 평가가 필요한 ‘영역’을 정하고 나서 다시 영역에 따른 평가 ‘부문’을 구분 하며, 부문별 구체적으로 평가할 ‘항목’을 세분화 하여 기준을 제정한다.

그 예로서 수의학교육인증기준을 예로 들면 **교수 영역** , 3개 부문 - 4.1. 전임교수, 4.2.교수의 교육, 연구 및 활동, 4.3. 교수개발 및 지원으로 구분하며, 4.1 부문에 대한 항목의 세분화를 예를 들면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전임교수를 적정 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의 2개 항목으로 세분화 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 2) 인증 평가 기준의 서술

- ① '영역'별 평가기준을 서술한다
- ② '부문'별 평가기준을 서술한다
- ③ '항목'별 평가기준을 서술한다  
'항목'에서는 구체적으로 해당사항을 확인한다
  - A. 인증기준 서술
  - B. 검토사항 : 해당 질문을 통해 인증기준 적합여부 검토
  - C. 비치자료
  - D. 현장확인 필요성 여부

## 3)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및 평가단 구성

\* 편람 제정시 기술

## 4) 평가 절차(안)

- ① 인증 신청
- ② 동물보건사 인증·평가 위원회(\*가칭)에서 평가단 구성
- ③ 평가단의 서면평가
- ④ 평가단의 현지 방문평가
- ⑤ 평가단의 방문보고서 및 논평서 제출
- ⑥ 동물보건사 인증 판정위원회(\*가칭)에서 판정
- ⑦ 농식품부에 결과 통보

## 5) 평가 점수(안)

- ① 평정기준을 구분한다 ;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 ② 영역별 평정표를 작성한다 : 평가단 평가위원별로 평가 영역을 담당하며,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 평정기준을 표시하여 평정표 작성
- ③ 평가단은 영역별 분석보고서도 제출한다.: 평가등급에 대한 평정근거를 제시하고 현장 확인사항을 표기한다(예: 서류, 시설 확인, 면담 등)
- ④ 서면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방문평가 수행 후 최종평가 점수를 제시한다.



- ⑤ 평가는 인증기준 영역별 평가위원 개인의 평가 수행 후 평가단 전체평가로 결과를 종합한다.

6) 판정 종류(안)

- ① 인증기준 전체 영역이 모두 적격 이상인 경우 인증으로 판정한다
- ② 인증기준 전체 영역 중(예:5개)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하여 인증으로 판정 한다.
- ③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한정인증으로 판정한다.
- ④ 인증기준 5개 영역중 1개 영역이라도 부적격인 경우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7) 인증 유형 :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안)

- ① 완전 인증 : 4년 또는 3년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한다(예: 4년 완전 인증인 경우 3년으로 축소하여 인증, \*상기 6)항의 ②)
- ② 한정인증 : 2년 - 5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 미흡한 경우
- ③ 인증불가 :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
- ④ 인증취소 :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과정을 거쳐 동물보건사 인증판정위원회(\*가칭)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5.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동물간호사 국가시험 자격 부여 기준 마련**

- 1) 평생교육기관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인증기준 수립 필요.
- 2)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① 적정 실습과목과 실습을 이수하는 것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
  - ② 실습과목 및 실습시간 확정
  - ③ 실습 수행기관 확정
  - ④ 실습수행자의 평가 및 확인 필수
  - ⑤ 동물보건사 평가위원회/판정위원회(\*가칭)의 판정
  - ⑥ 농식품부에 실습 이수 명단 및 결과 통보

## 기대효과

1. 연구개발에서 정리한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기 위해 동물보건학을 교육하는 양성교육기관 인증·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2. 이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하부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3. 이 인증기준을 기초로 하여 실제 평가에서 평가 지침이 되는 인증 편람/인증 지침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수행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라 양성교육기관의 교육 표준화를 이루어 우리나라 수의 의료서비스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함으로써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수의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결과 동물복지 선진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위상 확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및 수의료 관련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수행 일정표

연구수행내용	2021.1		2021.2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17~1.23	1.24~1.30	1.31~2.6	2.7~2.13	2.14~2.20	2.21~2.27
동물보건사 제도 관련 자료 조사	√					
연구진 1차회의 (역할분담 및 일정 조정)		√				
2차회의 (동물보건사 이수과목 및 이수 학점, 이수시간 확정) ①교과목 ②실습			√			
3차회의 ① 동물 보건 사 실 습 이 수 기 관 확정 ②인적자원 영 역기 준 확 정 ③시설 및 기자 재 등 교육환경 영역기 준 확 정					√	
4차회의 ①인증기준 초 안 검토 및 확 정 ②평가기준 항 목별 점수표 적 용방법						√
최종보고서 제 출						√

## 참여 연구원 및 자문위원

기관	성명	소속/지위	역할	연구분야
한국수의학 교육인증원	김용준	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책임연구 원	-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총괄) -인증기준 초안 작성 -평생교육기관 인증 기준안
	이흥식	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 수	연구원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 공교과목 및 이수학점(교과목 및 실습)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 수표
	박인철	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연구원	-교수 및 학생 인적자원에 대 한 평가기준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기준
	이기창	평가위원회 및 실행 위원회 위원/전북대 교수/한국수의교육 학회 회장	연구원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기준
한국동물보 건사대학교 육협의회	박영재	동물보건사대학교육 협의회 회장/전주 기전대학교 교수	연구원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 증 기준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
	이수정	연성대학교/교수	연구원	학생, 교수, 강사 등 인적자원 평가 기준 분야
	정태호	중부대학교/교수	연구원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 기준 분야
	김정은	수성대학교/교수	연구원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 표(계량 평가) 분야
대한수의사 회	김동완	대한수의사회 차장	연구원	평생교육기관 인증 기준 안
한국동물병 원 협회 (KAHA)	이요운	한국동물병원협회 상무이사/동물병원 장	자문위원	현장실습 운영 평가 방법 (동물보건학 전공자 및 특례 자)
한국수의과 대학협회	서강문	한국수의과대학 협 회 회장/서울대 학 장	자문위원	전공교과목 및 이수학점 (교과목 및 실습과목)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 협의회	윤헌영	수의과대학동물병원 장 협의회장 대리/ 건국대 동물병원장	자문위원	현장실습 운영 평가 방법 (동물보건학 전공자 및 특례 자)

## 보조금 집행계획서(안)

항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합계 (부가세 포함)	세부내역
동물보건사 양성 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 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000,000원	○연구원 수당 -연 구원9명x1,000,000 원=9,000,000원 ○연구책임자 수당 -책임자 1명 x 1,000,000원 =1,000,000원 ○자문위원 수당 -자문위원 3명 x 500,000원 = 1,500,000원 ○ 회의비 -12명(연구원 9명+ 자문위원 3 명)x150,000원x4회 =7,200,000원 ○자료 인쇄비 및 회의 경비 - 800,000원 ○보고서 작성비 -500,000원
			20,000,000원	
	총계		20,000,000원	

[부록 2.2.]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사업명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 보조사업자

- 신청업체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서현동 수의과학회관)
- 대표자 : 원장 김용준

###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가. 목 적

- 수의사법 제16조의 4조(양성기관의 평가인증)에 따라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정책 연구 수행

#### 나. 주요 정책 개발 내용

- 동물보건사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  
(필수 이수 교과목, 학점, 필수 이수 실습과목, 실습시간)
  -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참여 동물병원, 동물병원 실습 내용, 실습시간, 실습절차, 현장실습 교육인원, 평가방법, 등)
-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및 학생 등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기준 마련
-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평가) 적용 방법 마련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동물간호사 국가시험 자격 부여 기준 마련

사업기간 : 2021. 1 ~ 2021. 2

보조사업 예산 및 교부신청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국고 보조금	보조금 금번신청액
총 금액	20,000,000	20,000,000	20,000,000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20,000,000	20,000,000	20,000,000
부 담 율(%)	100%	100%	100%

첨부서류 : 자금집행계획서, 계좌이체 의뢰서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보조사업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김 용 준 인



[부록 2.3.]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서(안)

보조사업비 : 20,000,000원

총괄표

항 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합계 (부가세포함)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000,000원
	합계		20,000,000원
		총계	20,000,000원

보조금집행계획서(안)

항 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합계 (부가세포함)	세부내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000,000원	○ 연구원 - 9인 × 100만원 × 1회(900만원) ○ 연구책임자 - 1인 × 100만원 × 1회(100만원) ○ 자문위원 - 3인 × 50만원 × 1회(150만원) ○ 회의수당 - 12인 × 15만원 × 4회(720만원) ○ 자료 인쇄비 및 회의 경비 - 80만원 ○ 보고서 작성비 - 50만원
	합계		20,000,000원	
		총계	20,000,000원	



[부록 2.4.]

## 계좌이체 의뢰서

1. 일 금 : 금 이천만원정(W20,000,000)
2. 내 역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상기 금액을 아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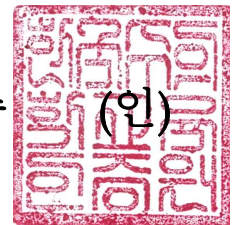
거래은행 : 국민은행

계좌번호 : 294537-04-010279

예금주명 :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21. 1. 20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김 용 준 (인)



[부록 2.5.]


## 예금통장 사본


KB국민은행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님**  
**KB기업종합통장-기업자유**

계좌번호 (Account No.) **294537-04-010279**  
 예금종류 **기업자유예금**

인감 (서명)  
(SIGNATURE)



KB국민은행  
 대표이사인감  
 유효기간: 2014년 05월 12일 ~ 2015년 05월 12일

결산일 **3,6,9,12월 제2금요일**  
 가입하신날 **2014년 05월 12일**  
 계좌관리점 **서현동** ☎ **1588-9999** 주식회사 **국민은행**  
 통장발행회차 **1회차** FAX **031)708 -8057** 실명확인필  
4800-001 (14x17.5) 정보성지190g/m<sup>2</sup>, OCR105g/m<sup>2</sup> (이 통장은 표지를 합하여 12장입니다) K01

**자동이체 연결계좌 내역**

차리	등록일자	예금종류	계좌번호	이체금액	이체일	등록점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부록 3.**

### **「동물보건사 제도 관련 법규」**

- 3.1.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 3.2. 수의사법



[부록 3.1.]

##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수의사법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신설 2019. 8. 27.>[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

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 [부록 3.2.]

### 수의사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74호, 2020. 5. 19,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044-201-2522, 2523

####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2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3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4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① 동물보건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5

**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보건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보건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1. 8. 28.] 제16조의6

**부칙** <제16546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부칙**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록 4.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발 회의자료 및 회의록(1차~5차)」

- 4.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연구개발 1차 회의자료
- 4.2. 제1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 4.3.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 4.4. 제2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 4.5.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 4.6. 제3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 4.7.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 4.8. 제4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 4.9.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 4.10. 제5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 [부록 4.1.]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연구개발 1차 회의 자료 (\*가칭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 위원회)

1. 일시 : 2021. 1.26(화), 10:3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3. 참석대상자(12명)

#### 1) 연구원(9명)

##### ●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 연구책임자/인증원 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장/전북대 명예교수

○ 이흥식 : 연구원/인증원 판정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박인철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위원장, 실행위원회 위원/강원대 교수

○ 이기창 : 연구원/인증원 평가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한국수의교육학회 회장/전북대 교수

##### ●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 연구원/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회장/전주 기전대 교수

○ 이수정 : 연구원/연성대학교 교수

○ 정태호 : 연구원/중부대학교 교수

○ 김정은 : 연구원/수성대학교 교수

##### ● 대한수의사회

○ 김동완 : 연구원/대한수의사회 기획실 차장

#### 2) 자문위원(3명)

##### ●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 이요윤 : 자문위원/한국동물병원협회 상무이사/동물병원장

##### ● 한국수의과대학협회

○ 서강문 : 자문위원/한국수의과대학협회 회장/서울대 수의대 학장

##### ● 한국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 협의회

○ 윤현영 : 자문위원/동물병원장협의회장 대리/건국대 수의대 동물병원장

#### 4. 연구개발 내용 소개 : 연구책임자

- 1)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 소개
- 2) 연구진 역할 분담 방향 및 보조금 집행 계획서 소개

#### 5. 안건 토의

##### 1) 연구개발 방법 및 전략

A. 연구 개발 목표 사안별로 인증원 및 보건사대학협회에서 주제에 따라 각각 연구원 중에서 대표 발표후 전체 토의 및 결정해가는 방법

B. 회의 일정에 따른 그 날의 결정 목표는 가급적 당일 결정하기로 하는 방법

##### 2) 인증기준 정립 방법

###### A. 인증기준 정립 방법

- 인증기준 정립에 필요한 사항이 먼저 결정되면 인증기준을 인증원 및 보건사대학협회에서 각각 작성하여 회의 최종일에 합의 정리하는 방법

- 인증기준 정립에 필요한 사항이 결정되면 인증원에서 인증기준을 정리하고 회의 최종일에 함께 검토 심의하여 정리하는 방법

###### B. 인증 편람 제정방법

: 인증기준 제정후 편람 제정은 곧 이어 이루어질 후속 작업으로 보아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봄.

##### 3) 기타

#### 6. 차기 회의 안건 및 진행방법

#### 7. 차기 회의 일정 조정

#### 8. 폐회

#### ■ 첨부 자료 및 비치 자료

##### 1. 첨부자료

- 1)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및 연구개발 개요

[부록 1.2. 참고]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연구개발 계획서

[부록 2.1. 참고]

- 3) 수의학교육인증기준(2019)

##### 2. 비치자료

- 1)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보건복지부)
- 3) 일본 동물간호사 제도(2019.11.17. 일본 동물간호사협회 보고회)

<첨부 1.>농림축산식품부 공문 및 연구개발 개요

[부록 1.2. 참고]

<첨부 2.>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연구개발 계획서

[부록 2.1. 참고]

<첨부 3.>

# 수의학교육 인증기준

2019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 목 차

머리말	163
일러두기	164
용어설명	165
영역별 인증기준	
1. 조직 및 운영 영역	167
2. 교육과정 영역	168
3. 학생 영역	169
4. 교수 영역	170
5. 시설 및 자원 영역	171



## 머 리 말

수의학교육인증은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이며, 한-미FTA 협상에서 논의될 MRA를 대비한 것 입니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은 우리나라의 수의과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수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의사 역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012년 제정된 '수의학교육인증기준'에 의하여 2017년 12월까지 5개 수의과대학이 인증을 받았고, 1개 대학은 평가단이 구성되었으며, 다른 1개 대학이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2020년 전반기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의 1주기 평가·인증이 완료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주기에는 보다 상향된 인증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의학교육인증원은 OIE 권고를 비롯하여 인증평가의 수행과정 중 지적사항, 자체평가서 작성과정에서의 애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상교육 강화 권고 및 교육부의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컨설팅 과정 등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연구하고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16일 '2주기 인증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하고, 4차례의 대면회의, 1회의 공청회, 수의과대학의 의견 수렴, 종합토론회, 연찬회 등을 통하여 OIE 권고를 반영한 2주기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은 기존의 인증기준 중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에서 중복된 내용을 줄이고, 하나의 평가항목에 한 가지 사실을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2주기 인증기준' 중 기술내용 및 참고자료 포함은 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인증평가를 받기위하여 준비하는 대학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대학용 편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개정된 인증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수의학교육에 필요한 핵심적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인증평가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수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의학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수준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일러두기

1. OIE 권고 반영 수의학교육 인증기준은 모든 수의과대학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1주기의 인증평가를 받는 대학은 현재의 인증기준과 개정된 2주기 인증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 2. 인증평가 기준의 세부내용 중

(1) 특별하게 자료 제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기본 단위는 학기로 한다(예: 2020년도 2학기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의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2) 모든 기준은 수의과대학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기준이다.

(3) 참고자료의 「부록」은 자체평가서에 첨부하는 자료이며, 「비치」는 현지방문 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자료이다. 「현장확인」은 현지방문 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는 자료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4) 자체평가서에 작성한 모든 기구의 활동은 평가와 되먹임(피드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인증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다.

## 용어 설명

인증기준에 서술된 내용에 기술된 용어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부록:** 수의과대학이 자체평가보고서와 함께 별도로 영역별로 제본하여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의미한다. 부록은 수의과대학에서 현재 활용하거나 존재하는 문서나 자료의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 요구하는 양식 또는 표에 맞추어 정리된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 **비치:** 수의과대학이 방문평가단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관련 목록과 자료를 의미한다. 비치자료는 수의과대학에 존재하는 문서나 자료 중 현장에서 담당자와 함께 검토하고 질의응답이 필요한 자료이다.
- **현장확인:** 방문평가단이 해당 수의과대학에서 직접 실사, 관찰, 면담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수의과대학은 방문평가단이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담당자나 관계자의 면담이 가능하도록 미리 섭외를 해 놓아야 한다.
- **전문직업성:** 수의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수의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 이외에 '직업윤리, 의사소통, 협동성, 비판적 사고'와 같은 전문직업성 또는 일반직무능력을 가져야 하며, 수의학교과과정 또는 비교과활동을 통하여 졸업생은 전문직업성을 갖추어야 한다.
- **1차 진료:** 졸업생이 졸업 후 1일에 단독으로 수행하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 위생검사 행위를 의미한다.
- **학생활동:** 학생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과외 활동으로,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학술 교류 모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 **상담체계(멘토링 시스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규정을 통해 교수-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 사이의 교류를 가지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진로 및 경력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 **교육목적:** 교육기관의 존재이유이며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대학이 설정한 가치이다. 수업기간과 교육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육목적 기술의 예시>

- 수의사를 양성하여 동물의 보건향상과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

- **교육목표:** 교육기관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졸업생 역량 기반의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교육목표 또는 졸업생 역량은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수업시기별 또는 교과별 성과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목표 기술의 예시>

- 졸업생은 1차 진료를 할 수 있다.

- **학습목표:**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에서 제공하는 특정 교과목이나 학기를 이수한 학습자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는 성과이며,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나타낸다.
- **역량:**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하며, '~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기술한다.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역량'과 '전문직업성 또는 일반직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인증:** 인증기관이 대학 시설, 자원, 교육과정 운영, 졸업생 역량 등에 관하여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대학 내·외부 관계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체계이다.
- **인정:** 교육부가 인증기관의 행·재정적 역량, 인증평가 기준과 절차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인증기관이 교육부를 대신하여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을 대학 내·외부 관계자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체계이다.

#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	1.1.1. 수의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수의과대학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대학 구성원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	1.2.1. 대학본부와 수의과대학 사이에 상호 의사소통 구조가 있어야 한다.
		1.2.2.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가 있어야 한다.
		1.2.3. 대학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
		1.2.4.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여야 한다.
		1.2.5. 교육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교수와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대학은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 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1.3.3.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10항목		

##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분	평가항목
2. 교육과정	2.1. 교육성과지표와 역량	2.1.1.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졸업역량에 수의과대학협회에서 제시한 '수의학교육 졸업역량'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1.2. 졸업예정자의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제시하여야 한다.
		2.1.3. 역량 달성을 위한 학생 1인당 기초와 임상실습비가 적정하여야 한다.
	2.2. 교육과정 설계와 관리	2.2.1. 졸업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편성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2.2.2. 학생의 수의학적 지식과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시행하여야 한다.
		2.2.3. 학생의 학습성과를 높이고 주도적인 학습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2.2.4. 역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2.3. 기초수의학 교육과정	2.3.1. 기초수의학 교과목은 임상수의학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2.4. 임상수의학 교육과정	2.4.1. 임상수의학 교육은 1차 진료(일반진료) 수준의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임상기초실습과 심화실습 단계가 1차 진료능력을 확보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2.4.2. 임상수의학 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임상진료실습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4.3. 대학 동물병원의 임상실습을 위한 실습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임상실습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학생을 교육하여야 한다.
		2.4.4. 농장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임상실습과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2.5. 전문직업성 교육과정	2.5.1. 수의학 교육과정에 전문직업성 교과목을 다양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교과목과 연관된 현장 체험 기회가 있어야 한다.
		2.5.2. 전문직업성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2.6. 임상 교육지원의 적절성	2.6.1. 임상실습을 위한 동물병원을 확보하여 동물병원 내 학생 임상교육에 적절한 시설과 교육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소계 - 6부문 15항목

###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입학정책의 타당성 및 공정성	3.1.1. 학생선발에 관련한 서면으로 된 구체적 기준, 정책 및 과정이 있어야 한다.
		3.1.2.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에게 입학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2.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멘토링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2.2.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3.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3. 학생활동과 지원	3.3.1.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의료봉사를 포함한 사회봉사 활동)이 활발하고, 이에 대한 수의과대학의 지원 및 지도체제가 있어야 한다.
		3.3.2. 수의과대학 소속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교내·외 연합 및 수의과대학 동아리에 대한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4.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의 적절성	3.4.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가 있고, 사전 안내체제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이 갖추어져 있으며, 수혜상황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4.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4.4.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학생회실, 동아리방, 기타)을 적절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3.4.5.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가 있으며, 적절한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 진로 및 학습 성과	3.5.1. 수의사국가시험 합격률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국 수의과대학 평균의 90%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합격률과 취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계 - 5부문 13항목

## 4.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전임교수를 적정 수 확보하여야 한다.
	4.2. 교수의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	4.2.1 전임교수의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4.2.2. 전임교수의 국내·외 연구 실적이 적절하여야 한다.
		4.2.3. 교수의 연구추진 과정에서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3. 교수개발 및 지원	4.3.1. 교수 개발 및 수의학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4.3.2.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3.3.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5. 시설 및 자원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5. 시설 및 자원 영역	5.1. 교육시설 및 자 원	5.1.1. 수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수의학 도서관에 수의학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대학구성원(학생, 교수, 교직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소통 및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5.1.4. 수의과대학은 부속 동물병원 이외에 동물의 진료 및 임상교육과 축산물 위생실습을 위한 목장(농장), 도축장, 응급진료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2.2. 대학은 교수의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수의과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본시설 및 설비의 유지보수, 잉여기자재처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시설 및 설비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총합계 - 20부문 54항목

[부록 4.2.]

## 제 1 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 : 이기창, 김용준

1. 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10:30~13:3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10/12명)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김용준	이흥식	박인철	이기창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박영재	이수정	김정은	
자문위원	서강문	이요윤		
대한수의사회	김동완			

### 4. 회의진행 순서

- 1) 위원 소개 및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소개
- 2) 농식품부에서 연구개발 요청해 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 관련 회의안건에 대한 토의

### 5. 과제추진 배경, 연구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 소개 : 연구책임자

- 1) 과제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목표 및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 소개
- 2) 연구진 역할 분담 내용 및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소개
- 3) 연구기간 및 사업비 : 2021.1~2월 (2개월), 20백만원
- 4) 연구기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공동)

### 6. 회의 안건

- 1) 위원회 명칭 검토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 위원회” 명칭 타당성
- 2) 주요 정책개발 내용 (농림부 요청 4개 사항) 검토
  - 동물보건사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 교수(전임, 겸임, 초빙 등) 및 학생 등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기준 마련
  - 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평가) 적용 방법 마련

3) 연구수행 일정표 검토

연구수행내용	2021.1		2021.2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17~ 23	1.24~ 1.30	1.31~ 2.6	2.7 ~13	2.14 ~20	2.21 ~27
동물보건사 제도 관련 자료 조사	✓					
연구진 1차회의 (역할분담 및 일정 조정)		✓				
2차회의 (동물보건사 이수 과목, 학점, 시간 확정) ①교과목 ②실습			✓			
3차회의 ①동물보건사 실습이수기관 확정 ②인적자원 영역기준 확정 ③시설 및 기자재 등 교육환경 영역기준 확정					✓	
4차회의 ①인증기준 초안 검토 및 확정 ②평가기준 항목별 점수표 적용방법						✓
최종보고서 제출						✓

- 4) 차기 회의 내용 검토
- 5) 차기 회의 일정 수립

7. 회의 결과(안건 결정사항)

- 1) 명칭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 위원회 명칭 승인
- 2) 주요 정책개발 내용
  - 농식품부 요청 4개 사항 + 특례자 기준 마련 1개 사항 추가
  - 농식품부 개발 요청사항을 인증기준의 “영역”으로 정리
    - 1. 동물보건사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마련 → “교육과정 영역”
    - 2. 교수등 인적자원 평가기준 마련 → “교수영역”과 “학생영역”으로 구분
    - 3.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 교육환경 평가기준 마련 → “시설 및 자원 영역, 시설 및 설비 영역, 또는 시설·환경 영역”
    - 4. 상기 4개 영역 외에 “조직 및 운영 영역”을 추가하기로 함.

3) 연구개발 방법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마련 원칙

- 2년제 학제의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함.

4) 인증기준 정리 방법 : 인증기준 정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결정되면 인증기준을 수인원 및 동물보건사대학협회에서 각각 작성하여 마지막 회의에서 검토하여 최종 인증기준(안)을 결정한다.

5) 차기 회의 진행 전략 및 내용

- 향후 회의 전략: 연구개발 내용 주제에 따라 수인원 및 동물보건사대학협회에서 각각 대표자 발표 후 전체 토의 및 결정
- 차기 회의 내용
  -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교과목, 이수학점 수 및 실습 과목, 실습시간)
  -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

6) 연구수행 일정

- 상기 일정표에 따라 추진

7) 기타

- 평가영역은 교육, 학생, 교수, 시설, 조직 및 운영 5개 영역으로 설정

8. 차기 회의 일정

- 일시: 2021년 2월 3일 (수) 오전 11시
- 장소: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부록 4.3.]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1. 일시 : 2021.2.3.(수). 11:0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3. 참석대상 (12명)
  - 1) 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이흥식, 박인철, 이기창
  - 2)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이수정, 정태호, 김정은
  - 3) 대한수의사회 : 김동완
  - 4)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 이요운
  - 5) 한국수의과대학협회 : 서강문
  - 6)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 : 윤현영
4. 전차 회의록 접수
5. 2차 회의 안건
  - 1) 농식품부 과제 : 동물보건학 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마련 (“교육과정” 영역)
    - 학제는 2021.1.26.(화) 1차 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2년제 학제를 대상으로 한다.
  - A.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교과목 및 실습과목)
    - 가. 학년별 필수 이수 교과목 및 학점
      - ① 1학년
      - ② 2학년
    - 나. 필수 이수과목 종합(과목 및 총학점수)
    - 다. 학년별 필수 이수 실습과목 및 시간
      - ① 1학년
      - ② 2학년
    - 라. 실습과목 종합( 과목 및 총 실습시간)
      - ①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
      - ② 현장실습
  - B. 현장실습 운영 평가 방법

가. 현장 실습시간 및 실습과목

나. 참여 동물병원(①의료진 일정 숫자 이상 종합 동물병원, ②전국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③개인동물병원)

다. 동물병원에 따른 실습과목 및 실습시간

라. 실습 수행인원(병원에 따라 1인 ~ 일정 인원)

마. 실습교육 수행자 자격(병원장, 대학원생, 교수, 등)

바. 실습 절차(실습 신청부터 이수까지 절차)

사. 실습 평가방법

아. 실습 이수 확인 방법

자. 실습 소요 경비

차. 기타

2) 기타 안건

6. 차기회의 안건

7.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

#### ■ 첨부자료 및 비치자료

1. 첨부자료

1) 1차 회의록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개요.

[부록 1.2. 참고]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부록 3.1. 참고]

4)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교과목 및 실습과목)”, “현장실습 운영 평가 방법” 자료

2. 비치자료

1)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한국간호교육평가원)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보건복지부)

3) 일본 동물간호사 제도(2019.11.17. 일본 동물간호사협회 보고회)

4) 수의학교육 인증기준

<첨부 1.>

## 제 1 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 : 이기창, 김용준

“1차 회의록 내용은 「부록 4.2. 1차 회의록」으로 대체”

<첨부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개요.

[부록 1.2. 참고]

<첨부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부록 3.1. 참고]

<첨부 4.>

1. 교육과정 이수체계 및 이수학점

평가내용

1. 학과의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교양, 전공과목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는가?
2. 동물보건사 관련 전공 교과목의 이수학점이 최소 36학점 이상인가?
3. 기초예방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8학점 이상인가?
4. 임상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8학점 이상인가?
5. 복지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0학점 이상인가?

별첨. 필수전공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영역	교육내용	교과목명	최소 이수 학점
기초예방 분야	동물의 구조 해부 및 기능 동물의 계통별, 원인별 주요질병 동물위생, 인수공통전염병 및 공중보건	동물해부생리학	8학점 이상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임상분야	동물내과간호 및 수의임상병리 동물간호 동물외과간호 및 수의영상진단 동물간호 전공용어/원무행정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건내과학	18학점 이상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동물보건영상진단학	
		동물병원실무	
		동물보건약리학	
복지분야	동물보건관련 법령/동물윤리/복지 반려동물 총론 동물행동 및 행동교정 동물영양	동물보건법규	10학점 이상
		반려동물학	
		동물행동교정	
		동물보건영양학	



## 1-2. 전공이론교육

### 평가내용

1. 전공이론과목별 학습목표를 작성
2. 전공이론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학기 평균 5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 1.3 전공실습교육

### 평가내용

1. 실습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현황(필수전공 교과목 총 학점 대비 40%이상)
2. 실습교과목의 1개 분반 학생수가 3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 표. 필수실습교과목

실습교과목명 (총 7개과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동물보건영상진단학 및 실습
	동물병원실무
	동물행동교정실습

## 1.4 현장실습 교육

### 1.4.1 현장실습교과목의 학점 및 실습시간 편성현황

편성 학년	편성 학기	실습교과목명	학점	현장실습 운영시간
대학자율	대학자율	동물병원현장실습	2	6시간 × 5일/주 × 4 주(연속) = 총 120 시간 이상

### 1.4.2.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자격

- 현장실습지도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 현장지도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 [현장실습지도교원 현황표]

연도	학기	성명	담당과목	직위	최종 학위	수의사면허 유무	임상경력
	1						
	2						

#### [현장지도자 현황표]

실습기관명	가능한 실습인원	현장지도자				
		성명	직위	최종 학위	임상경력	협약체결 유무

### 1.4.3. 현장 실습기관 현황

- 조건을 갖춘 임상실습기관이 확보되고 협약이 100% 체결되어 있는가?

#### 조건내용: 결정사항

실습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근무자수	실습배정인원	인증여부	체결연도

### 1.4.4. 실습절차, 평가방법, 이수확인방법, 실습소요 경비 기타

- 교육부가 공시한 대학생 현장실습 규정을 기반으로 각 대학규정에 맞춰 운영

[부록 4.4.]

## 제2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이기창,김용준

1.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11:00~16:0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11/12명)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김용준	이흥식	박인철	이기창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보협)	박영재	이수정	김정은	정태호
자문위원	윤현영	이요윤		
대한수의사회	김동완			

### 4.회의 안건

- 1)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교과목 및 실습과목)
- 2) 현장실습 운영 평가방법

### 5. 회의 결과(안건 결정사항)

#### 1) 동물보건사 교육기관 평가·인증기준 마련(“교육과정 영역”)

■ 학제는 1차 회의(2021.1.26.) 결정사항에 따라 2년제 학제를 대상으로 한다.

#### A. 동물보건사 관련 학년별 전공 교과목 및 이수학점

##### ① 교과목 및 이수학점

가. 교과목 총 이수 학점은 교육부령에 따라 70학점(교양과목 포함)이상을 이수하는지 확인한다.

나.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과목에 해당되는 적정한 과목 및 학점이 강의 이수과목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1의 이수 필수과목 및 학점을 인증기준에 적시한다.

표1. 이수필수전공교과목 및 이수학점

영역	교육내용	필수 교과목	최소 이수 학점
기초예방 분야 (3과목)	동물의 구조, 해부 및 기능 동물의 계통, 원인별 주요질병 동물위생, 인수공통전염병 및 공중보건	동물해부생리학(3)	9학점
		동물질병학(3)	
		동물공중보건학(3)	
임상 분야 (8과목)	동물내과간호 및 수의임상병리 동물간호 동물외과간호 및 수의영상진단 동물간호 전공용어/원무행정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건내과학(3) 동물보건외과학(3) 동물보건임상병리학(3) 동물응급간호학(2) 동물보건영상학(2) 동물병원실무(3) 의약품관리학(3) 동물병원현장실습(2)	21학점
복지 분야 (4과목)	동물보건관련 법령/동물윤리/복지 반려동물 총론 동물행동 및 행동교정 동물영양	동물보건복지및법규(2)	10학점
		반려동물학(2)	
		동물행동교정학(3)	
		동물보건영양학(3)	
15과목			40학점

다. 이수필수 교과목 관련 결정사항 요약

-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제시한 필수 이수 교과목 및 총 학점수는 당초 13과목, 36학점에서 → 15과목, 40학점으로 조정되었음.
- 임상분야 교과목에 동물응급간호학(2학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 임상분야 교과목에 동물병원현장실습(2학점)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가 제시한 교과목 일부는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음
  - ‘동물보건영상진단학’ → ‘동물보건영상학’으로 변경
  - ‘동물보건약리학’ → ‘의약품관리학’으로 변경
  - ‘동물보건법규’ → ‘동물보건복지 및 법규’로 변경
- 상기 이수필수교과목에 대한 학년별 필수 이수 교과목 및 학점은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에서 정리하기로 함.

②. 실습과목 및 학점

가. 동물보건사 양성대학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이수 필수 실습과목 및 학점을 인증 기준에 적시한다.

표2. 이수필수 실습 교과목

<b>이수필수 실습 교과목 (총 10과목, 18학점)</b>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3-1-2)
	동물응급간호학및실습(2-1-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2-1-1)
	동물병원실무및실습(3-1-2)
	의약품관리학및실습(3-1-2)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3-1-2)
	동물병원현장실습(2-2)

■ 실습시수 과목은 상기 교과목중 이론 강의 및 실습이 함께 편성된 과목으로서 실습이 수행되는 과목만 별도 정리한 것임. 괄호의 내용은 (총학점수-이론 학점수-실습 학점수)로 구분됨.

■ 상기 이수필수 실습과목에 대한 학년별 이수실습과목 및 학점은 동물보건사대학교육 협회에서 정리하기로 한다.

2) 현장실습 운영방법

가. 동물병원 현장실습 시간은 120시간으로 한다.

■ 120 시간 ; 15시간(주당) X 8주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개정안 무급요건 충족 기준)

나. 현장실습 실습분야 및 내용은 실습교과목의 내용으로 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교과목 명은 '동물병원현장실습'으로 하며, 이수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 동물병원 현장실습 실습분야는 표2 실습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 현장실습 ‘참여 동물병원’은 일반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부속 동물병원으로 한다.

라. 현장실습교육 ‘현장지도자’는 병원장, 또는 진료수의사로 등록된 의사로 한다.

마. ‘현장실습지도교원’은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의 의사면허 소지 전임교원으로 한다.

바. 현장실습 참여 동물병원과의 협약 체결 등 현장실습절차(신청부터 이수 및 평가까지)는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에서 관리 수행한다.

사. 현장실습 평가는 동물보건사 양성대학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수행한다.

아. 현장실습 이수확인은 현장실습 협약 체결상의 ‘현장지도자’가 수행한다.

자. 현장실습 수행 인원(1인~일정 인원)은 동물병원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자율에 맡긴다.

차. 현장실습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에 일임한다.

### 3) 기타

① 위원회 명칭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 위원회 명칭을 ‘동물보건사 교육 인증기준 개발 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미 전달이 가능한 현재 명칭(“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 위원회”)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 ② 용어 정리

■ 현장실습지도교원 :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의 실습 담당 교수

■ 현장지도자 : 현장실습기관(일반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동물병원)과 현장실습 협약 체결시 실습지도 자격이 있는 자로 지정된 실습기관 측의 실습 담당자

## 6. 차기 회의 안건

1) “인적자원”(교수 및 학생) 영역 인증기준

2) “시설 및 기자재 등 교육환경” 영역 인증기준

3)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4) 농식품부 주요 정책 개발 내용 중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기준

5) 특례자에 대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기준

## 7. 차기 회의 일정

■ 일시 : 2021년 2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또는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추후 확정  
통보)

[부록 4.5.]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1. 일시 : 2021.2.17.(수). 11:0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3. 참석대상 (12명)

- 1) 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이흥식, 박인철, 이기창
- 2)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이수정, 정태호, 김정은
- 3) 대한수의사회 : 김동완
- 4)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 이요윤
- 5) 한국수의과대학협회 : 서강문
- 6)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 : 윤현영

4. 전자 회의록 접수

5. 3차 회의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중 ②와 ③ 사항과 ‘별도 응시자격 부여기준’

1) “인적자원” (교수 및 학생) 영역 인증 기준

가. “교수” 영역 인증기준

나. “학생” 영역 인증기준

2) “시설 및 기자재 등 교육환경”영역 인증기준

3)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4) 농식품부 주요정책 개발 내용 중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기준



5) 특례자에 대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기준

6) 기타

6. 차기회의 안건

7.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

■ 첨부자료 및 비치자료

1. 첨부자료

- 1) 2차 회의록
-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개요  
[부록 1.2. 참고]
-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부록 3.1. 참고]
- 4) “교수”, “학생”, “조직 및 운영”, “시설 및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회의자료

2. 비치자료

- 1)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보건복지부)
- 3) 일본 동물간호사 제도(2019.11.17. 일본 동물간호사협회 보고회)
- 4) 수의학교육 인증기준

<첨부 1.>

## 제2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이기창,김용준

“2차 회의록 내용은 「부록 4.4. 2차 회의록」으로 대체”

<첨부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개요  
[부록 1.2. 참고]

<첨부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부록 3.1. 참고]

<첨부 4.>

“교수”, “학생”, “조직 및 운영”, “시설 및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회의자료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2.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1.2.1. 대학본부와 학과 사이에 상호 의사소통 구조가 있어야 한다.
		1.2.2.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2.3. 학과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
		1.2.4.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3.2. 중장기 발전 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1.3.3.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9항목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임상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원 및 지도체제가 있어야 한다.
		3.2.3.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교내·외 연합 동아리에 대한 지도 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학생회실, 동아리방, 기타)을 적절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3.3.5.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가 있으며, 적절한 질병예방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10항목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학과는 전임교수를 적정 수(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수의학박사 학위 소지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임상실습지도 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임상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 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임상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	4.3.1 전임교수의 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4.3.2. 전임교수의 연구 실적이 적절하여야 한다.	
	4.4. 교수개발 및 지원	4.4.1. 교수 개발 및 동물보건학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4.4.2.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4.3.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계 - 4부문 8항목		

## 대학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敎員)

[별표 5]

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관련)

(단위 : 명)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교 원 1 인 당 학 생 수	25	20	20	20	8

## V.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자원	5.1.1.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실습시설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1.4. 현장실습을 위하여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 과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2.2. 대학은 교수의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대학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校舎)

[별표 3] <개정 2009.4.21>

교사(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m<sup>2</sup>)

계 열 별 구 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학 생 1 인 당 교 사기준면적	12	17	20	19	20

비 고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7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동물보건사 양성 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실습실 목록

	실험실습실 명칭	관련 교과목
1	동물보건외과실습실	동물보건외과실습
2	동물보건내과실습실	동물보건내과실습
3	동물보건임상병리학실습실	동물보건임상병리실습
4	동물보건영상학실습실	동물보건영상학실습
5	동물해부·생리학실습실	동물해부·생리학실습
6	동물공중보건학실습실	동물공중보건학실습
7	동물응급간호학실습실	동물응급간호학실습
8	의약품관리학실습실	의약품관리학
9	동물행동교정학실습실	동물행동교정학실습
10	동물보건영양학실습실	동물보건영양학실습

동물보건사 양성 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습기자재 목록

	실습기자재명	관련 교과목
1	고압멸균기(Aoto Clave)	동물병원 기초실습
2	자외선 살균기	"
3	장비멸균기(E.O. gas, 플라즈마)	"
4	초음파세척기	"
5	미량측정용 저울	"
1	혈구분석기	임상병리·생리학 실습
2	혈액화학 분석기	"
3	뇨분석기	"
4	원심분리기	"
5	현미경 및 모니터	"
6	비중계(photometer)	"
7	산도 측정기(PH meter)	"
1	혈압측정기(동물용, 초음파)	내과 실습
2	인큐베이터(신생 동물 또는 위중동물용)	"
3	청진기	"
4	디지털 체온계	"
5	안압측정기	"
6	검안기	"
7	검이경	"
8	심전도계	"
9	환자 감시기(patient minitor)	"
10	수액 자동주입기(infusion pump)	"
11	요도 카테터	"
1	흡입마취기	외과 실습
2	일반외과 수술기구	"
3	정형외과 수술기구	"
4	후두경	"

1	초음파진단기	영상의학 실습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3	방사선 보호장구(납안경, 납치마, 갑상선보호대)	”
1	제세동기	응급의학
2	암부백(Ambu bag)-수동식 인공호흡기	”
1	개 골격표본(모형 포함)	해부 실습
2	고양이 골격표본(모형 포함)	”
3	각 장기별 모형	해부 및 종합
4	동물실습 모형(삽관, 심폐소생술 등)	”
5	개 모형(더미)-분리형	”
6	고양이(더미)-분리형	”

[부록 4.6.]

### 제3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이기창,김용준

1. 일시 ; 2021년 2월 17일(수), 11:00~15:0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10/12명)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김용준	이흥식	박인철	이기창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보협)	박영재	이수정	김정은	정태호
자문위원	서강문			
대한수의사회	김동완			

#### 4. 보고사항

- 연구개발비 2천만원 중 1400만원(70%)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금되었고, 현재 2차 회의까지 회의수당지급 완료, 연구원 및 자문위원 수당 지급 완료, 단, 자문위원 1인에 대하여는 잔액이 부족하여 지급 보류
- 예산 지급 내역 자료 배부

#### 5. 회의 안건

##### ■ 전차회의록 접수

##### ■ 인증기준 개발

##### 1) “인적자원” (교수 및 학생) 영역 인증 기준

- 가. “교수” 영역 인증기준
- 나. “학생” 영역 인증기준

##### 2) “시설 및 기자재 등 교육환경”영역 인증기준

##### 3)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 4) 농식품부 주요정책 개발 내용 중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 자격 부여 기준

### 5) 특레자에 대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기준

## 6. 회의 결과(안건 결정사항)

### 1) 전차회의록 접수 및 일부 수정

- 제 2차 회의록 중 2)현장실습 운영방법 다.항에서 ‘현장실습 ‘참여 동물병원’은 “일반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한다.’를  
-> ‘현장실습 ‘참여 동물병원’은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정

### 2) 인증기준 중 실습실 및 기자재 규정

- 실습실 및 기자재는 동물보건사대학의 특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하도록 한다.
- ◎ 실습실 보유 기준은 모집정원 기준으로 설정한다.  
(예; 실습실 1실 / 모집정원 30명 당)
- ◎ 실습실을 실습과목 명칭으로 한정하여 정하지 않는다. 단, 실습과목에 따른 실습기자재를 과목별로 제시한다.
- ◎ 실습 기자재목록은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보협)과 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에서 제시한 필수기자재를 동보협에서 통합정리해서 제시한다.

### 3) 영역별 인증기준 검토

- 인증기준은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와 수의학교육인증원이 영역별로 각각 제시한 사항에서 공통된 사항을 정리한 후 필요한 항목을 논의하여 정리하기로 함.
- 별도 준비된 인증기준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정함

- ① 교육과정 영역은 전차 회의(제 2차 회의)에서 부문 및 항목별로 정리가 안되었으므로 2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인증기준으로 정리하여 최종회의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함.

② 조직 및 운영 영역(\*정리된 내용은 첨부4. 자료 참조)

A. 수인원이 제시한 3개 부문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

B. 1.1 ‘교육목표’ 부문에서 평가항목중 1.1.2. “교육 **목적** 달성을~”  
→ “교육 **목표** 달성을~”로 변경

C. 1.2 ‘조직과 재정’ 부문에서 1.2.1과 1.2.3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1.2.2 항목을 →1.2.1 항목으로 표기한다.

D. 1.3 ‘전략과 계획’ 부문에서 1.3.1은 1.3.3의 일부 내용을 함께  
기술하고 1.3.3.은 삭제한다.

◎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생 영역(\*정리된 내용은 첨부4. 자료 참조)

A. 수인원이 제시한 3개 부문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함

B. 3.2 ‘학생활동과 지원’ 부문

◎ 3.2.1 평가항목 에서 ‘안전한 **임상실습** 운영을~’은  
→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로 변경

◎ 3.2.3 평가항목에서 ‘교내·외 **연합동아리에**~’는  
→ ‘교내·외 **동아리에**’로 변경

C. 3.3 ‘학생복지 및 시설’ 부문에서 3.3.5 항목은 다음과 같이 변경

→ ◎ “3.3.5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수 영역(\*정리된 내용은 첨부4. 자료 참조)

A. 수인원이 제시한 4개 부문에서 4.3부문과 4.4부문은 통합하여  
**4.3 ‘교수 교육 및 활동지원’** 부문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문은 수용하기로 결정함.

B. 4.1 ‘전임교수’ 부문에서 4.1.2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

◎ “4.1.2. 학과는 전임교수를 적정수(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별표5**)를 확보하여야 하며, 수의사면허 소지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C. 4.3 '교수 교육 및 활동 지원' 부문 :

- ◎ 기존안 4.3.2를 삭제하고 4.4.1을→ 4.3.2 항목으로 변경
- ◎ 기존안 4.4.2항목은 → 4.3.3 항목으로 변경
- ◎ 4.4.2항목은 → 4.3.3 항목으로 변경
- ◎ 4.4.3 항목은 → 4.3.4항목으로 변경

⑤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정리된 내용은 첨부4. 자료 참조)

A. 수인원이 제시한 3개부문을 수용하기로 결정

B. 5.1 '교육시설 및 **자원**' 부문은 →  
'교육시설 및 **설비**' 부문으로 변경

C. 5.1.1. 평가항목에서 “필요한 **교육 및 실습시설**을 갖추고”는 →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로 변경

D. 5.1 '교육시설 및 설비' 부문에서 5.1.4. 항목은 '**교육과정**' **영역으로 이동하여 편성**. \*따라서 5.1 부문에는 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기로 함.

4) 농식품부 주요정책 개발 내용 중 :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기준

① 이 항에서 규정하는 기관 및 과정에 대한 경계와 범위가 모호하여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에서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름.

- 즉,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범위에 있지 않고, 전문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학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되었음.
- 이중 학원은 법 제정시 포함하지 않기로 제외한 경우임

◎ **인증기준 적용 방법** : 단, 상기 대학이 아닌 동물간호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증을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물보건사 양성대학 평가·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동물보건사 양성대학과 구별하여 기관명을 표시한 별도 인증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함. (예; 양성대학 인증기준에서 언급하는 '대학', '학과'를 → '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기술)

## 5) 특례자에 대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기준

■ 이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뢰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에서 주어진 과제가 아니므로 논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

## 6)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방법

■ 인증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는 수의학 인증평가기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점수화와 병기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함.

## 6. 차기 회의 안건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인증기준 최종안 확정

■ 5개 영역에 따라 ‘개요’, ‘부문’, ‘항목’을 기술하고 항목별 인증기준, 검토사항, 비치자료, 부록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함.  
(\*기술 방법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 참고)

### 2) 인증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 방법 마련

## 7. 차기 회의 일정

- 일시 ;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부록 4.7.]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1. 일시 : 2021.2.24.(수). 11:0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3. 참석대상 (12명)

- 1) 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이흥식, 박인철, 이기창
- 2)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이수정, 정태호, 김정은
- 3) 대한수의사회 : 김동완
- 4)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 이요윤
- 5) 한국수의과대학협회 : 서강문
- 6)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협의회 : 윤현영

4. 전자 회의록 접수

5. 4차 회의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1) “교육과정” 영역 인증 기준 마련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 총 정리 및 최종 안 확정

● 5개 영역에 따라 ‘개요’, ‘부문’, ‘항목’을 기술하고 ‘항목’별 인증기준, 검토 사항, 비치자료, 부록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함.

(\*기술 방법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 참고)

- ① ‘조직 및 운영’ 영역
- ② ‘교육과정’ 영역
- ③ ‘학생’ 영역
- ④ ‘교수’ 영역

⑤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3) 인증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 방법 마련

4) 향후 일정

- ①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작성, 제본 및 제출
- ② 필요시 TF팀 구성 : 마무리 작업 및 상황 대비

5) 기타

■ 첨부자료 및 비치자료

1. 첨부자료

- 1) 3차 회의록
-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개요  
[부록 1-2. 참고]
-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부록 3 참고]
- 4) “교육과정”인증기준 준비자료
- 5) 5개 영역 항목 기술 자료

2. 비치자료

- 1)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보건복지부)
- 3) 일본 동물간호사 제도(2019.11.17. 일본 동물간호사협회 보고회)
- 4) 수의학교육 인증기준

<첨부 1.>

## 제3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이기창,김용준

“3차 회의록 내용은 「부록 4.6. 3차 회의록」으로 대체”

<첨부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개요  
[부록 1.2. 참고]

<첨부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부록 3.1. 참고]

<첨부 4.>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II.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2.2.2. 학과는 전공교과목(이론, 실습)의 특성에 적절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는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실습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첨부 5.>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안)

2021. 00. 00.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양성대학협회, 대한수의사회)



## 개 요

영역	부문 (수)	항목 (수)
1. 조직 및 운영	3	6
2. 교육과정	3	8
3. 학생	3	8
4. 교수	3	7
5. 교육시설 및 실습기 자재	3	6
계	15	35

# I. 조직 및 운영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b>교육목적</b> 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1.1.2. <b>교육목표</b>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3. 1.2.1. <b>교육목적</b> 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5.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6.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1. 조직 및 운영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학과를 운영하여야 한다.

###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는 대학의 비전과 동물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동물보건사의 핵심역량이 포함되어 있는가?
2. 교육목적과 목표는 대학과 학과의 구성원이 알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는가?
3. 교육목적과 목표를 개정할 경우,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쳤는가?

#### 부록

해당없음

#### 비치자료

- 1-1. 교육목적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 1-2. 개정할 경우, 관련 조직(위원회 등)의 활동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의자료, 회의록 등 기타)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8.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물보건사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를 명문화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사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개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쳤는가?
3. 동물보건사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학과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 부록

1-1. 학과에서 설정한 동물보건사교육 졸업역량(학습성과)

### 비치자료

- 1-3. 동물보건사 교육 학습성과(학생의 졸업역량)
- 1-4. 동물보건사 학습성과 설정을 위한 활동 자료(회의자료 등)
- 1-5.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공지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 1.2. 조직과 재정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9.

### 평가사항

1.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과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2. 학과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조교)이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대학 재정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3. 학(과)장은 동물보건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공자인가?
4. 학(과)장의 학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5. 학과 예산편성과 집행, 기타 학과운영등에 학과장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 부록

- 1-2. 학과 운영 규정
- 1-3. 대학과 학과의 조직도, 학과 위원회 위원 명단
- 1-4. 학과 보직교수와 행정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표, 학(과)장의 발령대장

### 비치자료

- 1-6.. 대학 인사 규정
- 1-7. 학과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정책결정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8. 학과 운영 지원 인력의 고용과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9.(학과 행정직원 또는 조교의 발령대장,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대장 등)
- 1-10. 학(과)장의 임무와 권한이 명시된 규정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0.

### 11. 현장확인

1. 교수면담

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2.

#### 평가사항

1.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학과 재학생 수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학과 예산을 적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2. 학과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3. 학과 예산과 실험실습비 집행률이 각각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
4.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부록

- 1-5. 학과예산의 편성 내역(도표 작성)
- 1-6.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자료(도표 작성)

#### 비치차료

- 1-. 예산편성 및 심의 관련 자료(공문, 위원회 서류 등) (최근 2년)
- 1-. 학과예산의 집행 관련 결재 서류 등 근거자료(최근 2년)
- 1-.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서류(최근 2년)
- 1-. 실험실습비 운영규정
- 1-. 실험실습비 관련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 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3.

#### 14. 현장확인

1. 교수 및 직원 면담

## 1.3. 전략과 계획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발전계획을 추진한 활동 내용과 실적이 있는가?
3. 발전계획과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 1-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서

### 비치자료

- 1-. 학과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규정, 위원회 회의록 등(최근 2년)
- 1-. 학과 발전계획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
- 1-. 발전계획의 실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자료와 개선에 반영한 자료(최근 2년)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15.

### 평가사항

1.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가?
2.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3.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없음

### 비치자료

- 1-. 학과 중·장기발전계획의 추진 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 및 집행실적 포함)(최근 2년)

##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Ⅱ.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2.2.2. 학과는 전공교과목(이론, 실습)의 특성에 적절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는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실습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2. 교육과정

동물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대학과 학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론 교육, 교내 실습 및 현장실습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는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는가?
2.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이 70학점 이상인가?
3. 학습성과는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가?

#### 부록

해당없음

#### 비치자료

- 2-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년간 입학생에게 적용된 교육과정 편성표)
- 2-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규정
- 2- 학습성과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개정한 경우, 개정근거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2.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목표와 학습성과 달성에 적합한 교과목 이수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사 교과과정 중 필수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현장실습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0학점 이상인가?
2. 기초예방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9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3. 임상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21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4. 복지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0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5. 필수전공교과목의 학년별 편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

### 부록

- 2-.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대한 학칙 또는 규정(부분 발췌)
- 2-. 대학의 이수구분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개 학년도 입학생)
- 2-.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최근 2년 개설된 교과목)

### 비치자료

- 2-.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 2-.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 규정
2. 졸업생 전 학년 성적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 필수전공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영역	교육내용	필수 교과목	최소 이수 학점
기초예방 분야 (3과목)	동물의 구조, 해부 및 기능 동물의 계통, 원인별 주요질병 동물위생, 인수공통전염병 및 공중보건	동물해부생리학(3)	9학점
		동물질병학(3)	
		동물공중보건학(3)	
임상 분야 (7과목)	동물내과간호 및 수의임상병리 동물간호 동물외과간호 및 수의영상진단 동물간호 전공용어/원무행정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건내과학(3)	19학점
		동물보건외과학(3)	
		동물보건임상병리학(3)	
		동물보건응급간호학(2)	
		동물보건영상학(2)	
		동물병원실무(3)	
의약품관리학(3)			
복지 분야 (4과목)	동물보건관련 법령/동물윤리/복지 반려동물 총론 동물행동 및 행동교정 동물영양	동물보건복지및법규(2)	10학점
		반려동물학(2)	
		동물행동교정학(3)	
		동물보건영양학(3)	
현장실습	동물병원현장실습		2학점
<b>15과목</b>			<b>40학점</b>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2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학점	이론	실습	
1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3	1	2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동물공중보건학	3	3		
	복지	반려동물학	2	2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	3	1	2	
		동물보건영양학	3	3		
	임상	동물병원실무및실습	3	1	2	
		의약품관리학및실습	3	1	2	
<b>소계</b>			<b>19</b>	<b>15</b>	<b>4</b>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임상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	3	1	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	3	1	2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3	1	2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	2	1	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2	1	1		
<b>소계</b>			<b>19</b>	<b>7</b>	<b>12</b>	
동물병원현장실습			2	0	2	
<b>합계</b>			<b>40</b>	<b>22</b>	<b>18</b>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4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학점	이론	실습	
1	기초예방	동물공중보건학	3	3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복지	동물보건영양학	3	3		
2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3	1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복지	반려동물학	2	2		
	복지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	3	1	2	
3	임상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2	1	1	
4	임상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	2	1	1	
	임상	동물병원실무및실습	3	1	2	
	임상	의약품관리학및실습	3	1	2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동물병원현장실습			2	0	2	
<b>합계</b>			<b>40</b>	<b>22</b>	<b>18</b>	

##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한다.

### 평가사항

1. 필수전공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를 설정하고, 평가방법 및 도구 등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가?
2. 학생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 2- 전공이론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2개 교과목)

### 비치자료

- 2- 학습목표 및 성과, 평가방법 및 도구가 제시된 필수 전공교과목 강의계획서
- 2-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 자료 및 분석결과 등

2.2.2.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이론, 실습 등)에 적절한 학생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필수전공이론교과목의 강좌당 학생 수가 학기 평균 5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2. 전공실습교과목의 1개 분반 당 학생 수가 3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 부록

- 2- 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 비치자료

2-. 이론강의실 사용일지 및 분반별 출석부

2-. 실습실 사용일지 및 분반별 출석부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 하여야 한다.**

**평가사항**

- 1. 전공실습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현황이 필수전공 교과목 총 학점 대비 40% 이상인가?
- 2. 현장실습은 4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으로 편성되어있는가?
- 3. 실습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과 활용이 적절한가?
- 4. 교내실습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부록**

- 2-. 학생별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2-. 현장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비치자료**

- 2-. 교육과정편성표 등(교내, 현장실습교과목의 총 실습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2-. 강의시간표
- 2-. 주차별 실습계획서
- 2-. 현장실습 교과목별 실습지침서(학생용, 지도자용 각 1부)
- 2- 현장실습 교과목별 실제 학생이 사용한 실습지침서 각 1부(최근 2개학기)

**※ 실습시수 편성필수 교과목**

<b>이수필수 실습 교과목 (총 10과목, 18학점)</b>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2-1-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2-1-1)
	동물병원실무및실습(3-1-2)
	의약품관리학및실습(3-1-2)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3-1-2)
	동물병원현장실습(2-2)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기관은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대학 현장실습절차는 문서화되어 있고 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3. 현장실습과 관련된 양식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4. 현장실습 동물병원과의 실습 운영은 협약체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현장실습 이수확인은 현장실습 협약상의 '현장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부록

- 2-.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비치자료

- 2-. 현장실습기관 협약서 및 대한수의사회 인증을 받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현장실습운영규정
- 2-. 동물보건사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 2-. 학생이 실제 활용한 현장실습 지침서, 현장실습지도교원의 임상실습 지도일지등 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의 실습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개 학기)

##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 평가사항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규정, 조직, 예산을 포함한 질 관리 체계가 있는가?
2.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과 내외의 의견수렴 절차와 제도가 있는가?
1. 교과목의 지속적인 질개선(CQI),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교육목표 달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3. 졸업생 국가시험 합격률 전국평균 5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부록

#### 2-.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자료 (최근 2년)

### 비치자료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관련 규정
- 2-.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직의 회의록 등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교육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교육목표 달성평가 결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 강의평가결과등에 대한 분석 및 활용자료
- 2-. 국가시험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 대한 학생의 평가과정이 있는가?
2.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개선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부록**

- 2-. 학생의 현장실습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자료

### **비치차료**

- 2-. 실습 후 간담회 운영 및 결과보고서

## Ⅲ. 학생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3. 학생

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 효율적인 학습, 생활지도 및 졸업 후 진로를 위한 학생 지도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학생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임상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어 임상실습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학생 지도 체제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있는가?
2. 교수별 정기적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학생지도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가 있는가?

##### 부록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지도교수제도 운영 현황

##### 비치자료

- 3-.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 교수별 상담 및 지도 학생 명단
- 3-. 교수별 상담 및 지도 실적의 증빙자료(일지 또는 전산기록 등)

###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2.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부록

3-3. 진로지원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 현황

#### 비치자료

- 3-.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결과보고서, 공문 등)
- 3-.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행 자료

##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2.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보험, 비상연락망 체계 등)
3. 학생의 교내실습을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는가?
4. 임상실습 전 기본적인 검진 사항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결핵검진, B형 간염 예방접종 등)

### 부록

3-4. 교내 실습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 비치자료

- 3-. 교내실습을 위한 안전 관리 규정
- 3-. 안전 관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험, 비상연락망 등)
- 3-. 교내실습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 및 실시자료
- 3-. 학생의 기본적인 검진사항과 예방접종 확인자료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동아리 활동,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학술활동, 동아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이 있는가?
2. 학생의 동아리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가?
3. 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체제가 있는가?
4.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부록

3-5. 학생 학내·외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 비치자료

- 3-.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지도체제에 대한 자료
- 3-.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자료

###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2. 학과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매년 10%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 부록

3-5. 장학금 수혜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비치자료

- 3-. 장학금 지급 규정
- 3-. 장학생 선발,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수회의 자료, 공문 등, 최근 2년)
- 3-. 장학금 지급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예산 집행 서류 등, 최근 2년)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2.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3.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용 사물함을 제공하고 있는가?
4.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5.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지시설의 개선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 부록

3-6. 학생 편의시설 현황(도표 작성)

#### 비치자료

- 3-. 학생 편의시설 현황 자료
- 3-.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자료
- 3-.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2. 공정한 기숙사 배정을 위한 기준이 있는가?
3. 타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우선 배정 기준이 있는가?
4. 기숙사 배정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5. 기숙사의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 부록

3-7. 학생의 기숙사 시설과 입실 현황(도표 작성)

## 비치자료

- 3-. 타 지역 학생의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비정기준 자료
- 3-. 기숙사 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료
- 3-. 동물보건사교육 과련 학과 학생의 기숙사 지원 및 선정 현황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시설(보건진료실 또는 병원)과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2.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예: 건강검진 등)이 있는가?
3.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제가 있는가?
4.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 상담 체제를 확립하고 있는가?
5. 실험·실습 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예: 파상풍,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 있는가?
6. 학생의 학내·외 학습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대책(예: 보험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7. 학생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부록

- 3-. 보건시설(양호실, 보건실) 및 인력 현황
- 3-. 협약서(협약에 의하여 학생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 있는 경우)

## 비치자료

- 3-. 학생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시설과 체제 및 운영에 관한 자료
- 3-. 보험가입 증빙자료 및 감염성 질환 예방접종 자료

## 4. 교수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4.2. 현장실습지도 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7항목	

##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 1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지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절차 및 평가방법이 있는가?
2. 전임교수의 직급승진 심사제도가 있는가?
3. 전임교수의 정년보장 심사제도가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 교원 인사규정(대학 규정, 학과 내규)
- 4-. 전임교수 임용서류(학위, 경력, 직급 등 입증 자료)
- 4-. 전임교수 임면보고 공문(최근 2년)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평가사항

1. 학과는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2. 학과는 입학정원 40명 기준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수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가?
3. 필수전공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가?

### 부록

- 4-. 전임교원 확보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비치자료

- 4-. 전임교수의 수의사면허증 증빙자료
- 4-. 전임교수의 학위 증빙자료 또는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
- 4-. 학과의 교과배당표

## 4.2.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가?
2. 현장지도자는 **진료수의사로 등록되고**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3.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현장지도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가?

### 부록

4--.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비치자료

- 4-. 현장실습 배치표
- 4-. 현장실습지도교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 현장지도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속기관 공문 인정)
- 4-. 실습지도 협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회의록 등 (최근 2개 학기)



##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 1인의 필수전공교과목 주당 수업 시수는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실습 교과목 인정시수에 대한 대학 규정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부록

- 4-. 학기별 개설 교과목 목록(최근 2년)
- 4-. 학기별 강의시간표(최근 2년)

#### 비치자료

- 4-. 학과의 강의시간표(최근 2년)
- 4-.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습 교과목 인정시수 포함)

###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학교육 관련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해 전임교원 지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 전임교수의 동물보건관련 전문직 단체 활동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자료

###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수의 국내 연수나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체계(참가비,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가 갖추어져 있는가?
2. 교수의 해외 연수나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체계(참가비,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가 갖추어져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 전임교수의 연수나 학회 등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자료
- 4-. 전임교수의 연수나 학회 등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예·결산 자료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전문직 활동 실적(논문, 특허, 저·역서 등)은 적절한가?

## 부록

해당없음

## 비치자료

- 4-. 교수 업적 평가 지침 또는 규정
- 4-. 교수 업적 평가 운영 실적 증빙자료
- 4-. 전임교수 연구논문, 특허, 저·역서 목록
- 4-.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 자료

##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V.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b>학과</b> 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관련 학술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p>소계 - 3부문 <b>6항목</b></p>		

##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학과는 동물보건교육의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학술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실무 교육에 적합한 현장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모집정원 대비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이 학생 1인당 학생 1인 1.5m<sup>2</sup>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교육기본시설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가? (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및 훈련장)
3.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적절히 확보되고 활용되고 있는가? (회의실, 자율학습실, 사물함, 휴게실 등)

#### 부록

5-. 실습실 도면

#### 비치자료

- 5-. 학과 관련 건축물 대장 (강의실 목록 및 면적 포함)
- 5-. 학과 교육기본시설 구분별 목록(건물명, 층, 호실, 면적 포함)

**5.1.2.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도서관에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가 확보되어 있는가?
2.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

### **부록**

해당없음

### **비치자료**

- 5-. 동물보건학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 목록 및 활용 실적 (도서구매 예산 집행자료 포함)
- 5-. 학술정보서비스 관련 지침 및 안내자료 등
- 5-. 학술정보서비스 시스템 (방문평가 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6.

### **평가사항**

1. 모집정원 30명을 기준으로 필수 기자재가 100% 확보되어 있는가?
2. 대학 또는 학과의 지침에 따라 필수 기자재가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상태가 양호한가?
3.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 필수기자재 목록

필수 교과목	보유기자재	개수	위치	관리 상태	최소충족조건 (모집정원 30명 기준)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개와 고양이 골격 모델				6
	장기별 모형(set)				1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	청진기				30
	직장체온계				30
	검이경				1
	검안경				1
	간이혈당계				6
	네블라이저				1
	도플러혈압계				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	수액대				6
	일반외과 수술기구(set)				6
	정형외과 수술기구(set)				1
	수술포(set)				6
	멸균기				1
	수술대				1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자동혈구분석기(CBC)				1
	자동혈청화학분석기(Chemistry)				1
	현미경				6
	요비중계				6
	원심분리기				1
동물응급간호학및실습	응급키트				1
	인퓨전펌프				1
	시린지펌프				1
	앰부백				1
	ICU				1
	동물환자 모니터				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엑스레이 촬영기 (모형가능)				1
	고글/납장갑/납복 (set)				1
	촬영 자				1
동물병원실무및실습	컴퓨터 (chart program installed)				1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	FCI규격 어질리티장비 set				1

부록

해당없음

## ■ 비치자료

- 5-.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 실습기자재 보유 및 관리 목록 (최근2년)
- 5-. 실습기자재 사용 일지 및 관리 대장 (최근2년)
- 5-. 기자재 구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예·결산 자료 (최근2년)

## 5.2. 연구시설 및 설비

###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7.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이 확보되어 있는가?
2. 개인 연구실의 실내 설비(실내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전화, 전산망 등)가 적절한가?
3. 연구실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연간 예산이 대학본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가?

#### 부록

해당없음

#### 비치자료

- 5-. 교수연구실 등의 교수연구지원시설 확보 현황과 시설 설비 현황(조명, 방음, 환기, 난방시설 등)
- 5-. 연구실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 연구실 유지 및 보수 관련 예산집행 자료



## 5.3. 시설 및 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기본시설과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는가?
2. 기본시설과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3.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시설과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 5-. 시설·설비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활용 실적 자료

### 비치자료

- 5-. 교육 및 연구시설 설비 관리규정 또는 지침
- 5-. 시설·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예산 집행 내역 (최근2년)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8.

### 평가사항

1.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2.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 부록

- 5-. 학내 시설·설비 및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규정과 점검, 수리 및 개선 실적 자료
- 5-.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대피 교육에 대한 근거자료

### 비치자료

- 5-.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5-. 위해요소 관리 증빙

## 부록 (용어)

- **영역** ; 인증 평가 요소 중 가장 상위 개념의 5개 주제 단위를 의미함.
- **부문** ; 5개 영역 바로 하위의 소주제 단위를 의미함.
- **항목** ; 5개 영역 내 하위 단위 (소주제) 아래 최하위 세부 단위를 의미함.
  
- **현장실습지도교원** ;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 소속으로서 학생들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위한 대학 전임교수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적사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을 의미함.
- **현장지도자** ; 임상실습기관(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에 소속된 진료수의사 (임상경력 2년 이상)로서 학생들의 임상현장 실습 지도를 위해 대학이 위촉한 수의사를 의미함.
  
- **동물보건 기본실기지침** : 동물보건사 직무수행에 있어 수행 빈도와 중요도가 높아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실기 지침서
-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의과대학내 동물병원을 지칭함.

[부록 4.8.]

## 제 4 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이기창, 김용준

1. 일시 : 2021년 2월 24일(수), 11:00~18:0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10/12명)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김용준	이흥식	박인철	이기창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보협)	박영재	이수정	김정은	정태호
자문위원	윤현영			
대한수의사회	김동완			

### 4. 전차회의록 접수

제 3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결정함.

### 5. 회의 안건

####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 1) “교육과정” 영역 인증 기준 마련
- 2)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 총 정리 및 최종 안 확정
  - 5개 영역에 따라 ‘개요’, ‘부문’, ‘항목’을 기술하고 ‘항목’별 인증기준, 검토사항, 비치자료, 부록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함.

(\*기술 방법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 참고)

- ① ‘조직 및 운영’ 영역
  - ② ‘교육과정’ 영역
  - ③ ‘학생’ 영역
  - ④ ‘교수’ 영역
  - ⑤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
- 3) 인증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 방법 마련
  - 4) 향후 일정
    - ①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작성, 제본 및 제출
    - ② 필요시 TF팀 구성 : 마무리 작업 및 상황 대비
  - 5) 기타

## 6. 회의 결과(안건 결정사항)

### 1)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결정

(\*정리된 내용은 첨부 6. 참조)

● 2 교육과정 영역, 3부문(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3 교육과정 개선) 8항목

### 2)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기준 5개 영역 영역별 안 확정

(\*확정된 안 첨부 6. 참조)

▷ 5개 영역에 따라 '부문', '항목'을 재확인함.

▷ 기술 내용은 '인증기준', '검토사항 또는 평가척도 또는 평가사항', '비치자료', '부록'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법 확정.

(\*기술 방법은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을 참고하되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의 평가에 적합하도록 가능한 독자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기로 함.)

#### ① 조직 및 운영 영역

{\*첨부 6. 참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안)}

◎ 3차 회의(2월17일)에서 결정된 인증기준(3부문 6항목) : 수정 없이 인정

◎ 평가사항(\*검토사항) 검토 및 일부 수정

- 주요 수정 사항 : 인증기준 1.2.2 평가사항 중 실험실습비 집행율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

- 나머지 평가사항 일부 자귀 수정 : 붙임 2 참조

◎ 비치자료 및 부록은 추가 조사 및 보충하기로 함

#### ② 교육과정 영역

{\*첨부 6. 참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안)}

◎ 4차회의(2월 24일)에서 결정된 인증기준(3부문 8항목)에 따른 인증기준, 평가사항, 비치자료 검토 및 인정

◎ 평가사항(\*검토사항) 검토 및 일부 수정

◎ 비치자료 및 부록은 추가 조사 및 보충하기로 함

③ 학생 영역{\*첨부 6. 참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안)}

- 3차회의(2월17일)에서 결정된 인증기준(3부문 8항목) 대부분 재 인정
- 3.2.2는 “동아리 활동”을 넣기로 함 →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동아리활동,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원 및 지도체제가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검토사항)에서도 동아리 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넣기로 함.
- 평가사항(\*검토사항) 검토 및 일부 수정
- 비치자료 및 부록은 추가 조사 및 보충하기로 함

④ 교수 영역{\*첨부 6. 참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안)}

- 3차회의(2월17일)에서 결정된 인증기준(3부문 7항목) 대부분 재 인정
- 항목4.1.2는 동보협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검토한 후 동보협 안대로 교체하기로 결정 → ‘4.1.2. 학과는 전공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항목4.3.1 “전임교원의 전공교과목~” → “전임교원의 필수 전공교과목~” : “필수”라는 표현을 넣기로 함
- 항목4.3.2 : 동보협에서 제시한 안대로 교체하기로 결정 →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검토사항) 검토 및 일부 수정
  - 주요 수정 사항 : 인증기준 4.2.1. 평가항목 2. “현장지도자는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를 → “현장지도자는 진료수의사로 등록되고~”로 수정.
  - 나머지 평가사항 일부 자귀 수정 : 붙임 2 참조
- 비치자료 및 부록은 추가 조사 및 보충하기로 함

⑤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첨부 6. 참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안)}

- 3차회의(2월17일)에서 결정된 인증기준(3부문 6항목) 대부분 재인정
- ‘5.1.1.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 “학과는”을 넣기로 결정
- 5.2.2 인증기준은 삭제하기로 함 → 따라서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영역은 3부문 6항목으로 변경됨
- 5.1.1 평가사항 1에 학생 1인당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을 표시하기로 결정함 : 구체적인 표현은 동보협에서 제시하기로 함
- 5.1.1 평가사항 2에서 “교육기본시설” 중 “동물훈련장”을 넣기로 결정함.
- 5.3.2 인증기준 중 평가사항 1.2는 동보협에서 내용을 재정리하기로 함.
- 평가사항(\*검토사항) 검토 및 일부 수정
- 비치자료 및 부록은 추가 조사 및 보충하기로 함

### 3) 인증평가 기준 설정

- 평가는 동물보건사 인증평가위원회(\*가칭)에서 대학별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해 적격 여부 심의를 거친 후 평가단이 구성되면 평가단에서 수행하며, 평가단은 항목별 평정기준에 따른 평정표(항목별 점수표)를 작성한다.

#### 가. 평가 점수(안)

- 항목별 점수표(계량 평가) 적용 방법 확정: 동보협측에서 마련한 부문별 가중치 점수화는 매우 세부적이고 계량화가 용이한 점은 있으나 각 부문별 가중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수인원에서 제시한 보건의료계열 인증기준 방법에 근거한 아래표의 점수화 방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 평가결과를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나누고 점수화함.

평가결과	점수
우수	3
적격	2
미흡	1
부적격	0

#### 나. 판정 종류 (안) (\*최종 인증 판정 기준)

- 다음 판정 종류 및 기준을 정하기로 결정함

- ① **완전인증 (3년)**: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두 적격(2점) 이상인 경우.
- ② **단축인증 (2년)**: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이상이 미흡(1점)인 경우.
  - 단, 2년 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해서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최종 판정함.
- ③ **인증불가**:
  - 인증기준 5개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0점) 이 하나라도 있으면 인증불가로 최종 판정함.
  - 인증기준 전체 항목에서 미흡 이하가 60% 이상이면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 다. 인증 유형 :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안)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은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므로 완전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전체 영역에서 한 개 영역이 미흡일 때 인증기간 단축(2년)을 인정하되, 한정인증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함.

① 완전인증 : 3년

② 단축인증 : 2년 -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한다

③ 인증불가 :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

\* 상기 2 판정종류(안) ③항 참조.

○ “인증 불가 판정의 경우 1년 경과 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로 인증불가 판정의 경우 재인증 신청 시기를 결정

④ 인증취소 :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과정을 거쳐 동물보건사 인증판정위원회(\*가칭)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 4) 자체평가보고서 자료 제출 기준

■ 아래 사항을 결정함.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제시해야 함. 즉, 대학과 학과는 최소한 지난 2년간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해 활용된 자료를 인증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한국동물보건사교육인증원(\*가칭)에 제출해야 인증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신설대학의 경우 인증·평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을 모집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교육을 한 과거 2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기타 결정사항

■ 회의결과 완성된 인증평가기준(안)에 대한 최종안 확정을 위해 연구원 중심으로 3월 중 마무리 회의 개최 예정

■ 동보협과 수인원이 각각 인증기준 기준집을 작성한 후 상호 정보 교환하여 작성된 최종안을 가지고 최종 마무리 검토하기로 함.

■ 기타 인증기준(안) 검토 사항

- ‘검토사항’ 명칭을 ‘평가사항’으로 변경하기로 검토

- 부록, 비치목록 검토 및 표기형식(예:1-1, 1-2 순서 표기)검토

- 인증기준 기준집에 ‘현장확인’ 목록을 포함할 것을 검토

[부록 4.9.]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1. 일시 : 2021.3.16.(화). 16:0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3. 참석대상 (9명)

- 1) 수의학교육인증원 : 김용준, 이흥식, 박인철, 이기창
- 2)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 박영재, 이수정, 정태호, 김정은
- 3) 대한수의사회 : 김동완

4. 전차 회의록 접수

5. 5차 회의(연구원 회의)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기준 최종(안) 검토
- 2) 평생교육기관 대상 별도 인증기준 중 기관명 표시 방법
- 3) 인증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계량화 방안

5. 향후 일정

- ①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작성, 제본 및 제출
- ② 필요시 TF팀 구성 : 마무리 작업 및 상황 대비
- ③ 경우에 따라 농식품부 회의 가능-소수 대표 참여

6. 기타



## ■ 첨부자료 및 비치자료

### 1. 첨부자료

- 1) 4차 회의록
-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개요  
[부록 1-2. 참고]
-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부록 3. 참고]
- 4) 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평가 인증기준 최종(안)  
[부록 5. 참고]
- 5) 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기준 최종(안)  
[부록 6. 참고]
- 6) 평가기준에 따른 인증항목별 점수 계량화 방안

### 2. 비치자료

- 1)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한국간호교육평가원)
-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운영지침(보건복지부)
- 3) 일본 동물간호사 제도(2019.11.17. 일본 동물간호사협회 보고회)
- 4) 수의학교육 인증기준

<첨부 1.>

## 제 4 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이기창, 김용준

“4차 회의록 내용은 「부록 4.8. 4차 회의록」으로 대체”

<첨부 2.>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개요  
[부록 1-2. 참고]

<첨부 3.>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관련 법규  
[부록 3. 참고]

<첨부 4.> 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평가 인증기준 최종(안)  
[부록 5. 참고]

<첨부 5.> 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기준 최종(안)  
[부록 6. 참고]

<첨부 6.>

## 인증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 적용방법(안)

### 인증·평가

-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동물보건사 인증평가위원회(\*가칭)에서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 적합의 평가를 받은 자체평가보고서만을 평가대상 자료로 인정한다.
-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하여 평가위원 인력 pool 내에서 평가단장을 포함한 5인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하며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수행한다.
- 평가단은 평가위원별 각 영역을 분담하여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평정표(항목별 점수표)를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항목별 평가와 점수

- 항목별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평가결과	점수
우수	3
적격	2
미흡	1
부적격	0

### 판정 종류와 판정 기준 및 요건

판정 종류	판정 기준 및 요건
완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준 5개 영역 모두 적격(2점) 이상인 경우</li> </ul>
단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1점)인 경우</li> <li>* 단, 2년 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해서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최종 판정함</li> </ul>
인증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0점) 이 1개 이상인 경우</li> <li>• 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 이상인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인증불가로 판정함</li> <li>• 인증 불가 판정시 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li> </ul>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물보건사 인증판정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li> </ul>

## 인증 유형과 인증기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은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므로 완전 인증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고, 단축인증 및 인증불가와 재인증 그리고 인증취소 요건은 아래와 같다.

인증 유형	인증 기간
완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인증일로부터 만 3년 간 인증 유효)</li> </ul>
단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인증일로부터 만 2년 간 인증 유효)</li> </ul>
인증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하며, 인증 불가 판정 후 판정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li> </ul>

표1. 동물보건사 인증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 계량화 방안 최종(안)

영역	부문	항목	평가사항 개수	우수(전항 목 만점) 점수	적격(전항 목 적격) 점수	미흡(전항 목 미흡) 점수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3	3	2	1
		1.1.2.	3	3	2	1
	1.2. 조직과 재정	1.2.1.	4	3	2	1
		1.2.2.	4	3	2	1
	1.3. 전략과 계획	1.3.1.	3	3	2	1
		1.3.2.	3	3	2	1
		소계	20	18	12	6
2. 교육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3	3	2	1
		2.1.2.	5	3	2	1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3	3	2	1
		2.2.2.	3	3	2	1
		2.2.3.	4	3	2	1
		2.2.4.	5	3	2	1
	2.3 교육과정 개선	2.3.1.	4	3	2	1
		2.3.2.	3	3	2	1
		소계	30	24	16	8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3	3	2
3.1.2.			3	3	2	1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4	3	2	1
		3.2.2.	3	3	2	1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3	3	2	1
		3.3.2.	5	3	2	1
		3.3.3.	5	3	2	1
		3.3.4.	6	3	2	1
		소계	32	24	16	8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3	3	2	1
		4.1.2.	3	3	2	1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3	3	2	1
	4.3. 교수의 교육및 활동지원	4.3.1.	3	3	2	1
		4.3.2.	3	3	2	1
		4.3.3.	3	3	2	1
		4.3.4.	3	3	2	1
	소계	21	21	14	7	
5. 교육시설 및 실습기 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3	3	2	1
		5.1.2.	3	3	2	1
		5.1.3.	3	3	2	1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3	3	2	1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3	3	2	1
		5.3.2.	3	3	2	1
		소계	18	18	12	6
	총계	121	105	70	35	

표2.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배점

평가	배점	항목별 평가 기준	비고
우수	3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항목 우수인 경우 만점 105점
적격	2	평가사항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항목 적격인 경우 총 70점
미흡	1	평가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우	전항목 미흡인 경우 총 35점
부적격	0	평가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3.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 (3점 만점)

평가사항 개수	평가사항 별 배점
3	평가사항 각 1점
4	평가사항 중 1,2번째 항목은 각 1점, 3,4번째 항목은 각 0.5점
5	평가사항중 첫번째 항목은 1 점, 나머지 4항목은 각 0.5점
6	평가사항 각 항목당 0.5점

표4. 인증유형 별 점수기준

인증유형	총점에 따른 인증 판정 기준 (만점 105점)
완전인증 (3년)	총점 70점 이상이고, 동시에 각 영역별 점수(소계)가 모두 적격 점수 이상인 경우
단축인증 (2년)	총점 69점 이하 35점 이상인 경우, 또는 총점에 관계없이 5개 영역 중 한개 영역에서 점수(소계)가 미흡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불가	총점 34점 이하인 경우, 또는 총점에 관계없이 부적격 (0점) 항목이 한 개 이상인 경우, 또는 총점에 관계없이 5개 영역중 2개 이상 영역별 점수(소계)가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

[부록 4.10.]

## 제5차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회의록

작성:이기창, 김용준

1. 일시 : 2021년 3월 16일(화), 16:00~18:30
2. 장소 : 분당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3. 참석(7/9명) : 자문위원을 제외한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한 회의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김용준	이흥식	이기창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보협)	박영재	이수정	김정은	
자문위원				
대한수의사회	김동완			

### 4. 전차회의록 접수

### 5. 회의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개발“

- 1) 동물보건사 양성 기관 인증기준 최종(안) 검토
- 2) 평생교육기관 대상 별도 인증기준 중 기관명 표시방법
- 3) 인증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계량화 방안

### 6. 회의 내용 및 결과

#### 1) 동물보건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기준 (안) 검토 및 확정

■ 인증기준 최종 검토 및 최종안 확정

붙임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안) 참조

■ 5개 영역에 따라 ‘부문’, ‘항목’ 일부 수정(\*별첨1 인증기준(안) 참조)

가. 2.1.2 항목, 평가사항 3 : ● 21학점 → 19학점으로 수정

(\*현장실습 2학점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나. 2.3.1 항목, 평가사항 4. : ●졸업생 국가시험 합격률 →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합격률

다. 3.2.1 항목, 평가사항 4 : - ●평가사항 4 전체 삭제

- 3.2.1 항목 ●비치자료 3-9 삭제(\*평가사항 4 관련 비치자료)

라. 3.3.4 항목 평가사항 5 : - ●평가사항 5 전체 삭제

-3.3.4 항목 비치자료 3-22 수정 : ◎3-22 “보험가입 증빙자료” 로 정리

마. 4.1.2 항목 : -◎ “ ~ 교수를 충분히 확보~” →

“ ~교수를 적정수 이상 확보~” 로 수정

- ◎4.1.2 항목 평가사항 2. : “학과는 입학정원 40명~” →

“학과는 입학정원 30명~” 로 수정

바. 5.1.3 항목 필수기자재 목록

- ◎간이혈당계 : 6개 → 2개로 수정

- ◎동물환자모니터 → 동물환자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정

■ 평가사항 2개인 경우는 3개로 추가하고(11개 항목), 7개인 경우는 6개로 축소(1개 항목)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인증기준(안) 참조

◎ 평가사항 2개에서 3개로 추가된 항목들(총 11개 항목)

◎ 2영역(3항목) : 2.2.1, 2.2.2, 2.3.2

◎ 3영역(2항목) : 3.1.2, 3.3.1

◎ 4영역(4항목) : 4.3.1, 4.3.2, 4.3.3, 4.3.4

◎ 5영역(2항목) : 5.1.2, 5.3.2

◎ 평가사항 7개에서 6개로 조정된 항목

◎ 3영역(1항목) : 3.3.4

■ 평가사항의 기재 순서는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

## 2) “평생교육기관” 대상 별도 인증기준 중 기관명 표시방법

■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내용과 동일하게 하되, 평가 대상의 명칭을 ‘평생교육기관’으로 변경하여 기재함.

예 : 1. 조직 및 운영

◎ “평생교육기관은 동물보건사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1.1.1 항목

◎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목적과 목표는 ~”

2. “교육목적과 목표는 평생교육기관의 구성원이~”

◎ 비치자료

1-1 교육목적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평생교육기관 홈페이지, 평생교육기관 홍보 자료 등)



### 3) 인증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계량화 방안 확정 (표 및 붙임 2 참조)

- 평가시 항목내 평가사항 중 첫 번째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할 수 없으며 최종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음
- 각 항목은 3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 및 판정기준은 아래 표 참조 (표. 1,2,3,4)

#### 7. 향후 일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3월 31일까지
- 필요시 TF 팀 구성
- 농식품부 회의 참여 - 소수 대표

#### 8. 기타 결정 사항

-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언” 제출 요청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후 보고서 공유하기로 함

#### ● 첨부

◎붙임 1.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안) 최종본

◎붙임 2. 인증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계량화 방안



**부록 5.**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평가인증 기준 최종안」**



[부록 5.]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안)

- 동물보건사 양성대학 -

2021. 03. 25.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대한수의사회)



## 개 요

영역	부문 (수)	항목 (수)
1. 조직 및 운영	3	6
2. 교육과정	3	8
3. 학생	3	8
4. 교수	3	7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3	6
계	15	35

## 1. 조직 및 운영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 과 목표	19.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21.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2.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23.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24.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1. 조직 및 운영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학과를 운영하여야 한다.

###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5.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는 대학의 비전과 동물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동물보건사의 핵심역량이 포함되어 있는가?
2. 교육목적과 목표는 대학과 학과의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는가?
3. 교육목적과 목표를 개정할 경우,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쳤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차료

- 1-1. 교육목적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 1-2. 개정할 경우, 관련 조직(위원회 등)의 활동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의자료, 회의록 등 기타)

###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26.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물보건사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를 명문화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사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개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쳤는가?
3. 동물보건사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학과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 부록

- 1-1. 학과에서 설정한 동물보건사교육 졸업역량(학습성과)

#### 비치자료

- 1-3. 동물보건사 교육 학습성과(학생의 졸업역량)
- 1-4. 동물보건사 학습성과 설정을 위한 활동 자료(회의자료 등)
- 1-5.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공지자료(학과 홈페이지, 학과 홍보 자료 등)

## 1.2. 조직과 재정

###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

#### 평가사항

1. 학과 예산편성과 집행, 기타 학과 운영 등에 학(과)장이 동물보건학 전공 관련 전문성 및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과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 학과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조교)이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대학 재정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4. 학(과)장의 학과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 부록

- 1-2. 학과 운영 규정
- 1-3. 대학과 학과의 조직도, 학과 위원회 위원 명단
- 1-4. 학과 보직교수와 행정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표, 학(과)장의 발령대장

#### 비치자료

- 1-6. 대학 인사 규정
  - 1-7. 학과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정책결정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8. 학과 운영 지원 인력의 고용과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학과 행정직원 또는 조교의 발령대장,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대장 등)
  - 1-9. 학(과)장의 임무와 권한이 명시된 규정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8. 1-10. 학(과)장의 수의사 면허증 또는 최종 학위 증명서

29.

#### 30. 현장확인

1. 교수면담

1.2.2. 학과는 교육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1.

#### 평가사항

1. 대학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학과 재학생 수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학과 예산을 적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2. 학과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3. 학과 예산과 실험실습비 집행률이 각각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
4.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부록

- 1-5. 학과 예산의 편성 내역(도표 작성)
- 1-6.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자료(도표 작성)

#### 비치자료

- 1-11. 예산편성 및 심의 관련 자료(공문, 위원회 서류 등) (최근 2년)
- 1-12. 학과 예산의 집행 관련 결재 서류 등 근거자료(최근 2년)
- 1-13.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서류(최근 2년)
- 1-14. 실험실습비 운영규정
- 1-15. 실험실습비 관련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 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2.

#### 현장확인

33.

1. 교수 및 직원 면담

### 1.3. 전략과 계획

1.3.1. 학과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교육목적과 목표, 학과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발전계획을 추진한 활동 내용과 실적이 있는가?
3. 발전계획과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 1-7.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서

#### 비치자료

- 1-16. 학과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규정, 위원회 회의록 등(최근 2년)
- 1-17. 학과 발전계획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
- 1-18. 발전계획의 실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자료와 개선에 반영한 자료(최근 2년)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34.

**평가사항**

1.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가?
2.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3.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가?

**부록**

1-8. 중·장기 발전계획의 예산과 집행 자료

**비치자료**

1-19.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 및 집행실적 포함)(최근 2년)

##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Ⅱ. 교육 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 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 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2. 학과는 전공교과목(이론, 실습)의 특성에 적절한 학생 규 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 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 되어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 정 운영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 선하여야 한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는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 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실습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2. 교육과정

동물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대학과 학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론 교육,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 (CQI) 체계를 갖추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대학 및 학과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는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였는가?
2.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이 70학점 이상인가?
3. 학습성과는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가?

#### 부록

- 2.1.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년간 입학생에게 적용된 교육과정 편성표)

#### 비치자료

- 2-1.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규정
- 2-2. 학습성과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개정한 경우, 개정근거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2. 학과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사 교과과정 중 필수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현장실습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0학점 이상인가?
2. 기초·예방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9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3. 임상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9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4. 복지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0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5. 필수전공교과목의 학년별 편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

### 부록

- 2-2.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대한 학칙 또는 규정(부분 발취)
- 2-3. 대학의 이수구분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개 학년도 입학생)
- 2-4.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최근 2년 개설된 교과목)

### 비치자료

- 2-3.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 2-4.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 규정
- 2-5. 졸업생 전 학년 성적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 필수전공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영역	교육내용	필수 교과목	최소 이수 학점
기초예방 분야 (3과목)	동물의 구조, 해부 및 기능 동물의 계통, 원인별 주요질병 동물위생, 인수공통전염병 및 공중보건	동물해부생리학(3)	9학점
		동물질병학(3)	
		동물공중보건학(3)	
임상 분야 (7과목)	동물내과간호 및 수의임상병리 동물간호 동물외과간호 및 수의영상진단 동물간호 동물응급간호, 전공용어/원무행정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건내과학(3)	19학점
		동물보건외과학(3)	
		동물보건임상병리학(3)	
		동물보건응급간호학(2)	
		동물보건영상학(2)	
		동물병원실무(3)	
		의약품관리학(3)	
복지 분야 (4과목)	동물보건관련 법령/동물윤리/복지 반려동물 총론 동물행동 및 행동교정 동물영양	동물보건복지및법규(2)	10학점
		반려동물학(2)	
		동물행동교정학(3)	
		동물보건영양학(3)	
현장실습	동물병원현장실습		2학점
<b>15과목</b>			<b>40학점</b>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2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학점	이론	실습	
1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3	1	2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동물공중보건학	3	3		
	복지	반려동물학	2	2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영양학	3	3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3	1	2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3	1	2	
<b>소계</b>			<b>19</b>	<b>15</b>	<b>4</b>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2	1	1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2	1	1	
<b>소계</b>			<b>19</b>	<b>7</b>	<b>12</b>	
동물병원현장실습			2	0	2	
<b>합계</b>			<b>40</b>	<b>22</b>	<b>18</b>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4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학점	이론	실습		
1	기초예방	동물보건영양학	3	3	0	대학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복지	반려동물학	2	2	0		
2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3	1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0		
	임상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3	1	2		
	복지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	3	1	2		
3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2	1	1		
4	임상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2	1	1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3	1	2		
	복지	동물공중보건학	3	3	0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0		
동물병원현장실습			2	0	2		
<b>합계</b>			<b>40</b>	<b>22</b>	<b>18</b>		

##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필수전공교과목별 학습목표와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성과를 설정하고 있는가?
2. 필수전공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도구 등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가?
3. 학생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2-5. 전공이론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2개 교과목)

### 비치자료

- 2-6. 학습목표 및 성과, 평가방법 및 도구가 제시된 필수 전공교과목 강의계획서
- 2-7.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 자료 및 분석결과 등

2.2.2. 학과는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이론, 실습 등)에 적절한 학생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 ■ 평가사항

1.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이론강의실과 실습실의 운영관리는 적절한가?
2. 필수전공이론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학기 평균 5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3. 전공실습교과목의 1개 분반 당 학생 수가 3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 ■ 부록

2-6. 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 ■ 비치차료

- 2-8. 이론 강의실 사용일지 및 분반별 출석부
- 2-9. 실습실 사용일지 및 분반별 출석부

2.2.3. 학과는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공실습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현황이 필수전공 교과목 총 학점 대비 40% 이상인가?
2. 현장실습은 4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으로 편성되어있는가?
3. 실습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과 활용이 적절한가?
4. 교내실습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 2-7. 학생별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2-8. 현장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 비치자료

- 2-10. 교육과정편성표 등(교내실습과 현장실습 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확인가능 자료)
- 2-11. 강의시간표
- 2-12. 주차별 실습계획서
- 2-13. 현장실습 교과목별 실습지침서(학생용, 지도자용 각 1부)
- 2-14. 현장실습 교과목별 실제 학생이 사용한 실습지침서 각 1부(최근 2개 학기)

### ※ 실습시수 편성필수 교과목

<b>이수필수 실습 교과목 (총 10과목, 18학점)</b>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2-1-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2-1-1)
	동물병원실무및실습(3-1-2)
	의약품관리학및실습(3-1-2)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3-1-2)
	동물병원현장실습(2-0-2)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기관은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대학 현장실습절차는 문서화되어 있고 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3. 현장실습과 관련된 양식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4. 현장실습 동물병원과의 실습 운영은 협약체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현장실습 이수확인은 현장실습 협약상의 '현장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부록

2-9.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비치차료

- 2-15. 현장실습기관 협약서 및 대한수의사회 인증을 받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16. 현장실습운영규정
- 2-17. 동물보건사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 2-18. 학생이 실제 활용한 현장실습 지침서, 현장실습지도교원의 임상실습 지도일지등 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의 실습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개 학기)

## 2.3 교육과정 개선

2.3.1. 학과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규정, 조직, 예산을 포함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가 있는가?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과 내외의 의견수렴 절차와 제도가 있는가?
2. 교과목의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CQI),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교육목표 달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평균 5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부록

- 2-10.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자료 (최근 2년)
- 2-11.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자료

### 비치자료

- 2-19.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관련 규정
- 2-20.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직의 회의록 등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1. 교육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2.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3. 교육목표 달성평가 결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 강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 및 활용 자료
- 2-24. 국가시험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 대한 학생의 평가과정이 있는가?
2.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개선환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부록**

2-12. 학생의 현장실습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자료

### **비치자료**

2-25. 실습 후 간담회 운영 및 결과보고서

### 3. 학생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활동 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3. 학생

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 효율적인 학습, 생활지도 및 졸업 후 진로를 위한 학생 지도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학생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임상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어 임상실습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의 학생 지도 체제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있는가?
2. 교수별 정기적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학생지도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가 있는가?

#### 부록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지도교수제도 운영 현황

#### 비치자료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교수별 상담 및 지도 학생 명단
- 3-3. 교수별 상담 및 지도 실적의 증빙자료(일지 또는 전산기록 등)

3.1.2.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는가?
2.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3. 대학 및 학과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부록

3-3. 진로지원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 현황

### 비치자료

- 3-4.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결과보고서, 공문 등)
- 3-5. 학과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행 자료

##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학과는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2.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보험, 비상연락망 체계 등)
3. 학생의 교내실습을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부록

3-4. 교내 실습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 비치자료

- 3-6. 교내실습을 위한 안전 관리 규정
- 3-7. 안전 관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험, 비상연락망 등)
- 3-8. 교내실습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 및 실시자료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동아리 활동,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학술활동, 동아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가?
2. 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체제가 있는가?
3.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부록**

3-5. 학생 학내·외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 **비치자료**

- 3-9.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지도체제에 대한 자료
- 3-10.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자료

###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과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매년 10%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3.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3-6. 장학금 수혜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비치자료

- 3-11. 장학금 지급 규정
- 3-12. 장학생 선발,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수회의 자료, 공문 등, 최근 2년)
- 3-13. 장학금 지급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예산 집행 서류 등, 최근 2년)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2.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3. 모든 학생에게 개인용 사물함을 제공하고 있는가?
4.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5.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지시설의 개선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 부록

3-7. 학생 편의시설 현황(도표 작성)

### 비치자료

- 3-14. 학생 편의시설 현황 자료
- 3-15.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자료
- 3-16.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 ■ 평가사항

1.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2. 공정한 기숙사 배정을 위한 기준이 있는가?
3. 타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우선 배정기준이 있는가?
4. 기숙사 배정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5. 기숙사의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 ■ 부록

3-8. 학생의 기숙사 시설과 입실 현황(도표 작성)

### ■ 비치자료

- 3-17. 타 지역 학생의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배정기준 자료
- 3-18. 기숙사 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료
- 3-19. 동물보건사교육 관련 학과 학생의 기숙사 지원 및 선정 현황

###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시설(보건진료실 또는 병원)과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2.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예: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이 있는가?
3.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제가 있는가?
4.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 상담 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학생의 학내외 학습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대책(예: 보험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6. 학생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부록

- 3-9. 보건시설(양호실, 보건실) 및 인력 현황
- 3-10. 협약서(협약에 의하여 학생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 있는 경우)

#### 비치자료

- 3-20. 학생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시설과 체제 및 운영에 관한 자료
- 3-21. 보험가입 증빙자료

#### 4. 교수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7항목		

#### 4. 교수

학과는 동물보건학 분야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 전공 분야의 역량을 갖춘 교수를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교수는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교육, 연구, 봉사 및 연수 활동 등 교수업적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 1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지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절차 및 평가방법이 있는가?
- 2 전임교수의 직급승진 심사제도가 있는가?
- 3 전임교수의 정년보장 심사제도가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 교원 인사규정(대학 규정, 학과 내규)
- 4-2. 전임교수 임용서류(학위, 경력, 직급 등 입증 자료)
- 4-3. 전임교수 임면관련 공문(최근 2년)

4.1.2. 학과는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 평가사항

1. 학과는 입학정원 30명 기준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수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가?
2. 필수전공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가?
3. 학과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 부록

- 4-1. 전임교원 확보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 비치자료

- 4-4. 전임교수의 수의사면허증 증빙자료
- 4-5. 전임교수의 학위 증빙자료 또는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
- 4-6. 학과의 교과배당표

## 4.2.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가?
2. 현장지도자는 진료수의사로 등록되고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3.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현장지도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가?

### 부록

4-2.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비치자료

- 4-7. 현장실습 배치표
- 4-8. 현장실습지도교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9. 현장지도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속기관 공문 인정)
- 4-10. 실습지도 협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회의록 등 (최근 2개 학기)

###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 1인의 필수전공교과목 주당 수업 시수는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에 대한 대학 규정이 있는가?
3.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는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 4-3. 학기별 개설 교과목 목록(최근 2년)
- 4-4. 학기별 강의시간표(최근 2년)

##### 비치자료

- 4-11. 학과의 강의시간표(최근 2년)
- 4-12. 대학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습 교과목 인정시수 포함)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해 전임교원 지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3.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예산 집행 실적은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3. 전임교수의 동물보건관련 전문직 단체 활동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자료
- 4-14. 교수 역량개발 지원 관련 예·결산 자료



####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수의 국내 연수나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참가비,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가 갖추어져 있는가?
2. 교수의 국외 연수나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참가비,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가 갖추어져 있는가?
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 지원 집행 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5. 전임교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 지원 규정
- 4-16. 전임교수의 연수나 학회 등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자료
- 4-17. 전임교수의 연수나 학회 등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예·결산 자료

####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가?
3. 전임교수의 전문직 활동 실적(논문, 특허, 저·역서 등)은 적절한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8. 교수 업적 평가 지침 또는 규정
- 4-19. 교수 업적 평가 운영 실적 증빙자료
- 4-20. 전임교수 연구논문, 특허, 저·역서 목록
- 4-2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 자료

##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V.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학과는 동물보건교육의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학술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실무 교육에 적합한 현장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학과는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모집정원 대비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이 학생 1인당 학생 1인 1.5m<sup>2</sup>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교육기본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
3.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회의실, 자율학습실, 사물함, 휴게실 등)

#### 부록

5-1. 실습실 도면

#### 비치자료

- 5-1. 학과 관련 건축물대장 (강의실 목록 및 면적 포함)
- 5-2. 학과 교육기본시설 구분별 목록(건물명, 층, 호실, 면적 포함)

5.1.2.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도서관에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가 확보되어 있는가?
2.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
3. 학습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된 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5-3. 동물보건학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 목록 및 활용 실적 (도서구매 예산 집행자료 포함)
- 5-4. 학술정보서비스 관련 지침 및 안내자료 등
- 5-5. 학술정보서비스 시스템 (방문평가 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5.1.3. 학과는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모집정원 30명을 기준으로 필수 기자재가 100% 확보되어 있는가?
2. 대학 또는 학과의 지침에 따라 필수 기자재가 관리되고 있는가?
3.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5-6.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7. 실습기자재 보유 및 관리 목록 (최근2년)
- 5-8. 실습기자재 사용 일지 및 관리 대장 (최근2년)
- 5-9. 기자재 구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예·결산 자료 (최근2년)

**※ 필수기자재 목록**

필수 교과목	보유기자재	개수	위치	관리 상태	최소충족조건 (모집정원 30명 기준)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개 골격 모델				3
	고양이 골격 모델				1
	분리형 장기모형 (개)				1
	분리형 장기모형 (고양이)				1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	청진기				30
	직장체온계				30
	검이경				1
	검안경				1
	간이혈당계				2
	네블라이저				1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	도플러혈압계				2
	수액대				6
	일반외과 수술기구(set)				6
	정형외과 수술기구(set)				1
	수술포(set)				6
	멸균기				1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수술대				1
	자동혈구분석기(CBC)				1
	자동혈청화학분석기(Chemistry)				1
	현미경				6
	요비중계				6
동물응급간호학및실습	원심분리기				1
	응급키트				1
	인퓨전펌프				1
	시린지펌프				1
	앰부백				1
	집중치료부스(Intensive Care Unit)				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동물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1
	엑스레이 촬영기 (모형가능)				1
	고급/납장갑/납복 (set)				1
동물병원실무및실습	촬영 자				1
	컴퓨터 (chart program installed)				1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	FCI규격 어질리티장비 set				1

## 5.2. 연구시설 및 설비

### 5.2.1. 대학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5.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이 확보되어 있는가?
2. 개인연구실의 실내 설비(실내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전화, 전산망 등)가 적절한가?
3. 연구실 유지, 보수를 위한 연간 예산이 대학본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5-10. 교수연구실 등의 교수연구지원시설 확보 현황과 시설 설비 현황(조명, 방음, 환기, 난방시설 등)
- 5-11. 연구실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12. 연구실 유지 및 보수 관련 예산집행 자료

### 5.3. 시설 및 설비의 관리

5.3.1.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기본시설과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는가?
2. 기본시설과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3.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시설과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5-2. 시설·설비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활용 실적 자료

#### 비치자료

- 5-13. 교육 및 연구시설 설비 관리규정 또는 지침
- 5-14. 시설·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예산 집행 내역(최근2년)



5.3.2.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6.

### 평가사항

1.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가?
2.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3.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과 전담부서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 5-3. 학내 시설·설비 및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규정과 점검, 수리 및 개선 실적 자료
- 5-4.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대피 교육에 대한 근거자료

### 비치자료

- 5-15.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5-16. 위해요소 관리 규정 및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록 (용어)

- **영역:** 인증 평가 요소 중 가장 상위 개념의 5개 주제 단위를 의미함.
- **부문:** 각 5개 영역 바로 하위의 소주제 단위를 의미함.
- **항목:** 각 부문(소주제) 아래 최하위 세부 단위를 의미함.
- **현장실습지도교원:** 동물보건사 양성 대학 소속으로서 학생들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대학 전임교수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석사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을 의미함.
- **현장지도자:** 임상실습기관(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에 소속된 진료수의사(임상경력 2년 이상)로서 학생들의 임상현장 실습 지도를 위해 대학이 위촉한 수의사를 의미함.
-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의과대학내 동물병원을 지칭함.
- **전임교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인증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인정 제외대상 교원: 1)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2) 재임용 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입학정원:**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대학정보공시'의 제3항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공시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의미함.
- **편제정원:** '대학정보공시'의 제3항을 참고하여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년제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2배, 일반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4배의 수를 의미한다.

**부록 6.**  
**「동물보건사 양성기관(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최종안」**



[부록 6.]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안)

- 평생교육기관 -

2021. 03. 25.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대한수의사회)



## 개 요

영역	부문 (수)	항목 (수)
1. 조직 및 운영	3	6
2. 교육과정	3	8
3. 학생	3	8
4. 교수	3	7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3	6
계	15	35

## 1. 조직 및 운영

1. 조직 및 운영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37.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8.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1.2. 조직과 재정	39.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0.1.2.2. 평생교육기관은 교육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3. 전략과 계획	41.1.3.1.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42.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1. 조직 및 운영

평생교육기관은 동물보건사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동물보건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3.

####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목적과 목표는 평생교육기관의 비전과 동물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동물보건사의 핵심역량이 포함되어 있는가?
2. 교육목적과 목표는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의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는가?
3. 교육목적과 목표를 개정할 경우,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쳤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1-1. 교육목적과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평생교육기관 홈페이지, 평생교육기관 홍보 자료 등)
- 1-2. 개정할 경우, 관련 조직(위원회 등)의 활동과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의자료, 회의록 등 기타)

**1.1.2.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학생의 졸업역량을 설정하고 있어야 한다.**

44.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물보건사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를 명문화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사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설정(개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과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거쳤는가?
3. 동물보건사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평생교육기관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부록**

- 1-1. 평생교육기관에서 설정한 동물보건사교육 졸업역량(학습성과)

**비치자료**

- 1-3. 동물보건사 교육 학습성과(학생의 졸업역량)
- 1-4. 동물보건사 학습성과 설정을 위한 활동 자료(회의자료 등)
- 1-5.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대한 공지자료(평생교육기관 홈페이지, 평생교육기관 홍보 자료 등)

## 1.2. 조직과 재정

### 1.2.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보직자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5.

####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 예산편성과 집행, 기타 평생교육기관 운영 등에 학(과)장이 동물보건학 전공 관련 전문성 및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2. 평생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규정과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3.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 인력(직원 또는 행정조교)이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평생교육기관 재정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4. 학(과)장의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 부록

- 1-2. 평생교육기관 운영 규정
- 1-3.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의 조직도, 평생교육기관 위원회 위원 명단
- 1-4. 평생교육기관 보직교수와 행정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표, 학(과)장의 발령대장

#### 비치차료

- 1-6. 평생교육기관 인사 규정
- 1-7. 평생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한 평생교육기관의 정책결정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8. 평생교육기관 운영 지원 인력의 고용과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생교육기관 행정직원 또는 조교의 발령대장, 고용계약서, 급여지급대장 등)
- 1-9. 학(과)장의 임무와 권한이 명시된 규정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10. 학(과)장의 수의사 면허증 또는 최종 학위 증명서

#### 현장확인

1. 교수면담

1.2.2. 평생교육기관은 교육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평생교육기관 재학생 수 또는 등록금 변동에 비례하여 평생교육기관 예산을 적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2. 평생교육기관 예산 편성과 집행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3. 평생교육기관 예산과 실험실습비 집행률이 각각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가?
4.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부록

- 1-5. 평생교육기관 예산의 편성 내역(도표 작성)
- 1-6.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자료(도표 작성)

### 비치자료

- 1-11. 예산편성 및 심의 관련 자료(공문, 위원회 서류 등) (최근 2년)
- 1-12. 평생교육기관 예산의 집행 관련 결재 서류 등 근거자료(최근 2년)
- 1-13. 실험실습비 예산 및 결산 서류(최근 2년)
- 1-14. 실험실습비 운영규정
- 1-15. 실험실습비 관련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 개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확인

1. 교수 및 직원 면담

### 1.3. 전략과 계획

1.3.1.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목적과 목표, 평생교육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발전계획을 추진한 활동 내용과 실적이 있는가?
3. 발전계획과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 1-7. 평생교육기관 중·장기 발전계획서

#### 비치자료

- 1-16. 평생교육기관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규정, 위원회 회의록 등(최근 2년)
- 1-17. 평생교육기관 발전계획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년)
- 1-18. 발전계획의 실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자료와 개선에 반영한 자료(최근 2년)

**1.3.2.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과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46.

**평가사항**

1. 중·장기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가?
2.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3.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가?

**부록**

1-8. 중·장기 발전계획의 예산과 집행 자료

**비치자료**

1-19. 평생교육기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과정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산 및 집행실적 포함)(최근 2년)

## 2.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Ⅱ. 교육 과정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1.2. 평생교육기관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평생교육기관은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2. 평생교육기관은 전공교과목(이론, 실습)의 특성에 적정한 학생 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2.2.3. 평생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2.3 교육과정 개선	2.3.1.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는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실습 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2. 교육과정

동물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인증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이론 교육, 교내실습 및 현장실습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졸업이수 규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균형있고 적절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교양 및 전공과목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였는가?
2.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이 70학점 이상인가?
3. 학습성과는 교과목 또는 교과 외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가?

#### 부록

- 2.1.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년간 입학생에게 적용된 교육과정 편성표)

#### 비치자료

- 2-1.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규정
- 2-2. 학습성과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개정한 경우, 개정근거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2. 평생교육기관의 교과목 이수체계는 동물보건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동물보건사 교과과정 중 필수전공교과목의 이수학점이 현장실습교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40학점 이상인가?
2. 기초·예방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9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3. 임상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9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4. 복지분야 필수전공학점이 최소 10학점 이상 편성 및 운영하고 있는가?
5. 필수전공교과목의 학년별 편성 및 운영이 적절한가?

### 부록

- 2-2.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대한 학칙 또는 규정(부분 발췌)
- 2-3. 평생교육기관의 이수구분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표(최근 2개 학년도 입학생)
- 2-4. 전공기초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최근 2년 개설된 교과목)

### 비치자료

- 2-3.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 2-4.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 규정
- 2-5. 졸업생 전 학년 성적증명서(전산 확인 가능)

※ 필수전공교과목 및 최소이수학점

영역	교육내용	필수 교과목	최소 이수 학점
기초예방 분야 (3과목)	동물의 구조, 해부 및 기능 동물의 계통, 원인별 주요질병 동물위생, 인수공통전염병 및 공중보건	동물해부생리학(3)	9학점
		동물질병학(3)	
		동물공중보건학(3)	
임상 분야 (7과목)	동물내과간호 및 수의임상병리 동물간호 동물외과간호 및 수의영상진단 동물간호 동물응급간호, 전공용어/원무행정 동물용의약품관리	동물보건내과학(3)	19학점
		동물보건외과학(3)	
		동물보건임상병리학(3)	
		동물보건응급간호학(2)	
		동물보건영상학(2)	
		동물병원실무(3)	
		의약품관리학(3)	
복지 분야 (4과목)	동물보건관련 법령/동물윤리/복지 반려동물 총론 동물행동 및 행동교정 동물영양	동물보건복지및법규(2)	10학점
		반려동물학(2)	
		동물행동교정학(3)	
		동물보건영양학(3)	
현장실습	동물병원현장실습		2학점
<b>15과목</b>			<b>40학점</b>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2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학점	이론	실습	
1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3	1	2	평생교육기 관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동물공중보건학	3	3		
	복지	반려동물학	2	2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영양학	3	3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3	1	2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3	1	2	
<b>소계</b>			<b>19</b>	<b>15</b>	<b>4</b>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3	1	2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2	1	1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2	1	1	
<b>소계</b>			<b>19</b>	<b>7</b>	<b>12</b>	
동물병원현장실습			2	0	2	
<b>합계</b>			<b>40</b>	<b>22</b>	<b>18</b>	

□ 필수교육과정 학년/학기별 권장 편성(안) (4년제)

학년	구분	교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학점	이론	실습	
1	기초예방	동물보건영양학	3	3	0	평생교육기 관별 교원 책임시수 관리 권장
	복지	반려동물학	2	2	0	
2	기초예방	동물해부생리학 및 실습	3	1	2	
	기초예방	동물질병학	3	3	0	
	임상	의약품관리학 및 실습	3	1	2	
	복지	동물행동교정학 및 실습	3	1	2	
3	임상	동물보건내과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임상병리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외과학 및 실습	3	1	2	
	임상	동물보건영상학 및 실습	2	1	1	
4	임상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및 실습	2	1	1	
	임상	동물병원실무 및 실습	3	1	2	
	복지	동물공중보건학	3	3	0	
	복지	동물복지및법규	2	2	0	
동물병원현장실습			2	0	2	
<b>합계</b>			<b>40</b>	<b>22</b>	<b>18</b>	

##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평생교육기관은 필수전공교과목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성과에 근거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필수전공교과목별 학습목표와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성과를 설정하고 있는가?
2. 필수전공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도구 등 평가계획을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가?
3. 학생의 교과목별 학업성취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2-5. 전공이론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2개 교과목)

### 비치자료

- 2-6. 학습목표 및 성과, 평가방법 및 도구가 제시된 필수 전공교과목 강의계획서
- 2-7. 교과목별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 자료 및 분석결과 등

2.2.2. 평생교육기관은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이론, 실습 등)에 적절한 학생규모로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

### ■ 평가사항

1. 필수전공교과목의 특성에 따른 이론강의실과 실습실의 운영관리는 적절한가?
2. 필수전공이론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가 학기 평균 5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3. 전공실습교과목의 1개 분반 당 학생 수가 30인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가?

### ■ 부록

2-6. 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 ■ 비치차료

- 2-8. 이론 강의실 사용일지 및 분반별 출석부
- 2-9. 실습실 사용일지 및 분반별 출석부

2.2.3. 평생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실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공실습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현황이 필수전공 교과목 총 학점 대비 40% 이상인가?
2. 현장실습은 4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으로 편성되어있는가?
3. 실습지침서에 교과목별 학습성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성과 활용이 적절한가?
4. 교내실습의 교과목별 학습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목의 수업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 부록

- 2-7. 학생별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2-8. 현장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최근 2개 학기, 각 1개 교과목)

### 비치자료

- 2-10. 교육과정편성표 등(교내실습과 현장실습 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확인가능 자료)
- 2-11. 강의시간표
- 2-12. 주차별 실습계획서
- 2-13. 현장실습 교과목별 실습지침서(학생용, 지도자용 각 1부)
- 2-14. 현장실습 교과목별 실제 학생이 사용한 실습지침서 각 1부(최근 2개 학기)

### ※ 실습시수 편성필수 교과목

<b>이수필수 실습 교과목 (총 10과목, 18학점)</b>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3-1-2)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3-1-2)
	동물보건응급간호학및실습(2-1-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2-1-1)
	동물병원실무및실습(3-1-2)
	의약품관리학및실습(3-1-2)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3-1-2)
	동물병원현장실습(2-0-2)

2.2.4. 현장실습에 적합한 기관 또는 동물병원과 협약에 의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습이 이행되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기관은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평생교육기관 부속동물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평생교육기관 현장실습절차는 문서화되어 있고 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3. 현장실습과 관련된 양식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4. 현장실습 동물병원과의 실습 운영은 협약체계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현장실습 이수확인은 현장실습 협약상의 '현장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부록

2-9.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비치차료

- 2-15. 현장실습기관 협약서 및 대한수의사회 인증을 받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16. 현장실습운영규정
- 2-17. 동물보건사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 2-18. 학생이 실제 활용한 현장실습 지침서, 현장실습지도교원의 임상실습 지도일지등 현장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의 실습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최근 2개 학기)

## 2.3 교육과정 개선

2.3.1.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규정, 조직, 예산을 포함한 교육품질관리(CQI) 체계가 있는가?
1.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내외의 의견수렴 절차와 제도가 있는가?
2. 교과목의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CQI),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교육목표 달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평균 5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 부록

- 2-10.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자료 (최근 2년)
- 2-11.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자료

### 비치자료

- 2-19.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관련 규정
- 2-20.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직의 회의록 등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1. 교육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2.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23. 교육목표 달성평가 결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 강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 및 활용 자료
- 2-24. 국가시험 합격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3.2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평가가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에 대한 학생의 평가과정이 있는가?
2.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개선환류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부록**

2-12. 학생의 현장실습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자료

### **비치자료**

2-25. 실습 후 간담회 운영 및 결과보고서

### 3. 학생

3. 학생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3.1.2.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사회봉사,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과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8항목		

### 3. 학생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의 평생교육기관 적응, 효율적인 학습, 생활지도 및 졸업 후 진로를 위한 학생 지도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학생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여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임상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어 임상실습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체제 및 전문상담체제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의 학생 지도 체제는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있는가?
2. 교수별 정기적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학생지도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가 있는가?

##### 부록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지도교수제도 운영 현황

##### 비치자료

- 3-1. 학생 지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3-2. 교수별 상담 및 지도 학생 명단
- 3-3. 교수별 상담 및 지도 실적의 증빙자료(일지 또는 전산기록 등)

3.1.2.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지도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는가?
2.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3.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차원에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부록

3-3. 진로지원 프로그램 또는 교과목 현황

### 비치자료

- 3-4. 평생교육기관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교과목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결과보고서, 공문 등)
- 3-5. 평생교육기관 적응, 인성 함양, 직업 적응 프로그램 관련 예산 집행 자료

##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의 안전한 교내실습 운영을 위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실습 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2.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보험, 비상연락망 체계 등)
3. 학생의 교내실습을 위한 적절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 부록

3-4. 교내 실습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

### 비치자료

- 3-6. 교내실습을 위한 안전 관리 규정
- 3-7. 안전 관리 대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험, 비상연락망 등)
- 3-8. 교내실습 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 및 실시자료

3.2.2. 학생의 학내·외 활동(학술발표, 동아리 활동,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평생교육기관의 지도체제와 지원제도가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학술활동, 동아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있는가?
2. 학생의 학내·외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체제가 있는가?
3.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 **부록**

3-5. 학생 학내·외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 **비치자료**

- 3-9.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지도체제에 대한 자료
- 3-10. 학생의 학내·외 활동의 행·재정적 지원 관련 자료

###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장학금 및 기타 지원)제도와 수혜자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수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 등록금 총액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매년 10%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3. 장학생 선발 및 지급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3-6. 장학금 수혜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비치자료

- 3-11. 장학금 지급 규정
- 3-12. 장학생 선발,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수회의 자료, 공문 등, 최근 2년)
- 3-13. 장학금 지급 실적의 증빙자료(명단, 예산 집행 서류 등, 최근 2년)

3.3.2. 학생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평가사항

1. 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2. 여학생 휴게실이 있는가?
3. 모든 학생에게 개인용 사물함을 제공하고 있는가?
4.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5.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복지시설의 개선 노력과 실적이 있는가?

### ■ 부록

3-7. 학생 편의시설 현황(도표 작성)

### ■ 비치자료

- 3-14. 학생 편의시설 현황 자료
- 3-15. 신체적으로 불편한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자료
- 3-16.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3.3.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 배정기준이 공정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2. 공정한 기숙사 배정을 위한 기준이 있는가?
3. 타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우선 배정기준이 있는가?
4. 기숙사 배정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5. 기숙사의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있는가?

#### 부록

3-8. 학생의 기숙사 시설과 입실 현황(도표 작성)

#### 비치자료

- 3-17. 타 지역 학생의 기숙사 우선 배정 등의 배정기준 자료
- 3-18. 기숙사 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료
- 3-19. 동물보건사교육 관련 평생교육기관 학생의 기숙사 지원 및 선정 현황

### 3.3.4.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시설(보건진료실 또는 병원)과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가?
2.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예: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이 있는가?
3.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제가 있는가?
4.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 상담 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5. 학생의 학내외 학습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대책(예: 보험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6. 학생의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부록

- 3-9. 보건시설(양호실, 보건실) 및 인력 현황
- 3-10. 협약서(협약에 의하여 학생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 있는 경우)

#### 비치자료

- 3-20. 학생의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시설과 체제 및 운영에 관한 자료
- 3-21. 보험가입 증빙자료

## 4. 교수

교수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1.2. 평생교육기관은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 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7항목		

#### 4. 교수

평생교육기관은 동물보건학 분야 교육성과 달성을 위해, 전공 분야의 역량을 갖춘 교수를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교수는 평생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교육, 연구, 봉사 및 연수 활동 등 교수업적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4.1. 전임교수

4.1.1. 전임교수 선발, 직급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위한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 1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지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절차 및 평가방법이 있는가?
- 2 전임교수의 직급승진 심사제도가 있는가?
- 3 전임교수의 정년보장 심사제도가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 교원 인사규정(평생교육기관 규정, 평생교육기관 내규)
- 4-2. 전임교수 임용서류(학위, 경력, 직급 등 입증 자료)
- 4-3. 전임교수 임면관련 공문(최근 2년)

4.1.2. 평생교육기관은 전공 분야의 학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를 적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평가사항

1. 평생교육기관은 입학정원 30명 기준 수의사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수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가?
2. 필수전공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가?
3.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기관설립운영규정의 편제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5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부록

- 4-1. 전임교원 확보 현황 정보공시 사본(최근 2년)

### 비치자료

- 4-4. 전임교수의 수의사면허증 증빙자료
- 4-5. 전임교수의 학위 증빙자료 또는 해당분야 경력 증빙자료
- 4-6. 평생교육기관의 교과배당표

## 4.2. 현장실습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현장실습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력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현장실습지도교원과 현장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수의사면허 소지자인가?
2. 현장지도자는 진료수의사로 등록되고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있는가?
3. 현장실습지도를 위해 현장실습지도교원은 현장지도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가?

### 부록

4-2. 현장실습 배치표(최근 4개 학기)

### 비치자료

- 4-7. 현장실습 배치표
- 4-8. 현장실습지도교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9. 현장지도자의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속기관 공문 인정)
- 4-10. 실습지도 협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회의록 등 (최근 2개 학기)

### 4.3. 교수의 교육 및 활동지원

#### 4.3.1 전임교수의 필수전공교과목 강의 및 실습시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 1인의 필수전공교과목 주당 수업 시수는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규정이 있는가?
3. 전임교수의 교과목 시수는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 4-3. 학기별 개설 교과목 목록(최근 2년)
- 4-4. 학기별 강의시간표(최근 2년)

##### 비치자료

- 4-11. 평생교육기관의 강의시간표(최근 2년)
- 4-12. 평생교육기관의 교원 시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습 교과목 인정시수 포함)

4.3.2. 교수개발 및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연수 기회가 있고, 교수의 참여 정도가 적절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임상 연수, 교수 연수 등)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동물보건학 교육 관련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해 전임교원 지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가?
3. 교수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예산 집행 실적은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3. 전임교수의 동물보건관련 전문직 단체 활동 및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자료
- 4-14. 교수 역량개발 지원 관련 예·결산 자료



### 4.3.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교수의 국내 연수나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참가비,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가 갖추어져 있는가?
2. 교수의 해외 연수나 학회 참석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체제(참가비, 등록비, 항공료, 체제비 등)가 갖추어져 있는가?
3. 교수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 지원 집행 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5. 전임교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 지원 규정
- 4-16. 전임교수의 연수나 학회 등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 실적 증빙자료
- 4-17. 전임교수의 연수나 학회 등 교수개발 프로그램의 재정적 지원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예·결산 자료

#### 4.3.4. 전임교수의 업적평가를 타당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2. 전임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업적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가?
3. 전임교수의 전문직 활동 실적(논문, 특허, 저·역서 등)은 적절한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4-18. 교수 업적 평가 지침 또는 규정
- 4-19. 교수 업적 평가 운영 실적 증빙자료
- 4-20. 전임교수 연구논문, 특허, 저·역서 목록
- 4-21.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 자료

## 5. 교육시설 및 실습기자재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영역 인증기준		
영역	부문	평가항목
V.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평생교육기관은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5.1.2. 학생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1.3. 평생교육기관은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평생교육기관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5.3.2.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계 - 3부문 6항목		

## 5. 교육시설 및 실습 기자재

평생교육기관은 동물보건교육의 특성과 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학술자료와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동물보건사 양성 실무 교육에 적합한 현장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평생교육기관은 동물보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모집정원 대비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 공간이 학생 1인당 학생 1인 1.5m<sup>2</sup>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2. 교육기본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평생교육기관사무실 및 반려동물 훈련장)
3.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회의실, 자율학습실, 사물함, 휴게실 등)

#### 부록

5-1. 실습실 도면

#### 비치자료

- 5-1. 평생교육기관 관련 건축물대장 (강의실 목록 및 면적 포함)
- 5-2. 평생교육기관 교육기본시설 구분별 목록(건물명, 층, 호실, 면적 포함)

5.1.2.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에 동물보건사 관련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도서관에 동물보건학 전공 학생의 학업과 교수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가 확보되어 있는가?
2. 전산화된 학술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
3. 학습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된 실적이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5-3. 동물보건학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 목록 및 활용 실적 (도서구매 예산 집행자료 포함)
- 5-4. 학술정보서비스 관련 지침 및 안내자료 등
- 5-5. 학술정보서비스 시스템 (방문평가 시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5.1.3. 평생교육기관은 동물보건사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평가사항**

1. 모집정원 30명을 기준으로 필수 기자재가 100% 확보되어 있는가?
2.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지침에 따라 필수 기자재가 관리되고 있는가?
3.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록**

해당 없음

**비치자료**

- 5-6.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7. 실습기자재 보유 및 관리 목록 (최근2년)
- 5-8. 실습기자재 사용 일지 및 관리 대장 (최근2년)
- 5-9. 기자재 구매,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예·결산 자료 (최근2년)

※ 필수기자재 목록

필수 교과목	보유기자재	개수	위치	관리 상태	최소충족조건 (모집정원 30명 기준)
동물해부생리학및실습	개 골격 모델				3
	고양이 골격 모델				1
	분리형 장기모형 (개)				1
	분리형 장기모형 (고양이)				1
동물보건내과학및실습	청진기				30
	직장체온계				30
	검이경				1
	검안경				1
	간이혈당계				2
	네블라이저				1
	도플러혈압계				2
동물보건외과학및실습	수액대				6
	일반외과 수술기구(set)				6
	정형외과 수술기구(set)				1
	수술포(set)				6
	멸균기				1
	수술대				1
동물보건임상병리학및실습	자동혈구분석기(CBC)				1
	자동혈청화학분석기(Chemistry)				1
	현미경				6
	요비중계				6
	원심분리기				1
동물응급간호학및실습	응급키트				1
	인퓨전펌프				1
	시린지펌프				1
	앰부백				1
	집중치료부스(Intensive Care Unit)				1
	동물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1
동물보건영상학및실습	엑스레이 촬영기 (모형가능)				1
	고글/납장갑/납복 (set)				1
	촬영 자				1
동물병원실무및실습	컴퓨터 (chart program installed)				1
동물행동교정학및실습	FCI규격 어질리티장비 set				1

## 5.2. 연구시설 및 설비

### 5.2.1. 평생교육기관은 전임교수 연구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사항

1. 전임교수의 개인연구실이 확보되어 있는가?
2. 개인연구실의 실내 설비(실내조명, 냉난방, 방음, 환기, 채광, 전화, 전산망 등)가 적절한가?
3. 연구실 유지, 보수를 위한 연간 예산이 평생교육기관본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가?

#### 부록

해당 없음

#### 비치자료

- 5-10. 교수연구실 등의 교수연구지원시설 확보 현황과 시설 설비 현황(조명, 방음, 환기, 난방시설 등)
- 5-11. 연구실 관리 규정 또는 지침
- 5-12. 연구실 유지 및 보수 관련 예산집행 자료



### 5.3. 시설 및 설비의 관리

5.3.1.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 평가사항

1. 기본시설과 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는가?
2. 기본시설과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3.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시설과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5-2. 시설·설비 사용신청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활용 실적 자료

#### 비치자료

- 5-13. 교육 및 연구시설 설비 관리규정 또는 지침
- 5-14. 시설·설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예산 집행 내역(최근2년)

5.3.2.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7.

### 평가사항

1.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등의 활용에 있어서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가?
2.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3. 연구실과 실험실습실의 위해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과 전담부서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부록

- 5-3. 학내 시설·설비 및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규정과 점검, 수리 및 개선 실적 자료
- 5-4.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대응 교육 및 대피 교육에 대한 근거자료

### 비치자료

- 5-15. 강의실, 실험·실습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 5-16. 위해요소 관리 규정 및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록 (용어)

- **영역:** 인증 평가 요소 중 가장 상위 개념의 5개 주제 단위를 의미함.
- **부문:** 각 5개 영역 바로 하위의 소주제 단위를 의미함.
- **항목:** 각 부문(소주제) 아래 최하위 세부 단위를 의미함.
- **현장실습지도교원:** 동물보건사 양성 평생교육기관 소속으로서 학생들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전임교수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석사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을 의미함.
- **현장지도자:** 임상실습기관(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동물병원 또는 수의과평생교육기관 부속동물병원)에 소속된 진료수의사(임상경력 2년 이상)로서 학생들의 임상현장 실습 지도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이 위촉한 수의사를 의미함.
- **수의과평생교육기관 부속동물병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의과평생교육기관내 동물병원을 지칭함.
- **전임교원:** 평생교육기관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평생교육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인증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평생교육기관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평생교육기관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인정 제외대상 교원: 1)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2) 재임용 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입학정원:**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정보공시'의 제3항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에 공시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의미함.
- **편제정원:** '평생교육기관정보공시'의 제3항을 참고하여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년제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입학정원의 2배, 일반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입학정원의 4배의 수를 의미한다.



## **부록 7.**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기준 점수 계량화 방안 최종안」**



[부록 7.]

##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 적용방법(안)

2021년 3월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개발위원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대한수의사회)





# 1. 인증 평가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표 적용방법

## 인증·평가

-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동물보건사 인증평가위원회(\*가칭)에서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 적합의 평가를 받은 자체평가보고서만을 평가대상 자료로 인정한다.
- 평가단은 인증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하여 평가위원 인력 pool 내에서 평가단장을 포함한 5인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하며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수행한다.
- 평가단은 평가위원별 각 영역을 분담하여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평정표(항목별 점수표)를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평가지 유의사항

- 항목별 평가사항들을 판정할 때 평가사항 중 첫 번째 평가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부적격)하고 나머지 평가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항목별 평가와 점수

- 항목별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평가결과	점수
우수	3
적격	2
미흡	1
부적격	0

## 판정 종류와 판정 기준 및 요건

판정 종류	판정 기준 및 요건
완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기준 5개 영역 모두 적격(2점) 이상인 경우</li> </ul>
단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1점)인 경우</li> <li>* 단, 2년 인증 후 차기 인증평가에서도 연속해서 5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에는 인증불가로 최종 판정함</li> </ul>
인증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기준 5개 영역의 각 부문 내 어떤 항목에서도 부적격(0점) 이 1개 이상인 경우</li> <li>인증기준 전체 항목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항목이 전체 항목의 60% 이상인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인증불가로 판정함</li> <li>인증 불가 판정시 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음</li> </ul>
인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평가 완료 후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물보건사 인증판정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li> </ul>

## 인증 유형과 인증기간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기준은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므로 완전 인증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고, 단축인증 및 인증불가와 재인증 그리고 인증취소 요건은 아래와 같다.

인증 유형	인증 기간
완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 (인증일로부터 만 3년 간 인증 유효)</li> </ul>
단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 (인증일로부터 만 2년 간 인증 유효)</li> </ul>
인증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대상기관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인증불가로 판정하며, 인증 불가 판정 후 판정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li> </ul>

## 2. 항목별 평가 계량화 방법

표1.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배점

평가	배점	항목별 평가 기준	비고
우수	3	평가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항목 우수인 경우 105점 만점
적격	2	평가사항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항목 적격인 경우 총 70점
미흡	1	평가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우	전항목 미흡인 경우 총 35점
부적격	0	평가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경우	

표2 각 항목의 평가사항 개수에 따른 배점 (3점 만점)

평가사항 개수	평가사항 별 배점
3	각 평가사항 당 1점
4	1, 2번째 평가사항은 각 1점, 3, 4번째 평가사항은 각 0.5점
5	1번째 평가사항은 1점, 나머지 4개의 평가사항은 각 0.5점
6	각 평가사항 당 0.5점

표3. 인증유형 별 판정기준

인증유형	판정 기준 (만점 105점)
완전인증 (3년)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70점 이상 2. 5개 영역 모두 영역별 평가점수가 적격 이상
단축인증 (2년)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총점 35점 이상 2.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평가 점수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인증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총점 34점 이하 2. 총점에 관계없이 부적격(0점) 항목이 1개 이상 3. 총점에 관계없이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평가 점수가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표4. 동물보건사 인증기준 항목별 평가 계량화 마련 위한 근거 계산표

영역	부분	항목	평가사항 개수	우수(전항인 수만점접수 경우)	적격(전항인 적접수 경우)	미흡(전항인 수만점접수 경우)
1. 조직 및 운영	1.1. 교육목적과 목표	1.1.1.	3	3	2	1
		1.1.2.	3	3	2	1
	1.2. 조직과 재정	1.2.1.	4	3	2	1
		1.2.2.	4	3	2	1
	1.3. 전략과 계획	1.3.1.	3	3	2	1
		1.3.2.	3	3	2	1
		소계	20	18	12	6
2. 교육	2.1. 교육과정 구성과 체계	2.1.1.	3	3	2	1
		2.1.2.	5	3	2	1
	2.2.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	2.2.1.	3	3	2	1
		2.2.2.	3	3	2	1
		2.2.3.	4	3	2	1
		2.2.4.	5	3	2	1
	2.3 교육과정 개선	2.3.1.	4	3	2	1
		2.3.2.	3	3	2	1
	소계	30	24	16	8	
3. 학생	3.1. 학생지도 체제와 운영	3.1.1.	3	3	2	1
		3.1.2.	3	3	2	1
	3.2. 학생활동과 지원	3.2.1.	4	3	2	1
		3.2.2.	3	3	2	1
	3.3. 학생복지제도 및 시설	3.3.1.	3	3	2	1
		3.3.2.	5	3	2	1
		3.3.3.	5	3	2	1
		3.3.4.	6	3	2	1
	소계	32	24	16	8	
4. 교수	4.1. 전임교수	4.1.1.	3	3	2	1
		4.1.2.	3	3	2	1
	4.2. 현장실습 지도교원 및 현장지도자	4.2.1.	3	3	2	1
	4.3. 교수의 교육및 활동지원	4.3.1.	3	3	2	1
		4.3.2.	3	3	2	1
		4.3.3.	3	3	2	1
		4.3.4.	3	3	2	1
	소계	21	21	14	7	
5. 교육 시설 및 실습 기자 재	5.1. 교육시설 및 설비	5.1.1.	3	3	2	1
		5.1.2.	3	3	2	1
		5.1.3.	3	3	2	1
	5.2. 연구시설과 설비	5.2.1.	3	3	2	1
	5.3. 시설설비의 관리	5.3.1.	3	3	2	1
		5.3.2.	3	3	2	1
		소계	18	18	12	6
	총계	121	105	70	35	

## **부록 8.**

### **「동물보건사제도와 유사한 해외 제도」**

- 8.1. 일본 농림수산성 동물간호사 커리큘럼
- 8.2. RCVS Day One skills list(2016)
- 8.3. ACOVENE veterinary Nurse in Europe
- 8.4. OIE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 8.5. AVMA veterinary technician



## [부록 8.1.]

第5回愛玩動物看護師カリキュラム等検討会（令和3年3月22日）配布資料：農林... Page 1 of 1

### 農林水産省

会報・報道・広報	政策情報	統計情報	申請・お問い合わせ	農林水産省について
----------	------	------	-----------	-----------

ホーム > 消費・安全 > 愛玩動物看護師 > 愛玩動物看護師カリキュラム等検討会 > 第5回愛玩動物看護師カリキュラム等検討会(令和3年3月22日)配布資料

#### 第5回愛玩動物看護師カリキュラム等検討会(令和3年3月22日)配布資料

議事次第(PDF:130KB)

資料:愛玩動物看護師カリキュラム等検討会報告書(案)(PDF:72KB)

参考資料1:愛玩動物看護師の養成に必要な科目について(認定動物看護師コアカリキュラムとの比較を含む)(第3回ワーキングチーム資料を一部修正)(PDF:12KB)

参考資料2:愛玩動物看護師国家試験対策アンケート集計結果(横田構成員提出資料)(PDF:1,629KB)

お問合せ先

消費・安全局畜水産安全管理課

担当者:小動物獣医課  
代表:03-3502-8111(内線4530)  
ダイヤルイン:03-3501-4094  
FAX番号:03-3502-8275

PDF形式のファイルをご覧いただく場合には、Adobe Readerが必要です。  
Adobe Readerをお持ちでない方は、バナーのリンク先からダウンロードしてください。



公式SNS



イベント情報

関連リンク集

農林水産省  
トップページへ

農林水産省

住所:千100-8950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1-2-1  
電話:03-3502-8111(代表)庁舎最上へのお電話について  
法人番号:5000012060001

ご意見お問い合わせ

アクセス地図

サイトマップ プライバシーポリシー リンクについて/著作権 免責事項

Copyright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報告書（案）

令和3年3月〇日

愛玩動物看護師カリキュラム等検討会



[3] 大学及び養成所において履修すべき科目

<b>1. 基礎動物学</b> (360 時間)	<b>⑤動物臨床検査学</b> (30 時間)
①生命倫理・動物福祉 (30 時間)	<b>⑥動物医療コミュニケーション</b> (30 時間)
②動物形態機能学 (120 時間)	
③動物繁殖学 (30 時間)	
④動物行動学 (30 時間)	<b>4. 愛護・適正飼養学</b> (210 時間)
⑤動物栄養学 (60 時間)	①愛玩動物学 (60 時間)
⑥比較動物学 (60 時間)	②人と動物の関係学 (30 時間)
⑦動物看護関連法規 (15 時間)	③適正飼養指導論 (60 時間)
⑧動物愛護・適正飼養関連法規 (15 時間)	④動物生活環境学 (30 時間)
	⑤ペット関連産業概論 (30 時間)
<b>2. 基礎動物看護学</b> (270 時間)	<b>5. 実習</b> (600 時間)
①動物看護学概論 (30 時間)	①動物形態機能学実習 (30 時間)
②動物病理学 (30 時間)	②動物内科看護学実習 (120 時間)
③動物薬理学 (60 時間)	③動物臨床検査学実習 (60 時間)
④動物感染症学 (90 時間)	④動物外科看護学実習 (90 時間)
⑤公衆衛生学 (60 時間)	⑤動物臨床看護学実習 (60 時間)
<b>3. 臨床動物看護学</b> (360 時間)	⑥動物愛護・適正飼養実習 (60 時間)
①動物内科看護学 (90 時間)	⑦動物看護総合実習 (180 時間)
②動物外科看護学 (60 時間)	
③動物臨床看護学総論 (30 時間)	
④動物臨床看護学各論 (120 時間)	
	以上 計 1,800 時間
	※ 示した時間数は、養成所において実施する際の授業時間数である。

## [부록 8.2.]

### RCVS Day One Skills for Veterinary Nurses

#### Introduction

- a. Licence to practise qualifications leading to entry onto the Veterinary Nurse Register must articulate with the RCVS Day One Skills for veterinary nurses and be specified, recorded and assessed in a format that is readily auditable and accessible to learners.
- b. The Day One Skills list is a regulatory benchmark of essential clinical skills, developed and reviewed by the RCVS, based on the RCVS Day One Competences for Veterinary Nursing. The skills list is embedded in an electronic nursing progress log (the NPL) which has been designed to support a process of clinical mentorship and learning in addition to recording competence achievement. Awarding institutions may use the NPL or develop their own recording systems.
- c. There are Day One Skills for Veterinary Nursing in relation to the care of either horses (or other equidae) or small animals, which should include dogs, cats and exotic species, or a combination of the three.
- d. The RCV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sets out veterinary nurses'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Where applicable the RCVS Day One Skills for Veterinary Nursing has been referenced to th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for Veterinary Nurses* and the relevant supporting guidance which should be referred to, by student veterinary nurses, when completing the skills.

### RCVS Day One Skills for Veterinary Nursing Small Animal

#### Section 1 Legislation affecting practice

##### Relevant day one competences

3. Demonstrate knowledge of the organisation and legislation related to a veterinary business.
4. Promote, monitor and maintain health and safety in the veterinary setting; demonstrate knowledge of systems of quality assurance; apply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to their practice
21. Recognise suspicious signs of possible notifiable, reportable and zoonotic diseases and take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observing the appropriate health and safety recommendations.

	Skill	Guidance
1.	Comply with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and local risk factors	Comply with legislative requirements

- |    |  |  |
|----|--|--|
| 2. | Follow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nd manufacturer guidelines when using equipment and materials              |  |
| 3. | Take appropriate action and report injury to self or others  |  |
| 4. | Carry out a risk assessment for one area of the practice and instigate appropriate action                        |  |
| 5. |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reporting notifiable diseases and reportable diseases and injuries under RIDDOR | Professional discussion in relation to notifiable diseases and reporting is an acceptable assessment method for this skill |

**Section 2 Communication**  
**Relevant day one competences**

- 5.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clients, the public, professional colleagues and responsible authorities, using language appropriate to the audience concerned
- 6. Prepare accurate clinical and client records, and laboratory reports when necessary, in a form satisfactory to colleagues and understandable by the public
- 7. Work effectively as a member of a multi-disciplinary team in the delivery of services
- 8. Understand the economic and emotional context in which the veterinary nurse operates
- 9. Be able to review and evaluate literature and presentations critically
- 10. Understand and apply principles of clinical governance, and practise evidence-based veterinary nursing
- 11. Demonstrate ability to cope with incomplete information, deal with contingencies, and adapt to change
- 19. Communicate clearly and collaborate with referral and diagnostic services, ensuring they receive an appropriate history from the veterinary surgeon.
- 31. Understand the appropriate need for euthanasia; sensitively support the owner and others with due regard for health and safety of those present; advise on disposal of the carcass
- 32. Advise clients on programmes of preventative medicine appropriate to species

Skill	Guidance
1. Communicate effectively using a variety of different methods <i>see supporting guidance:</i> 5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ional colleagues	Communicate with clients, work colleagues, other veterinary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Communication models should be followed where applicable
2. Create accurate and legible written communications according to practice policy	Records to include: patient records and reports, laboratory reports, admission and consent forms, client home care plans and instructions
3. Access and store client and practice records according to practice policy and data protection laws <i>see supporting guidance:</i> 14 client confidentiality	
4. Admit patients <i>see supporting guidance:</i> 1 referrals and second opinions 9 practice information, fees and insurance 11 communication and consent	Obtain written and verbal informed consent; Respond appropriately to economic status of clients to include insurance and charity referrals
5. Conduct effective nursing consultations <i>See supporting guidance:</i> 18 delegation to veterinary nurses	History taking and appropriate examination; Identifying patients for referral to a veterinary surgeon; Application of treatments; Programmes of preventative medicine; Implant a microchip
6. Provide discharge information and guidance to owners	Advise clients on safe and correct routes of administration and potential side effects; Demonstrate to clients safe techniques for administering medication; Advise clients on the storage and disposal of medication; Wound care advice; Bandage advice
7. Complete appropriate paperwork for referral and diagnostic services <i>See supporting guidance:</i> 13 clinical and client records	To include laboratory samples, clinical histories and hereditary tests
This links to Laboratory Skill 8	

8.	Practise evidence-based nursing	Appraise literature; Discuss findings with practice team
9.	Collaborate with inter-professional colleagues to improve professional practice and relationships see supporting guidance: 5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ional colleagues 17 veterinary teams and leaders	Consult the veterinary team in the event of unexpected medical or surgical complications, serious complaint, accident or anaesthetic death; Consider mitigating circumstances; Ensure effective protocols are in place; Communicate changes to the practice team
10.	Communicate effectively expressing appropriate empathy and sympathy See supporting guidance: 8 Euthanasia of animals	Prepare the owner for loss; Support the owner through the euthanasia process; Provide follow-up support for a bereaved owner; Maintain and adapt professional approach to the circumstances

**Section 3 Handling and restraint**  
**Relevant day one competences**

14. Handle and restrain animal patients safely and humanely, and instruct others in helping the veterinary surgeon perform these techniques.

	Skill	Guidance
1.	Evaluate behavio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hen approaching and handling animals	Recognition of and minimising fear and distress
2.	Transport animals using approved manual handling and lifting procedures	
3.	Select and wear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4.	Demonstrate techniques for approaching and catching animals	
5.	Lead and move animals using the most appropriate equipment for the species	

- |    |  |  |
|----|--|--|
| 6. | Use appropriate restraint methods suitable for the patient and situation with due consideration for animal welfare | Maintain patients emotional homeostasis and wellbeing; Recognise signs of distress and act accordingly to minimise this; Restrain for clinical examination, sample collection, administration of medicines and introduction of an appropriate airway management device |
|----|--|--|

**Section 4 Nursing care**  
**Relevant day one competences**

- 15. Deliver nursing care in accordance with best practice and due regard to animal welfare
- 16. Develop appropriate care plans and administer care in the interests of the patients and with regard to the resources available
- 17. Administer emergency first aid and assist with the provision of emergency treatment to animals.
- 24. Be aware of suspected adverse reactions and alert the veterinary surgeon
- 30. Assess pain and alert the veterinary surgeon

Skill	Guidance	
1.	Use an appropriate model of care to deliver the nursing process and create care plans for a range of disorders and diseases	Interpret nursing care plans and carry out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s
2.	Carry out a nursing assessment ascer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normal routine	Food and fluid intake; Urination and defecation; Behaviour (response to pain, strangers, commands etc); Mobility; Sleep and rest; Maintain your own hygiene levels
3.	Perform a clinical examination and record findings	To include temperature, pulse, respiration, weight and capillary refill times/mucous membranes
4.	Provide husbandry to animals within a veterinary setting; accommodation, nutrition and excretions	Consider age, species, condition, demeanour and enrichment. Undertake a nutritional assessment according to WSAVA guidelines. Calculate food

requirements based on disease and life stage/lifestyle, Manage assisted feeding to include hand feeding, oral hydration and managing and maintaining assisted feeding tubes

- |     |   |   |
|-----|---|---|
| 5.  | Groom and bathe patients according to their needs   |   |
| 6.  | Assess, monitor, manage and report the status of wounds   |   |
| 7.  | Apply dressings appropriate to type of wound  |   |
| 8.  | Apply bandages appropriate to species and condition   |   |
| 9.  | Administer medicines prescribed by the veterinary surgeon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from the manufacturer | To include oral, topical, subcutaneous, intramuscular and intravenous   |
| 10. | Monitor for adverse medication reactions and alert veterinary surgeon   |   |
| 11. | Provide fluid therapy to in-patients  | Select appropriate fluids according to veterinary surgeon instructions; Select and prepare administration equipment; Place intravenous catheters into appropriate veins; Intravenous catheter management; Calculate amount and rate of fluid to administer; Observe and monitor patients receiving fluids |
| 12. | Assess pain and alert the veterinary surgeon  | Score and evaluate pain using a validated system; intensity of pain and associated anxiety and behaviour  |
| 13. | Perform basic physical therapy techniques to aid mobilisation   | To include passive movement and active exercise   |
| 14. | Administer first aid for a range of situations within the limits of law and the expertise of the student        |   |
| 15. | Assist with a range of emergency care techniques  |   |

**Section 5 Laboratory techniques**

**Relevant day one competences**

18. Collect, preserve and transport samples, prepare appropriate diagnostic tests,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the test results and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spurious results

	Skill	Guidance
1.	Discuss with the veterinary surgeon and prepare for an appropriate sampling strategy	Strategy to includ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clipping and preparing sample site, preparation of patient and equipment; calibration of equipment. Strategies prepared for: blood, urine, faeces, skin/hair and tissue biopsies
2.	Take appropriate samples	Samples to include: blood, urine, faeces, skin, hair pluck, bacterial swabs.
3.	Carry out haematological analysis	To include: biochemistry, haematology, packed cell volume, total solids and smear
4.	Carry out urinalysis	To include: specific gravity, sediment analysis
5.	Carry out faecal analysis.	May include; gross visual analysis; microscopic analysis; quantitative examination; Baermann technique or commercial test kits
6.	Carry out skin and hair analysis	To include: hair pluck, tape strips and coat brushings
7.	Use a microscope	To include: low magnification, high magnification and oil immersion. Record Vernier Scale readings
8.	Prepare samples for external analysis  (this skill links to communication skill 7)	To include: accurate completion of documentation, correct packaging and labelling, correct preservation and storage.
9.	Record laboratory test results and communicate accurately to the appropriate clinician	



**Section 6 Diagnostic imaging**

**Relevant day one competences**

20. Prepare and conduct diagnostic imaging and other techniques carrying out the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good health and safety and current regulations.

	Skill	Guidance
1.	Prepare and use radiography equipment to produce a diagnostic image	
2.	Use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and radiation monitoring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practice local rules	
3.	Position a patient to obtain a diagnostic image of the area of interest	A variety of species and positions would be expected
4.	Process images according to practice procedure	
5.	Record exposures and results of images according to practice procedure	Appraise the quality of the image
6.	Prepare and support animals during endoscopy investigation	
7.	Prepare and support animals during ultrasound investigation	

**Section 7 Dispensing**

**Relevant day one competences**

22. Access the appropriate sources of data on licensed medicines.

23. Dispense medicines correctly and responsibly in accordance with veterinary surgeon direction, legislation and latest guidance.

	Skill	Guidance
1.	Ensure safe handling and management of pharmaceuticals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Store, handle and dispose of medicines in line with legislative guidelines and specific requirements found in the

		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SPC) and with reference to their drug category. To include; Controlled drugs and cytotoxic/ cytostatic/certain hormonal medicines which require special handling and disposal
2.	Interpret prescriptions and prepare medicines for dispensing.	Calculate drug dosages and confirm with colleague; Package and label in accordance with legal requirements
3.	Maintain appropriate records	Controlled drugs (CDs) Medicines records

**Section 8 Infection control**  
**Relevant day one competences**

21. Recognise suspicious signs of possible notifiable, reportable and zoonotic diseases and take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observing the appropriate health and safety recommendations

25. Apply principles of bio-security correctly, including sterilisation of equipment and disinfection of clothing.

	Skill	Guidance
1.	Recognise clinical signs of common notifiable and zoonotic diseases and undertake strategies to prevent spread and infection	See also section 1:part 5
2.	Formulate and implement an appropriate infection control strategy according to practice protocol	Constitute appropriate cleaning and disinfectant solutions; Prepare, clean and maintain patient accommodation that maximises the welfare of hospitalised patients to include isolation accommodation; Prepare, clean and maintain examination rooms, preparation area and operating theatre to include periodic deep clean and after infected cases
3.	Dispose of hazardous and non-hazardous waste safely and correctly according to current legislation	

- |    |  |  |
|----|--|--|
| 4. | Ensure appropriate hygiene skills are followed before and after handling animals and equipment | Comply with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hand washing method;                                 |
| 5. | Carry out effective barrier nursing  | Use and dispose of PPE taking into account accommodation, PPE, equipment and patient condition |

**Section 9 Theatre practice**  
**Relevant day one competences**

26. Prepare the environment, equipment and patient for aseptic surgery

27. Assist the veterinary surgeon as a scrubbed nurse to perform surgical procedures on patients

Skill	Guidance
1. Check and clean surgical instruments	Identify common surgical instruments; Identify and report damage to equipment and instruments
2. Prepare package and monitor the sterilisation of instruments and materials	
3. Prepare the theatre for use based on equipment and procedure	
4. Position patients appropriately on the operating table in accordance with the planned procedure taking into account patient condition	
5. Prepare the surgical site appropriately for the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veterinary surgeon's preference	
6. Assist as circulating nurse	Open and pass sterile materials direct to scrubbed personnel; Prepare ancillary and powered equipment
7. Prepare hands and arms using appropriate method	
8. Prepare for surgical assistance wearing appropriate attire	Don gown and gloves (closed gloving method) in an aseptic manner to assist with surgery

- |     |   |                    |
|-----|---|--------------------|
| 9.  | Put on surgical gloves (open gloving method) in an aseptic manner to assist with sterile procedures | Maintain sterility |
| 10. | Maintain sterility of self and others during procedures   |                    |
| 11. | Assist with draping patient maintaining sterility   |                    |
| 12. | Monitor and record materials during surgery   |                    |
| 13. | Handle and pass instruments and equipment aseptically during surgery                                |                    |

**Section 10 Anaesthesia**  
**Relevant day one competences**

28. Assist the veterinary surgeon by preparing patients, equipment and materials for anaesthetic procedures

29. Assist in administering and maintaining anaesthesia to patients

Skill	Guidance
1. Assess the patient's anaesthetic risks	To include ASA guidelines, behaviour and temperament
2. Prepare for anaesthesia	Check and prepare the anaesthetic machine in accordance with practice protocol; Select and prepare breathing system/circuit and pollution control system in accordance with practice protocol; Select and prepare monitoring equipment according to the patient's condition; Prepare materials and equipment required for induction of anaesthesia to include pharmaceutical agents (according to veterinary surgeon direction) and appropriate airway management device
3. Prepare patients for anaesthesia	Administer prescribed premedicants and assess the patient's response; Introduce airway management device (check position and secure airway management

		device)
4.	<p>Maintain and monitor the patient during the anaesthetic process</p> <p>See supporting guidance:  <a href="#">18. delegation to veterinary nurses</a></p>	<p>Measure temperature, heart rate, central and peripheral pulse, respiratory rate; Evaluate depth of anaesthesia; Monitor equipment (systems/circuits and tube, gases and volatile agents, patient monitors); Interpret and report observations to the directing veterinary surgeon (Inconsistencies, patient monitors); Calculate and administer inhalation anaesthesia under veterinary direction (Change the depth or level of inhalation anaesthesia under veterinary direction)</p>
5.	Complete anaesthetic monitoring records	
6.	Supervise recovery from anaesthesia	<p>Disconnect patients from anaesthetic equipment and materials; Position patients for recovery; Remove airway management device at appropriate stage of recovery; Maintain accurate recovery records; Communicate post operative and/or anaesthetic recovery progress to the supervising veterinary surgeon</p>

## [부록 8.3.]

About – Acovene

Page 1 of 2

Have any questions? ☎ +44 020 7222 2001

Accreditation Committee for Veterinary Nurse Education



[Home](#) [About](#) [Apply](#) [Fees](#) [Programs](#) [News](#) [Contact](#)

# Accreditation Committee for Veterinary Nurse Education

[Join us today](#)

**ACOVENE is a voluntary  
organisation founded in 2007 to  
accredit veterinary nurse education  
programmes in the EU.**



**We have currently  
over 70 accredited  
Programs**

**Veterinary nurses are increasingly significant  
members of the veterinary team in European  
countries.**

Whilst every country has its established systems for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a more standardised approach assists registration bodies and veterinary employers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qualified veterinary nurses between EU member states.



ACOVENE accreditation is voluntary and provides accredited schools with a number of significant benefits.

<https://www.acovene.eu/about/>

2021-04-19

From 7 european countries

[See Programs](#)

### downloads document

The standards for delivery of education programmes can be [found here](#)

The standards for curriculum content can be [found here](#)

## Benefits for veterinary nurses.

Veterinary nurses who graduate from an ACOVENE-accredited programme have attained a known minimum standard of knowledge and skills.

Their programme has been subject to expert visitation and ongoing monitoring by the Board, which is recognised and endorsed by the Federation of Companion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s. This means they have highly employable skills within European veterinary practice, providing opportunities to work in many member states. Veterinary nursing is a regulated profession in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chievement of an ACOVENE-accredited programme is recognised by most registration bodies, thus speeding the process of professional registration where this is required.

## Benefits for schools of veterinary nursing.

Accreditation by ACOVENE provides an assurance of quality, international parity and recognition for a veterinary nursing programme.

This status is of value to programme graduates, whose knowledge and skills are recognised by veterinary employers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process of accreditation is supportive and helps to improve programme organisation, delivery and quality assurance from the outset. ACOVENE provides schools with guidance and the opportunity to network with other accredited programmes on an ongoing basis.

## About us



The Accreditation Committee for Veterinary Nurse Education is a voluntary organisation founded in 2007 to accredit veterinary nurse education programmes in the EU.

## Applying for accreditation

Application for ACOVENE accreditation involves three stages:

- [Initial notification of intent \(click here\)](#)
- [Full application and submission of supporting evidence](#)
- [School visitation](#)

## Contact centre

C/o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Belgravia House 62-64 Horseferry Road  
London SW1P 2AF

Contact us: +44 020 722 22 001

Write us: [info@acovene.org](mailto:info@acovene.org)



Have any questions? ☎ +44 020 7222 2001

Accreditation Committee for Veterinary Nurse Education


[Home](#)   [About](#)   [Apply](#)   [Fees](#)   [Programs](#)   [News](#)   [Contact](#)

## Applying for accreditation

[Join us today](#)

Application for  
ACOVENE  
accreditation  
involves three  
stages:



### Initial notification of intent

[Click here](#)


### Full application and submission of supporting evidence

[Click here](#)


### School visitation

[Click here](#)

### Initial notification of intent

If your school is interested in achieving accreditation, the Board encourages you to make contact with ACOVENE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he Notification stage is a planning phase, enabling both your school and ACOVENE to prepare for the accreditation process. You will be asked to complete a simple form, setting out a brief outline of your programme and contact details for your school. At this stage ACOVENE will establish contact with you and will discuss a suitable timescale for your full accreditation application and visitation. If, at this stage, it appears that you may need some development support, associate membership of ACOVENE may be offered to you.

### School visitation

A team of visitors, normally chaired by a member of the Board, will evaluate your programme over a two-day site visit to your school premises. The visitation team will, wherever possible, include a visitor from your own country. During the visit, the team will:

- Meet teaching staff from the veterinary nursing programme
- Tour the school and its relevant facilities
- Meet students
- Meet senior educational staff, including the Principal
- Visit outlying teaching facilities (such as a farm or veterinary practice used for teaching) where relevant
- Review records and documentation relevant to the programme

<https://www.acovene.eu/apply/>

2021-04-19



Associate membership is offered to developing schools for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alongside options for appropriate support.

After the visitation the team will provide a report to ACOVENE, along with a recommended accreditation status and details of any conditions to be applied. A detailed report will be sent to the school Principal once approved by the Board.

date so that visitors may review it and have an opportunity to ask you for clarification on any aspect of your application before planning their visitation agenda.

## Applying for accreditation

Full name:

Date of birth:

Phone number:

Email address:

Extra comments:

School Name:

Department:

You're willing to apply in:

Accept all terms of conditions:



### About us



The Accreditation Committee for Veterinary Nurse Education is a voluntary organisation founded in 2007 to accredit veterinary nurse education programmes in the EU.

### Applying for accreditation

Application for ACOVENE accreditation involves three stages:

- Initial notification of intent ([click here](#))
- Full application and submission of supporting evidence
- School visitation

### Contact centre

C/o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Belgravia House 62-64 Horseferry Road  
London SW1P 2AF

Contact us: +44 020 722 22 001  
Write us: [info@acovene.org](mailto:info@acoven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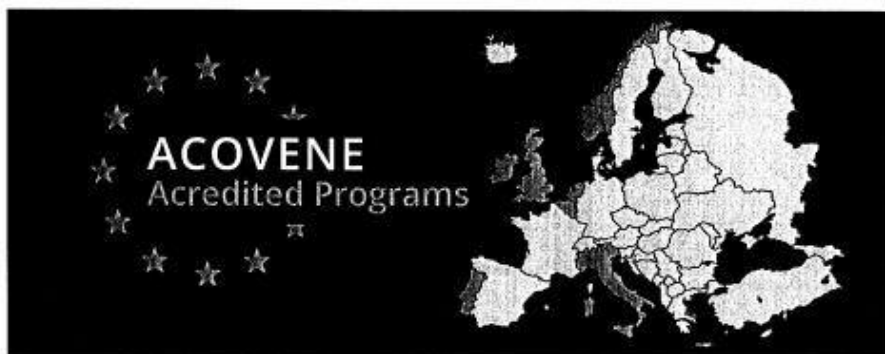
© 2021 Acovene. All Rights Reserved. Muffin group

Have any questions? ☎ +44 020 7222 2001

Accreditation Committee for Veterinary Nurse Education



Home About Apply Fees Programs News Contact



## We have currently over 70 accredited Programs from European Countries

### Belgium

- Thomas More Kempen, Geel

### Italy

- Abives, Rome

### Norway

- Norwegian School for Veterinary Science, Oslo

### Portugal

- Agrarian Superior School, Polytechnic Institute of Viseu, Viseu

### The Netherlands

- Groenhorst Barneveld, Barneveld

### United Kingdom

-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London
- Abbeydale – Vetlink Veterinary Training Ltd, Monmouth
- Anglia Ruskin University, Cambridge
- Askham Bryan College, York
- Askham Bryan College, Gutsborough
- Askham Bryan College, Newcastle upon Tyne
- Askham Bryan College, Cumbria
- Bicton College, Devon
- Bishop Burton College, Beverley
- Bottle Green Training Ltd, Derbyshire
- Bridgend College, Mid Glamorgan
- Bridgwater College, Bridgwater
- Canterbury College, Kent
- Central College of Animal Studies, Folkestone

- Central College of Animal Studies, Stowmarket
- Chichester College, Pulborough
- City & Islington College, London
- Coleg Llandrillo, Caernarfon
- College of Animal Welfare, Cambridgeshire
- College of West Anglia, Norfolk
- College of West Anglia, Wisbech
- Coventry University, Warwickshire
- Coventry University, Pershore
- Duchy College, Cornwall
- East Durham College, Durham
- Easton and Odey College, Norfolk
- Easton and Odey College, Suffolk
- Edinburgh College, Edinburgh
- Edinburgh Napier University, Edinburgh

<https://www.acovene.eu/accredited-programs/>

2021-04-19

- Goddard Veterinary Group, Wanstead
- Hadlow College, Kent
- Halesowen College, West Midlands
- Harper Adams University, Shropshire
- Hartpury College, Gloucestershire
- L.I.T.E Ltd, Mersyde
- Medivet Training College, Hertfordshire
- Middlesex University, Hertfordshire
- Myerscough School of Veterinary Nursing, Lancashire
- Myerscough-Lynwood School of Veterinary Nursing, Dorchester
- MYF Training, Aldershot
- North East Scotland College, Aberdeen
- North Highland College, Galthness
- Northumberland College, Ashington
- Norton Radstock College, Radstock
- Nottingham Trent University, Nottinghamshire

- Oaklands College, Hertfordshire
- Plumpton College, East Sussex
- ProCo NW Ltd, Wigan
- Reaseheath College, Cheshire
- Royal Agricultural University, York
- Royal Agricultural University, Cumbria
- Scotland's Rural University College, Dumfries
- Sheffield City College, Sheffield
- Solihull College, Solihull
- South Staffordshire College, Cannock
- Sparsholt College, Sparsholt
- The College of Agriculture Food & Rural Enterprise, Muckamore
- The Open College of Equine Studies, Bury St Edmunds
- The Royal Veterinary College, Hertfordshire
- University of Brighton, East Sussex

- University of Bristol, Bristol
-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Preston
- University of Plymouth, Cornwall
- University of Portsmouth, Hampshire
-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Gloucestershire
- Warwickshire College, Warwickshire
- Writtle College, Essex

#### Ireland

- Veterinary Council of Ireland, Dublin
- Athlone Institute of Technology
- Dundalk Institute of Technology
- Letterkenny Institute of Technology
- St. John's Central College, Cork University College, Dublin

### About us



The Accreditation Committee for Veterinary Nurse Education is a voluntary organisation founded in 2007 to accredit veterinary nurse education programmes in the EU.

### Applying for accreditation

Application for ACOVENE accreditation involves three stages:

- Initial notification of intent ([click here](#))
- Full application and submission of supporting evidence
- School vis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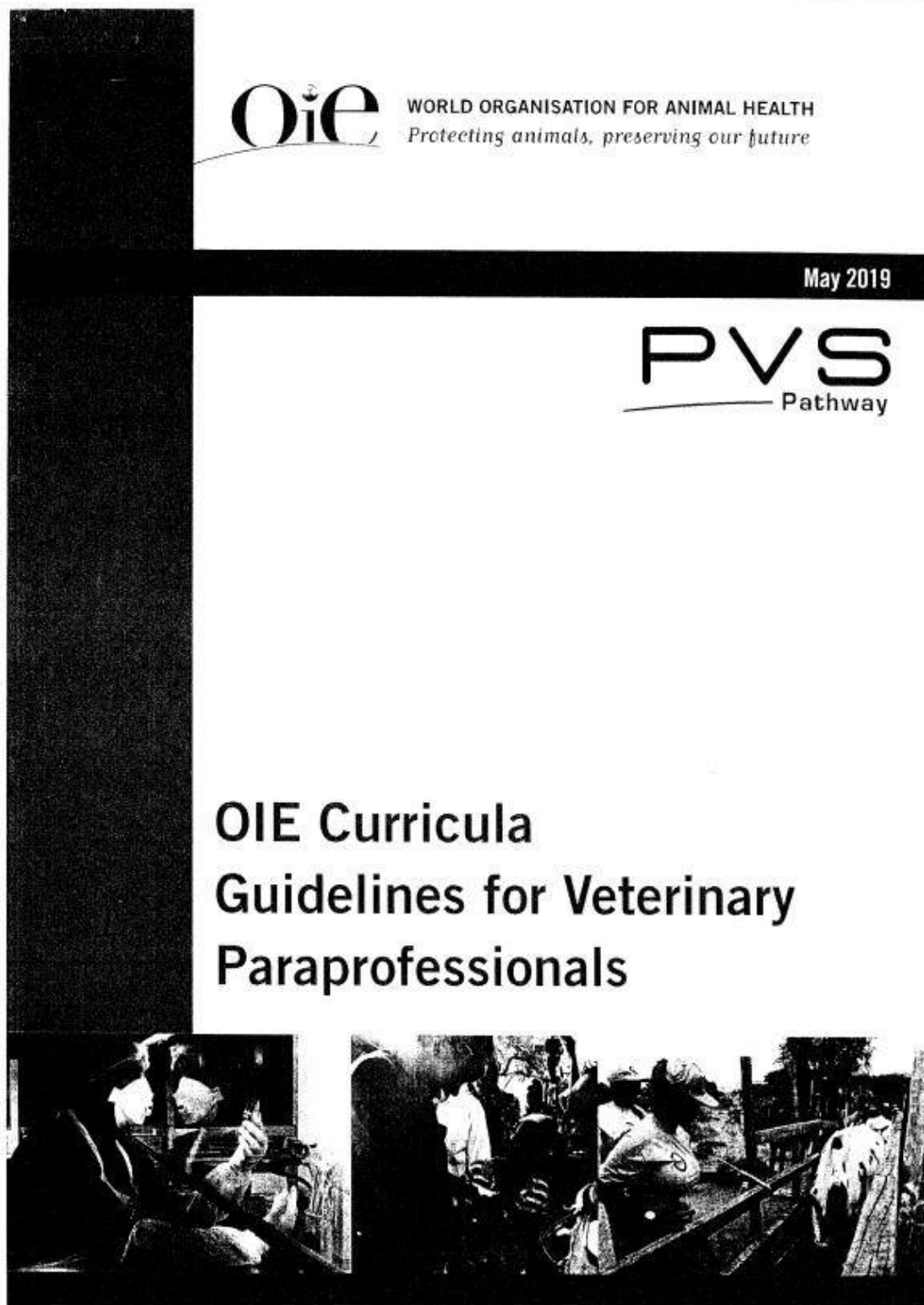
### Contact centre

C/o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Belgravia House 62-64 Horseferry Road  
London SW1P 2AF

Contact us: +44 020 722 22 001  
Write us: [info@acovene.org](mailto:info@acovene.org)



[부록 8.4.]



## Relevant definitions<sup>1</sup>

**Animal Health** means the state, in animals, of being free from illness or injury.

**Competency<sup>2</sup>** means knowledge (e.g. cognitive abilities), skills (e.g. ability to perform specific tasks), attitudes (e.g. affective abilities, feelings and emotions), and aptitude (e.g. natural ability, talent, or capacity for learning).

**Course** means a series of lessons designed to communicate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aptitude about a particular subject.

**Course description** means a synopsis of the contents of a Course.

**Course objective(s):** means a list of the key concepts and/or skills which are to be imparted to students who take the Course.

**Curriculum** means the Units and Courses comprising a course of study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programme at a training or educational institution.

**Curriculum alignment matrix** means a tabulated comparison of the Learning Outcomes stated in the *OIE Curricula Guidelines* against the Learning Outcomes stated for existing VPP curricula at different training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order to assess the degree of alignment or concordance.

**Laboratory diagnosis<sup>3</sup>** means a diagnosis made by a chemical, microscopic, microbiologic, immunologic or pathologic study of secretions, discharges, blood, or tissue.

**Learning Outcome** means what a student will know and be able to do by the end of a course or programme.

**Programme** means the combination of Courses and other components of training that leads to a qualification in a specific field of study.

**Sphere of Activity** means a skill area in which a VPP should demonstrate competency.

**Track** means the principle job-related focus for a veterinary paraprofessional, be it animal health, veterinary public health, or laboratory diagnosis.

**Unit<sup>4</sup>** means a self-contained part of an educational Course.

**Veterinarian<sup>5</sup>** means a person with appropriate education, registered or licensed by the relevant Veterinary Statutory Body of a country to practice veterinary medicine/science in that country.

**Veterinary Authority<sup>6</sup>** means the Governmental Authority of a Member Country, comprising veterinarians, other professionals and paraprofessionals, having the responsibility and competence for ensuring or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of animal health and welfare measures,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ion and other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in th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in the whole territory.

<sup>1</sup> If no footnote is associated with a definition, then the definition was formulated by the ad hoc Group on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sup>2</sup> From "OIE recommendations on the Competencies of graduating veterinarians ('Day 1 graduates') to assure National Veterinary Services of quality"

<sup>3</sup> Farlex Partner Medical Dictionary, Farlex, 2012

<sup>4</sup> Concise Oxford English Dictionary, 11<sup>th</sup> edition, 2004

<sup>5</sup> From the glossary of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sup>6</sup> From the glossary of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

**Veterinary domain**<sup>7</sup> means all the activitie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animals, their products and by-products, which help to protect, maintain and improve the health and welfare of humans, including by means of the protection of animal health and welfare, and food safety.

**Veterinary Paraprofessional**<sup>8</sup> (VPP) means a person who, for the purposes of th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is authorised by the Veterinary Statutory Body to carry out certain designated tasks (dependent upon the category of veterinary paraprofessional) in a territory, and delegated to them under the responsibility and direction of a veterinarian. The tasks for each category of veterinary paraprofessional should be defined by the Veterinary Statutory Body depending on qualifications and training, and in accordance with need.

**Veterinary Public Health**<sup>9</sup> means the sum of all contributions to the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of humans through an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veterinary medical science.

**Veterinary Services**<sup>10</sup> (VS) means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that implement animal health and welfare measures and other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in th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and the *OIE Aquatic Animal Health Code* in the territory. The Veterinary Services are under the overall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Veterinary Authority. Private sector organisations, veterinarians,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or aquatic animal health professionals are normally accredited or approved by the Veterinary Authority to deliver the delegated functions.

**Veterinary Statutory Body**<sup>11</sup> (VSB) means an autonomous regulatory body for veterinarians and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sup>7</sup> From Article 3.4.2 of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sup>8</sup> From glossary of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sup>9</sup> From World Health Organization Study Group. Future trends in veterinary public health. World Health Organ Tech Rep Ser 2002;907:1-85

<sup>10</sup> From the glossary of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sup>11</sup> From the glossary of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 Contents

<b>Disclaimer</b>	2
<b>Foreword</b>	3
<b>Acronyms</b>	4
<b>Acknowledgements</b>	4
<b>Relevant definitions</b>	5
<b>Introduction</b>	9
Background	9
How the <i>OIE Curricula Guidelines for Veterinary Paraprofessionals</i> were developed	9
Structure of the <i>OIE Curricula Guidelines for Veterinary Paraprofessionals</i>	10
How to use this document	17
Scope	18
<b>Veterinary Paraprofessional Curricula: Courses, Units, and Learning Outcomes</b>	20
Animal Health Track	21
Veterinary Public Health Track	27
Laboratory Diagnosis Track	35
<b>Annexes</b>	43
<b>Annex 1. Animal Health Track Job Scenarios</b>	
Scenario 1	44
Scenario 2	46
<b>Annex 2. Veterinary Public Health Track Job Scenarios</b>	
Scenario 1	48
Scenario 2	50
<b>Annex 3. Laboratory Diagnosis Track Job Scenarios</b>	
Scenario 1	52
Scenario 2	54



## Introduction

### Background

As presented in the *OIE Competency Guidelines for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the effective delivery of national veterinary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animal and public health requires a well-trained cadre of veterinarians and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VPPs) working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OIE supports the participation of VPPs in the delivery of national veterinary services and recognises the variety of roles that VPPs can play, including: participation in animal health field activities related to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participation in veterinary public health activities such as rabies control and food safety; and participation in laboratory diagnosis.

Chapter 3.4 of the OIE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indicates that a Member Country's veterinary legislation should provide a basis for the regulation of veterinarians and VPPs in the public interest and suggests the creation of a regulatory entity, the Veterinary Statutory Body (VSB), to carry out that regulation. Article 3.4.6 indicates that the relevant veterinary legislation should:

- a) define the prerogatives of veterinarians and of the various categories of VPPs that are recognised by the Member Country;
- b) define the minimum initial and continuous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competencies for veterinarians and VPPs;
- c) prescribe the conditions for recognition of the qualifications for veterinarians and VPPs;
- d) define the conditions to perform the activities of veterinary medicine/science; and
- e) identify the exceptional situations, such as epizootics, under which persons other than veterinarians can undertake activities that are normally carried out by veterinarians.

In this context, it is essential that the desired competencies of VPPs working in the areas of animal health, veterinary public health, and laboratory diagnosi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established and that guidelines for curricula are developed to ensure that graduating VPPs possess the desired competencies for each of these areas, or Tracks. The desired competencies are presented in the *OIE Competency Guidelines for Veterinary Paraprofessionals*<sup>12</sup> for the three Tracks of VPPs – animal health, veterinary public health, and laboratory diagnosis. The curricula required to instil these competencies are presented in this document as a companion to those guidelines.

The purpose of the *OIE Curricula Guidelines for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is to provide a set of common guidelines for the expected knowledge, skills, attitudes, and aptitudes that VPPs should acquire in relevant Units and Courses by the end of their training. The *Curricula Guidelines* provides a framework to guide curricular development for each Track to produce competent VPPs working in various roles as part of a quality Veterinary Services.

### How the *OIE Curricula Guidelines for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were developed

A global analysis of existing curricula for the three Tracks of VPPs informed the development of the *OIE Curricula Guidelines for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Twenty-six curricula were assessed from all five OIE Regions by the Institute for Infectious Animal Diseases (IIAD), an OIE Collaborating Centre for Biological Threat Reduction, and presented to the OIE's *ad hoc* Group on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In addition, members of the *ad hoc* Group, in collaboration with IIAD, conducted three in-country missions to test the *OIE Curricula Guidelines for Veterinary Paraprofessionals*. The goal of the

<sup>12</sup> [http://www.oie.int/fileadmin/Home/eng/Support\\_to\\_OIE\\_Members/pdf/A\\_Competence.pdf](http://www.oie.int/fileadmin/Home/eng/Support_to_OIE_Members/pdf/A_Competence.pdf)



Courses shown with a white background includ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ent. Courses and Units shaded in green represent theoretical content. Courses and Units shaded in blue represent practical Course content.

Some Units occur in more than one Course and these are noted with an asterisk (\*). Where the Unit is relevant to more than one Track, the content of the Unit may vary according to the Track. The Learning Outcomes for each Unit can be found in the subsequent chapters of this document, by Track.

The format in Table 1 highlights that certain Courses and Units are common for more than one Track. These can be taught as 'Core Courses' across Tracks followed by specialised Courses and Units (i.e. Courses and Units specific to a given Track). Courses are presented alphabetically. The actual sequencing of Courses is best determined by Member Country needs and priorities.

<b>Course Name, Description, and Objectives</b>	<b>Unit Name</b>	<b>AH</b>	<b>VPH</b>	<b>Lab</b>
<b>Anatomy and Physiology</b> Anatomy is the study of structures and organ systems of animals at the gross and microscopic level. Physiology is the study of the normal function of living organisms at the biochemical, cellular, and tissue levels.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dentify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major organ systems and corresponding physiological processes</li> <li>Use proper anatomical terminology to describe major organs of each system, their location, and function</li> <li>Compare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differences across common animal species</li> <li>Understand how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knowledge can be applied to field practices</li> </ul>	Anatomy and Physiology	✓	✓	✓
	Physiology and Physiology Practicum	✓	✓	✓
<b>Animal Diseases</b> Animal Diseases is the study of specific infectious and non-infectious diseases.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scribe and discuss the aetiology, epidemiological patterns, clinical signs, diagnosis, treatment, prevention, control and public health issues for relevant infectious diseases of importance</li> <li>Describe and discuss the causes, epidemiological patterns, clinical signs, diagnosis, treatment, prevention and control, for relevant non-infectious diseases of importance</li> <li>Apply knowledge to recognise a specific disease in the field and suggest approaches to treatment, control and prevention</li> </ul>	Zoonoses and Emerging Diseases*	✓	✓	✓
	Infectious Diseases of National Importance	✓	✓	✓
	Non-infectious Diseases of National Importance	✓	✓	✓
<b>Animal Health and Production in Farm Engineering Courses</b> The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course is the study of farm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The course covers the following ar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ealth and production of farm animals</li> <li>Health and production of farm animals</li> <li>Health and production of farm animals</li> <li>Health and production of farm animals</li> <li>Health and production of farm animals</li> </ul>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	✓	✓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	✓	✓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	✓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		



Table 1. Courses, Units, and Tracks				
Course Name, Description, and Objectives	Unit Name	AH	VPH	Lab
<b>Animal Production Systems</b> The Animal Production Systems Course is the study of different relevant species, their housing, handling, and nutritional needs, the fundamental concepts of reproduction, and agricultural economics as they relate to specific production systems. <u>Course objectives:</u>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derstand and apply the fundamentals of husbandry, reproduction, nutrition and pasture management</li> <li>Understand the economics of relevant commodity systems and value chains and understand dynamics of related market trends</li> <li>Understand herd health management practices and nutritional recommendations so as to advise clients</li> </ul>	Nutrition and Pasture Management	✓		
	Agricultural Economics	✓	✓	
	Production and Breeding Systems Management	✓	✓	
	Animal Health Economics	✓		
<b>Animal Welfare and Ethology</b> The Animal Welfare Course covers the scientific basis for understanding an animal's response to its environment and establishing and ensuring the conditions for its health and well-being. Ethology is the study of animal behaviour in its interactions with humans, other animals, and their physical environment. <u>Course objectives:</u>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derstand normal and abnormal animal behaviour of relevant species</li> <li>Understand and ensure suitable conditions for housing, feeding, transport and slaughter for the welfare and well-being of relevant species</li> </ul>	Animal Welfare	✓	✓	
	Ethology	✓	✓	
	Animal Welfare Management	✓	✓	
	Animal Welfare Economics	✓		
<b>Clinical Pathology</b> Clinical Pathology is concerned with the diagnosis of disease based on laboratory analysis of blood and other bodily fluids, tissues and microscopic evaluation of individual cells. <u>Course objectives:</u>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perly use a microscope for various diagnostic applications</li> <li>Describe, conduct and report on common clinical pathology tests</li> <li>Describe common cytological presentations</li> </ul>	Haematology			✓
	Clinical Chemistry			✓
	Cytology			✓
	Clinical Pathology Management			✓
	Clinical Pathology Economics			✓
<b>Communication</b> The Communication Course covers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effective and efficient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aimed at specific audiences. <u>Course objectives:</u>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velop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s skills</li> <li>Demonstrate proficiency in technical communication with colleagues and other stakeholders</li> <li>Provide and explain activities to the general public using lay language appropriate to the target audience</li> <li>Apply critical thinking skills</li> </ul>	Principles of Communication	✓	✓	✓
	Extension Communication	✓	✓	
	Technical Communication	✓	✓	✓
	Communication Economics	✓	✓	✓
<b>Field Biosafety and Biosecurity</b> Field Biosafety covers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revention of exposure or spread of hazards and biological materials. Field Biosecurity covers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measures that limit the spread of disease and pests. <u>Course objectives:</u>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derstand and apply general principles of field biosafety and field biosecurity</li> <li>Recognise relevant biological and chemical hazards, and their impact, control and prevention</li> <li>Understand and work within relevant regulatory frameworks</li> <li>Advise on and implement OHS principles and practices</li> <li>Understand and apply methods relating to field biosecurity</li> </ul>	Principles of Field Biosafety and Biosecurity	✓	✓	
	Food Chain Biosecurity		✓	
	Field Biosafety and Biosecurity Management	✓	✓	
	Field Biosafety and Biosecurity Economics		✓	



<b>Course Name, Description, and Objectives</b>	<b>Unit Name</b>	<b>AH</b>	<b>VPH</b>	<b>Lab</b>
<b>Food Hygiene</b> Food Hygiene covers the general principles for protecting the safety and quality of food and their application at all levels of the food chain.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scribe major infectious and chemical hazards and associated contamination sources</li> <li>• Apply methods and technologies for maximising safety and quality</li> <li>• Apply food testing methods</li> <li>• Understand and apply modern, risk-based food protection systems</li> <li>• Understand and apply national and international food safety and trade regulations</li> <li>• Assess the fitness of animal products for human consumption</li> <li>• Describe and critically analyse slaughter processes</li> </ul>	Principles of Food Hygiene		✓	✓
	Food Safety Regulations and Policies		✓	
	Quality and Risk Management		✓	
	Microbiology and Food Safety		✓	
	Food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s		✓	
<b>Immunology</b> Immunology is the study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immune system, innate and acquired immunity, mechanisms that allow the body to distinguish self from non-self, and vaccination theory and practice.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is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scribe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immune system and their role in maintaining the health of the animal</li> <li>• Describe how vaccines work and are produced and demonstrate proper storage, handling, and administration</li> <li>• Understand protocols and strategies for effective vaccination</li> <li>• Understand the mechanisms of immunologic-based diagnostic tests</li> </ul>	Principles of Immunology	✓	✓	✓
	Vaccinology	✓	✓	✓
	Serology	✓	✓	✓
<b>Immunological Laboratory Techniques</b> This course covers the laboratory techniques used in the diagnosis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n animals. It includes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mmunology and the use of immunological methods in the laboratory and field.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is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mmunology and the use of immunological methods in the laboratory and field</li> <li>• Apply laboratory techniques for the diagnosis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in animals</li> <li>•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mmunology and the use of immunological methods in the laboratory and field</li> </ul>	Diagnostic Techniques	✓	✓	✓
	Immunological Laboratory Techniques	✓	✓	✓
<b>Laboratory Diagnostic Techniques</b> The Laboratory Diagnostic Techniques Course covers the practical methods and techniques for tests used in a laboratory or field setting.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is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 the theory and apply the practical skills required to perform methods and techniques for tests relevant to animal health and veterinary public health and produce reliable and repeatable results</li> <li>• Understand and apply the concepts of quality control and account for test limitations</li> </ul>	Diagnostic Techniques			✓
	Laboratory Diagnostic Techniques			✓



<b>Course Name, Description, and Objectives</b>	<b>Unit Name</b>	<b>AH</b>	<b>VPH</b>	<b>Lab</b>
<b>Laboratory Quality Management</b> The Laboratory Quality Management Course covers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to control laboratory processes to obtain accurate and reliable results, ensure appropriate record keeping, optimise efficient workflow, and achieve maximum customer satisfaction.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 and appl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aboratory quality management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est results</li> <li>• Effectively organise and coordinate all aspects of workflow</li> <li>• Understand and apply appropriate methods of record keeping</li> </ul>	Principles of Quality Management			✓
	Surge Capacity and Outbreaks			✓
	Quality Management in the Laboratory			✓
<b>Microbiology</b> Microbiology is the study of microorganisms (bacteria, fungi and viruses) and their effect on animals.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 the structure, function, nutrition, physiology, and genetics of microbes and their application to immunology, pathology, and microbial diversity</li> <li>• Knowledge of pathogenesis of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ncluding vaccination, and the use of antimicrobial agents</li> <li>• Understand and apply the basic principles of microbiology</li> </ul>	Principles of Microbiology	✓	✓	✓
	Bacteriology and Mycology		✓	✓
	Virology		✓	✓
	Molecular			✓
<b>Parasitology</b> Parasitology is the study of parasites and protozoa, their hosts, their associated pathology as it relates to clinical app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clinical parasitism in the field.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is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dentify and describe the life cycles, parasite–host relationships, and associated pathology of the commonly encountered internal and external parasites and protozoa</li> <li>• Demonstrate the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to identify and manage relevant internal and external parasites and protozoa</li> </ul>	Internal and External Parasites	✓	✓	✓
	Clinical Internal Parasites and Protozoa	✓	✓	✓
<b>Pathology</b> Pathology is the study of disease processes and how the animal responds at the gross and microscopic levels.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is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fine and describe the various types of pathological processes (e.g. inflammation, neoplasia)</li> <li>• Describe the clinical and physical manifestations of these processes at the level of tissues, organs, whole animal and animal populations</li> <li>• Perform necropsies on animals and describe gross pathologies</li> <li>• Recognise specific pathological presentations or diseases and use and maintain pathology equipment and protocols</li> </ul>	Principles of Pathology	✓	✓	✓
	Systems Pathology		✓	✓
	Histology/Histopathology			✓
	Practical Pathology (Laboratory)	✓	✓	✓



<b>Course Name, Description, and Objectives</b>	<b>Unit Name</b>	<b>AH</b>	<b>VPH</b>	<b>Lab</b>
<b>Pharmacology and Toxicology</b> Pharmacology is the study of drugs, how they work, their usages and effects in different animal species. Toxicology is the study of the nature, effects, and detection of poisons affecting production animals.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 and apply the principles of basic pharmacology, proper selection of drugs, common drugs used in veterinary practice, and their routes of administration</li> <li>• Describe adverse effects of common medications</li> <li>•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toxicology</li> </ul>	Principles of Pharmacology	✓	✓	
	Principles of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	✓	
	Principles of Toxicology	✓	✓	✓
<b>Principles of Disease Control</b> The Principles of Disease Control Course covers the principles and tools for effective disease control, the role of descriptive epidemiology in managing disease control programmes, and the specific disease control programmes that exist in the Member Country.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e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 and apply the principles and tools of effective disease control programmes</li> <li>• Demonstrate the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assist in field epidemiological monitoring and control programmes for infectious diseases</li> <li>• Understand the obligation and importance of reporting disease as required by law, which diseases are notifiable, and to whom to report disease occurrence</li> </ul>	Principles of Disease Control Programmes	✓	✓	
	Applied Epidemiology	✓	✓	
	Specific Disease Control Programmes and Policies	✓	✓	
	Applied Epidemiology (Practical)	✓	✓	
<b>Professional Jurisprudence and Ethics</b> The Professional Jurisprudence and Ethics Course will teach students to understand and practice within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s and established ethical standards of their jurisdiction.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is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 the role of legislation and legislative processes in society</li> <li>• Know the veterinary and other relevant legislation in effect in the Member Country, including relevant regional legislation o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greements</li> <li>• Comply with and communicate to others the need for compliance with relevant legislation</li> <li>• Carry out their work according to the ethical codes of conduct and professional behaviour prevailing within their jurisdictions</li> </ul>	Jurisprudence	✓	✓	✓
	Ethics	✓	✓	✓



<b>Course Name, Description, and Objectives</b>	<b>Unit Name</b>	<b>AH</b>	<b>VPH</b>	<b>Lab</b>
<b>Veterinary Public Health</b> Veterinary Public Health covers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protecting human health with respect to hazards and disease at the interface between animals, humans and the environment. <b>Course objectives:</b> Students successfully completing this Course will be able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st key regional zoonotic diseases</li> <li>Expand knowledge of zoonotic animal diseases,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health, particularly control and prevention</li> <li>Understand and apply One Health concepts</li> </ul>	Principles of Veterinary Public Health	✓	✓	
	Zoonoses and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	
	Wast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Sciences		✓	
	Infectious Disease and Public Health	✓	✓	
	Infectious Disease and Public Health	✓	✓	



[부록 8.5.]

---

ACCREDITATION POLICIES AND PROCEDURES  
of the  
AVMA  
COMMITTEE ON VETERINARY TECHNICIAN  
EDUCATION AND ACTIVITIES  
(CVTEA)<sup>®</sup>  
January 2016



Accreditation of veterinary technology programs is conducted within the Education and Research Division of the AVMA. Accreditation activities take place in the Center for Veterinary Education Accreditation (CVEA). The Council on Education (COE) accredits DVM or equivalent educational programs and the CVTEA accredits veterinary technology programs.

This material has been provided by the publisher for your convenience.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publisher.



## I. AVMA POLICY ON VETERINARY TECHNOLOGY

### **Preamble**

The AVMA recognizes the value of veterinary technicians as an integral component of veterinary medicine and urges full utilization of veterinary technicians. The veterinary profession is enhanced through efficient utilization of each member of the veterinary health care team by appropriate delegation of tasks and responsibilities to support staff.

### **Nomenclature**

Veterinary technology is the science and art of providing professional support to veterinarians. AVMA accredits programs in veterinary technology that graduate veterinary technicians and/or veterinary technologists.

A veterinary technician is a graduate of an AVMA or Canadi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CVMA)-accredited program in veterinary technology. In most cases the graduate is granted an associate degree or certificate.

A veterinary technologist is a graduate of an AVMA or CVMA-accredited program in veterinary technology that grants a baccalaureate degree.

**Veterinary assistant:** The adjectives animal, veterinary, ward, or hospital combined with the nouns attendant, caretaker, or assistant are titles sometimes used for individuals where training, knowledge, and skills are less than that required for identification as a veterinary technician or veterinary technologist.

AVMA will encourage schools, organizations, and regulatory authorities to use the standard terminology described above, but will not attempt to interfere, except through educational efforts, with the actual terminology used.

### **The Role of Veterinary Technicians**

The veterinary technician's role is to provide professional health care in conjunction with the veterinarian.

The duties of veterinary technicians shall be performed under the direction, supervision, and responsibility of veterinarians. These duties shall be accomplished in compliance with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These duties shall not include diagnosing, prescribing, or performing surgery except where explicitly permitted by regulation.

The veterinary technician must be knowledgeable in the care and handling of animals, their normal and abnormal life processes, medical and surgical nursing, anesthesiology, diagnostic imaging, and clinical laboratory procedures.

### **The Role of the AVMA**

The AVMA offers consultation on education of veterinary technicians, their utilization, their regulation, and other related matters.

The AVMA encourages colleges/schools of veterinary medicine to demonstrate proper veterinary technician utilization for the veterinary students, the economic value of such utilization, and the advantages of effective utilization of veterinary technicians in the delivery of quality veterinary care. Cooperation and affiliation between veterinary technology programs and veterinary colleges/schools is encouraged.

The AVMA makes an ongoing effort to determine and address present and future manpower needs in the field of veterinary technology. Placement services for veterinary technicians are available from the AVMA Career Development Center.

The AVMA recognize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Veterinary Technicians in America (NAVTA) as the national organization representing veterinary technicians and the Association of Veterinary Technician Educators (AVTE) as the national organization representing veterinary technician educators.

#### **8) Students**

8a. The number of students must be appropriate to achieve the mission of the program. Enrollment must not exceed the available resources including the number of faculty and support staff needed to meet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curriculum. An appropriate instructor-to-student ratio must be maintained to ensure student safety and adequate delivery of instruction in a variety of teaching environments.

8b. Student support services must be available within the institution for program students.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and faculty/staff must be sufficient to communicate expectations for successful academic performance, provide feedback for improvement of skills and knowledge, and encourage professional growth and development.

8c. Throughout the curriculum, students must be exposed to veterinary team concepts and appropriate modeling of ethical and professional behavior.

8d.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form a student organization, and this organization should become an affiliat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Veterinary Technicians in America (NAVTA) and appropriate state veterinary technology associations.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be active in local, state, and national veterinary technician organizations.

#### **9) Faculty and Staff**

9a. Faculty and staff numbers must be sufficient to deliver the educational program and meet the instructional goals of the program.

9b. Instructors in the program must hav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topics they teach and promote the appropriate role of the veterinary technician in the veterinary health care team. Instructional duties must not violate local, state, or federal laws regarding the practice of veterinary medicine.

9c. The program director must be a licensed veterinarian or a credentialed veterinary technician who must be a graduate of an AVMA-accredited program. The program director must have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occupational experience appropriate to understand and fulfill program goals. The position of the program director should be full time with the institution.

9d. The director must have the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support necessary to manage the program successfully. This shall be documented in a written job description that also shall clearly define the position of the director within the institutional hierarchy. The program director must be responsible for organizing continuous program review and development processes that assure program effectiveness. The program director's appointment must include sufficient time for administrative and teaching responsibilities as well as opportunities and support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9e. Each program must have a minimum equivalent of one full-time licensed veterinarian and a minimum equivalent of one full-time credentialed veterinary technician who must be a graduate of an AVMA-accredited program.

9f. Academic positions must offer sufficient compensation, incentives, and employment security to attract and retain qualified personnel in order to maintain program stability. Faculty and staff must have sufficient time for development and delivery of instruction, curriculum development, student evaluation, student advisement and counsel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veterinary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9g. The institution must provide evidence that it evaluates program personnel regularly and assists and facilitates professional growth. Program personnel should be encouraged and financially supported to be participating members of local, state, and national 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ions.

#### **10) Curriculum**

10a. The curriculum must prepare graduates who will be fully capable of performing in a wide variety of professional roles within the veterinary field. At the completion of the curriculum, graduates must have attained

entry-level skills needed to support companion animal, equine, and food animal practice, biomedical research, and other veterinary medical activities. The curriculum shall provide a foundation in veterinary technology that will inspire the student to continue life-long learning.

10b. The specific courses shall teach basic medical science,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decision-making, and clinical application skills. Integration of nursing, technical, and medical skills within the curriculum must use live animals. Whenever possible, animal nursing skills should be developed in a setting and under conditions that are a reflection of the manner in which graduates will use these skills.

10c. The curriculum must include general education and specific veterinary technology course content. Required materials can be offered as complete course offerings or be integrated into courses involving more than one area of recommended material. Course objectives must be clearly communicated to the student through syllabi or other course documents. Course offerings to meet curriculum requirements typically take a minimum of 18 months to 2 years to accomplish.

**GENERAL COURSE MATERIAL:**

Applied mathematics  
Biological science  
Communication skills  
Fundamentals of chemistry

**SPECIFIC COURSE MATERIAL:**

Anatomy and physiology  
Anesthesia, including induction, monitoring, and instrumentation  
Animal husbandry, including restraint, behavior, species and breed identification, reproduction, sex determination, and human-animal bonding  
Biosecurity-safety and security issues  
Clinical pathology and parasitology  
Communication/Interaction skills with Clients and Colleagues  
Diseases, preventive medicine (including dentistry), and nursing of companion animals, food-producing animals, horses, exotic species, and laboratory animals  
Economics in veterinary practice  
Ethics, professionalism, and legal applications in veterinary medicine  
Humane animal care and management  
Introduction to laboratory animal medicine  
Life-long learning concepts  
Medical terminology  
Microbiology and immunology  
Necropsy techniques  
Nutrition and principles of feeding  
Orientation to the profession of veterinary technology  
Pharmacology for veterinary technicians  
Principles of imaging, including radiography and ultrasonography  
Valu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Safety Issues, consistent with the CVTEA *Statement on Safety* with course work emphasis on zoonoses and occupational safety (see Appendix A).  
Surgical nursing and assisting, including instrumentation  
Technician utilization and team concepts of health care delivery  
Valu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Veterinary office management and elementary computer skills

10d. Practical veterinary experience that expands student knowledge and builds proficiency of acquired skills through task-specific exercises is a required portion of the curriculum. These experiences are usually termed preceptorships, practicums, internships, or externships. Practical experiences are for the purpose of honing skills learned in formal instructional settings and should be scheduled to occur following completion of skills acquisition.